제4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 머리말

2015년 제3판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발간한 이후 서울회생법원이 2017. 3. 1.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하였고, 개인회생 분야에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등 최근까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실무 운영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거나 논의 중에 있었던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의 취급, 장래 양육비채권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과 같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개인회생절차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이나 특별면책 활용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도 담았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추가 생계비의 산정,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및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에 대한 실무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하여 소개하고 업무수행 편의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수립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실무운영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본 제4판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들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과 감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서울회생법원 담당 법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서울회생법원장 정 형 식

머리말

법원도서관은 도산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편으로 구성된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법원도서관이 2011년 10월 발간한 『감사 직무 편람』과 『관리인 직무 편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업무편람』과 『회생위원 실무편람』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2012년 4월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과 『회생위원 직무 편람』으로 구성됩니다.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 및 감사, 관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정리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이번에 2012년 4월 발간된 『회생위원 직무 편람』의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생위원 직무 편람(개정판)』은 2012년 4월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방식의 변화까지 모두 반영한 것으로 실무에 임하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 개정 내용 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 및 회생위원 여러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11.

법원도서관장 김 찬 돈

제3판 머리말

2012년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 수는 매년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제도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대응책도 보다 정치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행, 전임 외부회생위원 제도 신설, 관할 확대 등 최근 적지 않은 제도의 개선과 실무 운영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개정 제3판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 운영상의 변화는 물론, 기존 개정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실무상 쟁점 및 실무례,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회생위원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3판에서는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관한 변화된 실무를 추가하였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영업소득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소개하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개인회생 관련 최신 법령을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가 국민의 신뢰 속에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본 제3판 발간을 위해 애쓴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들과 자문 및 감수를 맡아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 형 주

머리말

법원도서관은 재판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재판자료집 등으로 발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고 있는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2011년 10월 발간한 감사 직무 편람, 관리인 직무 편람과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회생위원 직무 편람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관리위원, 회생위원 및 감사, 파산관재인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례에서 얻은 경험 등을 정리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당사자인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요즈음,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훌륭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관리위원, 회생위원 및 감사, 파산관재인 여러분,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4.

법원도서관장 김 창 석

개정판 머리말

『회생위원 직무 편람』이 발간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 책자는 회생위원들 간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새로 보직을 부여받은 회생위원들에게 좋은 업무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책자 발간 이후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회생위원의 업무범위가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실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무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반영한 실무준칙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정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초판과 마찬가지로 회생위원들, 특히 2012년부터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과 함께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게 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들의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폭증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정판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들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과 교정 작업에 성실히 임해 주신 파산부 법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개인회생제도의 발전과 실무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 진 성

머리말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채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그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에 빠진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아 갱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데에는 그간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생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생위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연구하고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새로 보직을 부여받은 회생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신임 회생위원이 실무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회생위원별로 업무처리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회생위원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법원의 실무처리 사례를 분석하고 그동안 집적된 바람직하고 효율성 있는 실무 경험을 수집·정리함으로써, 현직 회생위원들 간의 상이한 업무처리방식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앞으로 새로 보직을 부여받을 회생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됨은 물론 향후 실무연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집필과 토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들과 여러 쟁점에 대하여 많은 자문을 하여 주신 파산부 법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 진 성

제4판 집필진 및 감수자 명단(2020)

집필진 명단

2020. 12. 현재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총 괄 기 획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정 일 섭
전 총괄기획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전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김 주 원
기획 · 편집위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과장	김 계 영
전 기획 · 편집위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과장 (전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과장)	김 재 훈
위 원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손 영 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정 한 수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현 영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이 영 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최 희 상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창 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심 준 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영 희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용 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유 기 돈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오 광 호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임 윤 석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한 소 정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광 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박 진 영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 원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박 경 식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차 원 섭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이 명 희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동 욱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송 성 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오 봉 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박 선 영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기획)	조 현 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태 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법무사)	서 동 락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법무사)	구 연 모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김 동 영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나 윤 주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신 용 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조 윤 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진 한 림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권 근 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김 형 석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변호사)	윤 선 경
전 위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관 (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문 성 철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관 (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박 병 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 (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김 종 호
	법원행정처 사무관 (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이 우 탁
	법무사 (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최 태 영

감수자 명단

2020. 12. 현재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감수 및 자문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 민 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탁 상 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 민 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 형 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 소 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 옥 형
	서울회생법원 판사	임 샛 별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 인 범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 재 민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 무 룡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 범 일

제3판 집필진 및 감수자 명단(2015)

집필진 명단

총괄 기획	사무국장 이용선
기획 · 편집위원	개인회생과장 백수옥
주 집필위원	회생위원 안창기
집필위원	회생위원 황인재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율림
집필위원	회생위원 윤중현
집필위원	회생위원 주전규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지영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국희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관호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건웅
집필위원	회생위원 신정섭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규배
집필위원	회생위원 주홍재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순옥
집필위원	회생위원 윤미순
집필위원	회생위원 한군석(법무사)
집필위원	회생위원 신용균(변호사)
집필위원	회생위원 나윤주(변호사)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명헌(변호사)

감수자 명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오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최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진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전경훈
인천지방법원 회생위원	공인회계사 조남현

개정판 집필진 명단(2012)

총괄 기획	사무국장 이훈구
기획 · 편집위원	파산과장 김태윤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소영
집필위원	회생위원 정정민
집필위원	회생위원 최대원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훈대
집필위원	회생위원 오문식
집필위원	회생위원 조경애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희준
집필위원	회생위원 유하상
집필위원	회생위원 박기철
집필위원	회생위원 최옥환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재후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정권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진석

초판 집필진 명단(2010)

총괄 기획	민사국장 권오복
기획 · 편집위원	파산과장 기원찬
집필위원	회생위원 문정필
집필위원	회생위원 이미영
집필위원	회생위원 신홍기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범일
집필위원	회생위원 안소연
집필위원	회생위원 윤기준
집필위원	회생위원 최옥환
집필위원	회생위원 최용택
집필위원	회생위원 오성복
집필위원	회생위원 김재후

법령약어표

민소법	민사소송법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채무자회생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참 고 문 헌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 · 회생실무(제5판), 박영사(2019)
- 법원공무원교육원, 도산실무(2020)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4판), 법문사(2020)
- 전병서, 도산법(제2판), 법문사(2007)
- 윤남근, 일반환취권과 관리인 ·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회생과 파산(Vol.1) 사법발전재단(2012)
- 인천지방법원, 2019년 간담회 결과 업무지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2014년도 파산부 워크숍 자료집(개인회생절차의 실무 개선연구 방안, 판사 조영기)
- 인천지방법원 회생위원 조남현(공인회계사), 영업소득자의 재산 및 소득 산정에 관한 의견서
- (前)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한군석(법무사), 개인회생 절차상 회생위원 업무
- (前)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조남흥,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및 심리(결정)절차(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 외부회생위원 연구세미나 발표자료)
- (前)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안창기, 인가 후 폐지 및 면책의 제 문제 고찰(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 외부회생위원 연구세미나 발표자료)

CONTENTS

제1편 개관

제1장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 3
제1절 도입과 시행 ····· 3
제2절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 3
제3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 4
1.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 4
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 5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 8
4.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11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 12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 12
제2절 채무자와의 면담 ····· 12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13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13
제5절 변제계획의 인가 ····· 14
제6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14
제7절 면책 ····· 15

제3장 회생위원 ····· 16
제1절 의의 ····· 16
제2절 회생위원의 선임 ····· 16
제3절 회생위원의 업무 ····· 17
1. 회생위원의 기본 업무 ····· 17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 17
3. 법원이 정하는 업무 ····· 17

CONTENTS

제4절 회생위원의 역할 ····· 18
1. 회생위원 업무의 특성 ····· 18
2. 회생위원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 ····· 18
3.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 ····· 18
4. 법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체계 확립 ····· 18
5. 회생위원의 역할 변화 ····· 19
제5절 신건 기록검토 시 유의사항 ····· 19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 19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20
3. 재산목록 ····· 20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21
5. 진술서 ····· 21
6. 변제계획안 ····· 21

제2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제1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5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 25
제2절 관할 ····· 25
1. 문제점 ····· 25
2. 관할법원 및 문제 되는 사례 ····· 26
3. 관할위반의 경우 처리방법 ····· 28
제3절 환급계좌의 기재 ····· 29
제4절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 ····· 29
제5절 첨부서류 ····· 29

CONTENTS

제2장 보전처분과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31
제1절 보전처분 ····· 31
1. 의의 ····· 31
2. 신청권자 ····· 31
3. 보전처분의 시기 ····· 31
4. 보전처분의 효력 ····· 31
5. 즉시항고 ····· 32
제2절 중지 · 금지명령 ····· 32
1. 의의 ····· 32
2. 신청권자 ····· 32
3. 요건 ····· 32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32
5. 중지 · 금지명령의 효력 ····· 33
6. 중지 · 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 34
7. 중지 · 금지명령의 송달 ····· 35
제3절 포괄적 금지명령 ····· 35
1. 의의 ····· 35
2. 신청권자 ····· 35
3. 요건 ····· 36
4. 대상 ····· 36
5.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 36
6.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 37
7. 공고 및 송달 ····· 37
제4절 보전처분 등과 관련한 업무 ····· 37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39
제1절 개인회생채권 ····· 39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 39

CONTENTS

2.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관계 ····· 40
3.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 42
4. 문제 되는 경우 ····· 44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검토 ····· 49
1. 채권현재액의 총합계 ····· 49
2.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의 부여 ····· 50
3. 채권자명 ····· 51
4. 채권의 원인 ····· 51
5.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 ····· 52
6. 채권의 내용 ····· 53
7. 채권현재액 ····· 53
제3절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 59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부속서류 1) ····· 59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부속서류 2) ····· 64
3.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부속서류 3) ····· 65
4.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부속서류 4) ····· 66
5. 상계권 ····· 69

제4장 재산목록 ····· 75
제1절 개인회생재단 ····· 75
1.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 75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75
제2절 면제재산 ····· 78
1. 개관 ····· 78
2. 면제재산결정 ····· 79
3.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 80
4.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 81
제3절 부인권 ····· 82

CONTENTS

1. 의의 ····· 82
2. 실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 ····· 82
3.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 83
4. 부인의 행태 및 개별적 성립요건 ····· 84
5. 부인권 행사의 주체 ····· 86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 86
7. 실무상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 87
8. 부인권의 소멸 ····· 88
제4절 환취권 ····· 88
1. 의의 ····· 88
2. 환취권의 대상 ····· 89
3. 환취권의 내용 ····· 89
4. 환취권의 행사 ····· 90
제5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 ····· 90
1.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90
2. 현금 ····· 91
3. 예금 · 적금 · 주식 ····· 91
4. 보험 ····· 92
5.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94
6. 임차보증금 ····· 94
7. 부동산 ····· 99
8.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 104
9. 예상 퇴직금 ····· 108
10. 대여금 채권 ····· 108
11. 기타 ····· 109
제6절 배우자 명의의 재산 ····· 110

제5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112

CONTENTS

제1절 개요 ····· 112
1. 신청자격으로서 '개인채무자' ····· 112
2.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의 경우)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 ····· 112
3. '수입'의 의미 ····· 113
제2절 급여소득자 ····· 114
1. 급여소득자의 의미 ····· 114
2. 급여소득자의 예 ····· 114
3.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117
4. 급여의 산정 ····· 118
제3절 영업소득자 ····· 120
1. 영업소득자의 의미 ····· 120
2. 영업소득자의 분류 ····· 121
3. 영업소득자인 경우 구비서류 ····· 121
4.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122
5. 영업소득의 산정 ····· 123
6. 영업자 유형별 검토 ····· 129
7. 과세 유형별 검토 ····· 133
제4절 생계비의 산정 ····· 135
1. 생계비 산정 시 고려 원칙 ····· 135
2. 기준 중위소득 ····· 135
3. 부양가족 ····· 139
4.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 ····· 141

제6장 진술서 ····· 142
제1절 경력 ····· 142
1.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 142
2. 과거 이혼 경력 ····· 142

제2절 현재 주거상황 ····· 142
제3절 부채상황 ····· 142
1. 소송 · 지급명령 · 전부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 ····· 142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142
3.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143
제4절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143

제7장 변제계획안 ····· 144
제1절 개요 ····· 144
제2절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사항 ····· 144
1. 필요적 기재사항 ····· 144
2. 임의적 기재사항 ····· 144
제3절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 144
1. 변제개시일 ····· 144
2. 변제기간 ····· 145
제4절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146
1.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 146
2.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147
3.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 152
제5절 변제계획안 작성 시 문제 되는 경우 ····· 152
1.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 152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153
3.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처리 ····· 154
4.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 ····· 154
5. (가)압류적립금의 처리 ····· 155
6.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 159
7.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 160
8. 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 166

CONTENTS

CONTENTS

9. 개인회생채무가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 167
10. 개인회생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대출 받은 경우 ····· 168
11. 채무자가 구상보증(소위 부보증인) 관계에 있는 경우 ····· 169
12.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170
13. 장래의 구상권이 있는 경우 ····· 170
14.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 170
15.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조정합의안이 있는 경우 ·· 171
16.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 177

제8장 면담 ····· 183
제1절 개요 ····· 183
제2절 면담기일의 지정 ····· 183
제3절 면담기일을 위한 준비 ····· 184
1. 보정권고 ····· 184
2. 면담 장소 ····· 184
3. 회생위원의 자세 ····· 184
제4절 면담기일의 진행 ····· 185
1. 채무자의 출석 확인 ····· 185
2. 면담 실시 ····· 185
3.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 185
4. 사실관계 확인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 수행의지 확인 ····· 186
5.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및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 ····· 188
6. 변제수행의 엄중성에 대한 교육 ····· 188
제5절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188
제6절 면담기일의 변경 · 추정 ····· 189

제9장 면담 후 사건관리 및 업무수행결과 보고 ····· 190
제1절 바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사건의 경우 ····· 190

CONTENTS

제2절 보정서의 검토 ····· 190
1. 재보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 190
2. 보정이 완료된 경우 ····· 190
3.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91
제3절 개인회생절차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191
1. 개요 ····· 191
2. 절차 전환의 가능 시기 및 대상 사건 ····· 192
3. 실무상 처리절차 ····· 192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195
1. 개시 여부의 심리 ····· 195
2. 개시 여부의 결정 ····· 195
3. 개시결정의 효과 ····· 195
제5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 198
1. 개시기각사유 ····· 198
2. 기각의견의 제시 ····· 201
3. 기각결정의 효과 ····· 201
제6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201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201
2. 즉시항고의 기간 ····· 202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 202
4. 원재판의 경정 ····· 202
제7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 202
1. 취하서의 제출 ····· 202
2. 개시신청 취하의 경우 보전처분 등의 효력 등 ····· 203

CONTENTS

제3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제1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채권자 이의 ····· 207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207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 207
2.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 207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207

제2절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 209

1. 수정명령의 의의 ····· 209
2.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및 시기의 제한 ····· 210
3. 수정명령의 절차 ····· 210
4.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210
5. 수정명령의 내용 ····· 210
6. 수정명령 후의 절차 ····· 211

제3절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 211

1. 의의 ····· 211
2.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 211
3.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 211
4. 이의제기의 효과 ····· 211

제2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213

제1절 개요 ····· 213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213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의 추가 ····· 213
2.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 214
3.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개인회생채권자 및 금액의 변경 ····· 215
4. 새로이 이의기간을 부여할 경우 이의 없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문제 ····· 216

제3절 이의기간 도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감소 ····· 217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218
제1절 개요 ····· 218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송달 ····· 218
제3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준비 ····· 218
1. 개시결정 후의 변동사항 및 채권자의 이의내용이 정리되었는지 여부 ····· 218
2.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 219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전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 ····· 220
4. 적립금 입금 여부 확인 ····· 221
제4절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의 작성 ····· 221
제5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222
1. 진행의 주체 ····· 222
2. 유의사항의 고지 ····· 222
3.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 223
4.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 223
5.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 223
6.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 224
7. 개인회생채권자집회 후 보정 ····· 224
제4절 개시결정 후 송달이 불능된 경우 및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 224

제4장 변제계획인부결정 및 그 효력 ····· 226
제1절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 226
1. 이의가 없는 경우 ····· 226
2. 이의가 있는 경우 ····· 226
제2절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227
1. 인가결정의 확정 ····· 227
2.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227
3. 권리변경 및 실권과 관련된 문제 ····· 228
4.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 228

CONTENTS

CONTENTS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주체 ····· 228
6.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 228
제3절 변제계획불인가의 효력 ····· 229
제4절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29
1. 즉시항고권자 ····· 229
2. 즉시항고의 절차 ····· 230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 232
4. 항고심의 결정 ····· 233

제5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 **234**
제1절 요건 ····· 234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 234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 234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35
4.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 236
제2절 절차 ····· 236
제3절 효력 ····· 236
제4절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 237

제4편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까지

제1장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 **241**

제1절 (가)압류적립금을 제1회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의 경우 ····· 241
1. 압류적립금에 대한 관리처분권 ····· 241
2. 제3채무자가 압류적립금을 보관하는 경우 ····· 241
3.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 등을 통하는 경우 ····· 242
제2절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최초 변제금의 이체 ····· 244
1. 개요 ····· 244
2. 인가된 변제계획과 전산에 입력된 변제계획 비교 · 확인 ····· 244
3. 예금주 조회 및 자동이체설정 ····· 244
4. 최초 변제금의 이체 ····· 244
5. 공탁된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 244
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유보금 처리 ····· 245
7. 변제금의 출급 ····· 245
8. 계좌 미신고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 246
9.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 247

제2장 변제계획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및 폐지 ····· 248
제1절 변제계획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 248
1. 개요 ····· 248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248
3. 변제계획인가결정의 경정 ····· 249
4. 채권양도 · 양수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 249
5.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따른 수정보고 ····· 252
6.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보고 ····· 257
제2절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 258
1. 개요 ····· 258
2. 요건 ····· 258
3. 절차 ····· 265
4.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 265

CONTENTS

CONTENTS

5.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 266
6. 폐지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 267
7. 관련 문제 ····· 268

제3장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및 일시변제 ····· 270
제1절 변제계획의 변경 ····· 270
1. 개관 ····· 270
2.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 ····· 271
3. 변제계획 변경 절차 ····· 271
4.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한 실무례 ····· 274
제2절 일시변제 ····· 278
1. 개요 ····· 278
2. 법적 성질 ····· 278
3. 일시변제 허용 사유 판단 ····· 278
4. 일시변제에 관한 업무처리 ····· 279
5. 퇴직금에 의한 일시변제 허용 여부 ····· 280

제4장 면책 ····· 281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 281
제2절 면책의 요건과 절차 ····· 281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 281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84
3.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개정에 의한 면책 ····· 287
제3절 면책불허가 사유 ····· 290
제4절 면책의 효력 ····· 290
1. 면책의 의미 ····· 290
2. 면책의 효력범위 ····· 291
3. 면책의 효력발생 시기 ····· 291

4. 면책제외채권 ····· 291
제5절 면책의 취소 ····· 292
1. 면책취소의 사유 ····· 292
2. 면책취소의 절차 ····· 292
제6절 면책 후 절차 및 기타 문제 되는 경우 ····· 294
1.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294
2. 면책결정 후 비면책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294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 294
4. 사기회생죄와 사기죄 구별 ····· 29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295

제5편 양식 및 법령

[양식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99
[양식 2]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301
[양식 3]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303
[양식 4]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305
[양식 5]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 306
[양식 6] 부속서류 4. 기타 ····· 307
[양식 7]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 ····· 308
[양식 8]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310
[양식 9]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 ····· 313
[양식 10]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 315
[양식 11]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322
[양식 12]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 324
[양식 12-1] 채무자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보고 ····· 325
[양식 13]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 326

CONTENTS

CONTENTS

[양식 14] 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 328
[양식 15] 회생위원의 채무자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 ····· 329
[양식 16]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 ····· 33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1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361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37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382

색인

사항색인 ····· 449
조문색인 ····· 452

제 1 편

개관

제1장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제3장 회생위원

제1장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제1절 도입과 시행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으며, 1999. 5.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 폐지 등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외형 확장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잠재적 부실을 안은 채무자가 대량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2. 6.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개인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2004. 3. 22.「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7198호)」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다.

제2절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참조)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

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모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빈번한 도산사태 및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대량생산 · 대량소비 체제의 확립과 이에 따른 과잉금융 풍조의 발생 등 사회적 상황의 변천과 궤를 맞추어 형성되어 온 결과로 볼 것이다.

제3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1.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1) 회생절차는 개인 · 법인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이 최대 10억 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이 최대 5억 원으로 채권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15. 7. 1.부터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3)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 · 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제293조의7).

담보권에 관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인가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1) 개론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이다. 반면에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유지하고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회생형 절차이다.

(2) 양 절차의 차이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대상	개인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제한 없음
신청원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파산의 원인인 사실
변제재원	장래 채무자의 소득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재단
채무액수 제한	담보부 10억 원, 무담보부 5억 원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장래 소득 변제 불요,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
관리처분권	채무자	파산관재인
면책절차	변제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3) 면책불허가사유의 비교

개인회생 (제624조 제3항)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파산 (제564조 제1항)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개인회생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4) 비면책채권의 비교

개인회생 (제625조 제2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파산 (제566조 단서)	1. 조세 2.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5) 절차상의 불이익 비교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으로 인한 각종 법률에 의한 자격제한 등의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도 파산선고로 인하여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채무자회

생법 제32조의2)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률에서 여전히 파산선고와 관련된 각종 직업상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조 제1항),[1]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익법인의 임원(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3호) 등이 될 수 없다. 특히, 장교 · 준사관 · 부사관(군인사법 제40조),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7조)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허가 · 등록이나 영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건설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 · 운영 등록(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다.

(6)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1)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는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7)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접수 추이(전국법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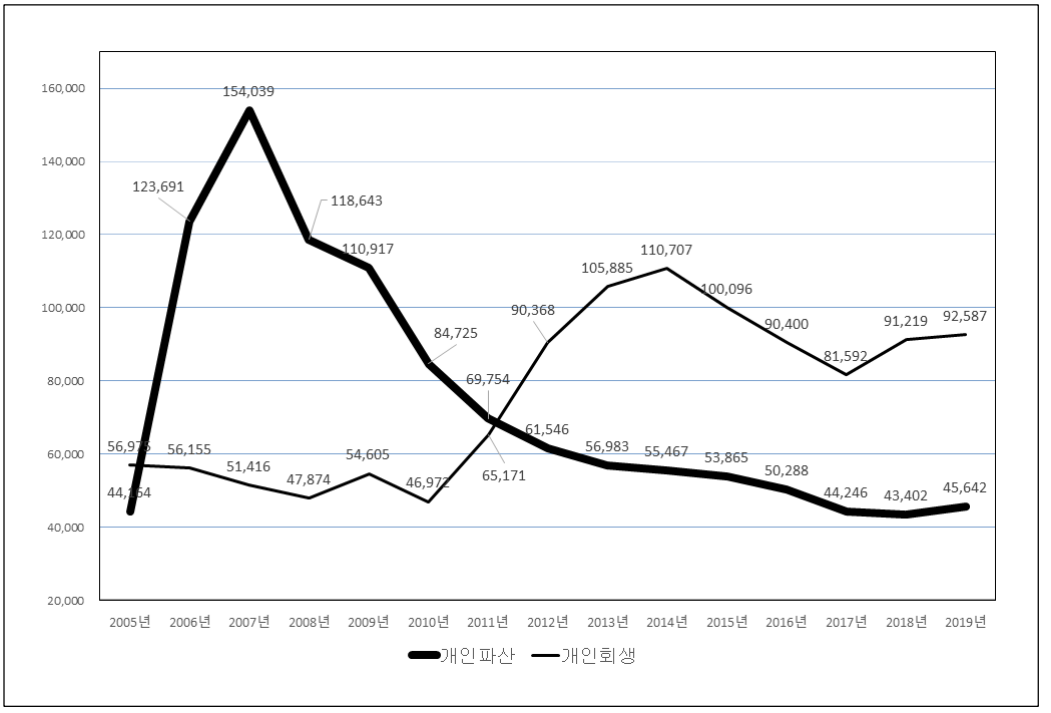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1)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3)]'에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이다.

(2) 채무조정 대상채권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이고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3) 채무조정 범위에서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전액 감면될 수는 없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이다.

---

2)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자료는 사법연감(법원행정처)에, 2019년 통계자료는 법원통계월보에 각각 근거하였다.

3)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금융기관들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되고, 2016년 제정 ·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출범한 특수법인이다.

(4) 채무조정의 방식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 채무조정절차이다.

(5)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6)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17. 6. 23.부터 전국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제도 활용을 통한 Fast 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을 받은 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 또는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작성한 '채무정보(개인회생신청서의 채권자목록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됨)' 등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주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로부터 위 신용상담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채무자를 무료로 대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③ 법원은 이와 같이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위 상담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의 정도를 감면하고, 위 '채무정보'의 제출로써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비교[4)]

구 분	신속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대상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제한없음	
연체기간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3개월 이상	제한없음	
채무상한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사업자 30억 원)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제한 없음
변제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8년(10년)	3년 (최장 5년)	-
조정범위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적용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율 50% 인하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변제기간 동안 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	청산 후 잔여채무 면책
법적성격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법률상 채무조정	
연체정보 등록·삭제시점	미등록		합의서체결 시 등록 (1101코드) (2년 경과시 삭제)	변제계획 인가시 등록 (1301코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 후 최장 5년간 변제시 삭제)	면책결정시 등록 (1201코드) (5년 경과시 삭제)

4) 신용회복위원회 공·사적 채무조정 비교표를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4.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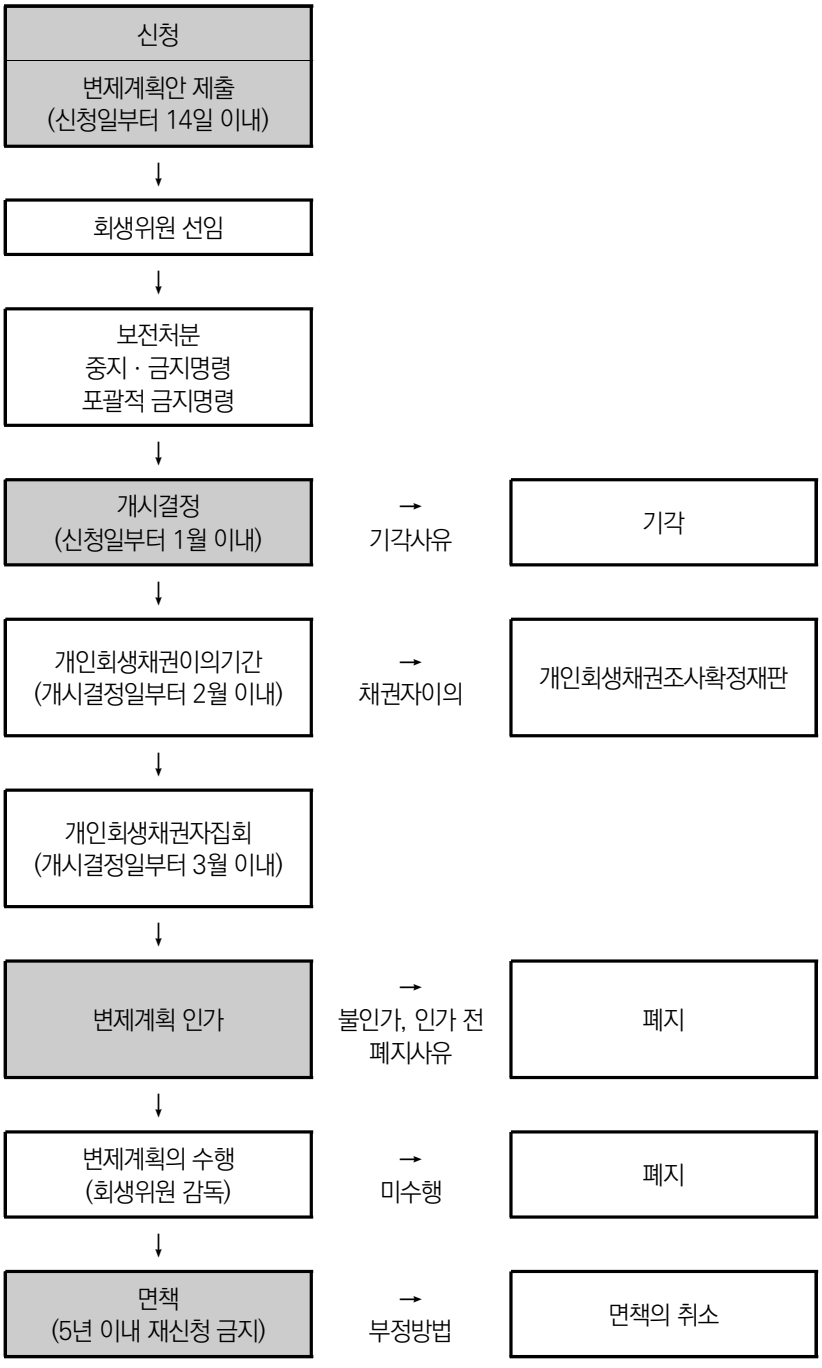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
기각사유
기각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이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변제계획 인가
→
불인가, 인가 전
폐지사유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폐지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담보부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2014. 4. 28.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0. 3. 1.부터는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개인회생사건이 추가되어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 하고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2절 채무자와의 면담

회생위원과 채무자의 면담은 개인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회생위원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후 면담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외에는 면담기일을 고지하되, 접수일로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고 있다. 회생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담기일통지서와 함께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 제출시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은 채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변제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다.

개시기각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그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96조 제1항).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가 여전히 재산을 관리 ·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수계의 문제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제59조, 민소법 제239조 참조).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목록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제5절 변제계획의 인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다음, 법원은 인가요건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는 ①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②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5] ③ 인가 전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④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6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법원은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①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 이후에도 법원은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다만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

5) 공정 · 형평의 원칙이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참조).

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함),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제7절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반면,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그러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③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3장 회생위원

제1절 의의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회생위원의 선임

법원은 ①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② 법원사무관등, ③ 변호사 ·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법원주사보 ·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⑥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⑦ ①~⑥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중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2012. 1.부터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 2.부터는 개인회생사건을 전임하여 담당하고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임회생위원과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회생위원으로 구분하여 전임회생위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예규 제9조의2).

한편 회생위원의 선임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때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선임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신청 직후 곧바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예규 제9조 제4항).

제3절 회생위원의 업무

1. 회생위원의 기본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②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④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6]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06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 제2항).

또한 회생위원은 ①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②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③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④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⑤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계산의 보고, ⑥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대한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7]

3. 법원이 정하는 업무

법원이 정하는 업무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①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②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긴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다.

6)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4항에 따라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할 수 있고, 구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2항은 회생위원의 집회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3. 28. 채무자회생규칙의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로는 판사가 직접 개인회생채권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예규 제8조의2 제1항).

7)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의2(재정보증)를 신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의 업무에 대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2018. 3.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4절 회생위원의 역할

1. 회생위원 업무의 특성

개인회생절차는 소극적 판단작용에 그치는 법원의 일반 민사재판업무와 달리 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의 인가결정뿐만 아니라 인가 후 약 3년간의 변제계획의 수행 및 감독업무도 포괄한다. 회생위원은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가 매우 특수하며 중요하다.

2. 회생위원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

회생위원은 극소수 채무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채무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차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동안의 개인회생절차의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신청기록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신청기록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고, 절차의 진행과정에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절차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법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체계 확립

회생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긴밀하게 의사를 소통하고,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 수입과 지출, 변제계획안 등의 쟁점에 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관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이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수입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전의 단계에서는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를, 인가 이후의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제지체 사건에 대한 불수행보고서를, 면책결정 단계에서는 변제수행완료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회생위원의 보고들을 참작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5. 회생위원의 역할 변화

근래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브로커 등에 의한 제도 악용 조장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92호로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을 제정하여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

회생위원은 제도 악용 및 브로커 개입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신건 기록검토 시 유의사항

회생위원은 기록검토 및 채무자와의 면담, 보정권고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건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관할유무, 재산 및 소득 신고의 진실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이 있는지 확인

(2) 중복신청 사건인지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5년간 주민등록표 등 · 초본(최근 2개월 내 발급[9)]) 등 첨부 여부 확인

(4) 위임장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는지, 경유증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외에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하여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5) 보정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대리인 변경(기존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 후 새로운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없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이 계속 변경되는지,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같은지 여부를 조사하여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

8)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28 판결).

9)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예규 제4조 제1항).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채권액 합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요건에 맞는지, 채권자의 명칭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상호만 기재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정권고), 채권발생일이 최근인지 여부와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부속서류 기재가 맞는지(별제권부 채권내역 확인 등) 확인

(2) 부채증명원과 채권자목록의 각 채권자명 · 원금 · 이자액이 일치하는지, 부채증명원 발행일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2월 이내 인지(중복신청하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있을 경우 부채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재산목록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비교하여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이 있는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확인

(2) 예금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다액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는지, 누락된 예금이 있는지 확인

(3)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및 해약환급금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시점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내역 검토

(5)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시세확인(www.kbstar.com)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부동산 시세 확인[10]

(6)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시가자료)를 통해 차량의 연식, 차종, 환가예상액 확인

(7)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서 최근에 거주지가 변동되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사용처 확인

(8)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차보증금 확인

---

10)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시가확인서는 단순히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받는 내용에 그쳐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 부동산의 입지 및 위치, 주변 환경, 구조 및 연식,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등을 들며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내용의 시가확인서가 작성 · 제출되면,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1084 판결 참조).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월 소득 산정이 적절한지 확인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정이 적절한지 확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 직장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가족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인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5)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작성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와 일치하는지,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

5. 진술서

(1)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소득을 축소하여 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 확인

(2) 중복 신청한 경우 기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취하, 기각, 폐지 등), 기존 사건에서 보정권고한 내용은 어떠한지, 기존 사건 종결 후 그 사유(취하, 기각, 폐지 등)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확인

(3) 채무부담경위(사치, 유흥, 도박 등) 확인

6. 변제계획안

(1)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명, 채권액이 채권자목록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2) 변제예정액표의 기간별 변제액 합계가 정확한지 확인

(3)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

제 2 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제1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2장 보전처분과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4장 재산목록
제5장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6장 진술서
제7장 변제계획안
제8장 면담
제9장 면담 후 사건관리 및 업무수행결과 보고

제1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신청서는 정식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처분, 별제권부 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회생위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간혹 대리인이 신청서 양식을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무자 양식에 덧붙여 작성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 제출 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한편 외국인은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제2절 관할

1. 문제점

회생위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주소를 검토하여 관할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실무에서는 관할을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예컨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왕래하기 편한 법원, 신청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은 법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등) 또는 실제 주소지에서의 거주 권원(소유권, 임차보증금의 존재 등)을 숨기기 위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주소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후자의 경우는 심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관할위반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외관만을 중시할 경우 관할의 잠탈을 널리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복조회 결과 다른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왜 새로운 법원에 다시 신청하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받은 후 허위로 관할을 만들어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2. 관할법원 및 문제 되는 사례

가. 관할법원

(1)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 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다(민소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그곳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다.

개정법(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된다(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부칙 제2조).[11]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3호).

---

11) 다만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2) 경합적 관할(관할의 특례)

채무자회생법은 관련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인 관할법원에 더하여 일정한 법원에도 경합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연대채무자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③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법원에 자신의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주채무자 및 보증인 등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관할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인정의 기준시점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33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어도 영향이 없다.

나. 관할이 문제 되는 사례

(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음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할이 인정된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임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인정 여부가 문제 된다.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출·퇴근 방법 등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비록 직장이 수도권일지라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관할을 인정하되, 직장이 부산이나 광주이고 실질적으로도 부산이나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거주사실확

인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무상거주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채무자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의 권원(소유권, 임차권 등)이 소명되고,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며(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등), 직장으로의 출·퇴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관할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채무자 본인만 서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상거주를 허락한 자와의 관계,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사유, 직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무상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가족의 거주 등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현주소로 주장하는 곳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실증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3. 관할위반의 경우 처리방법

법원은 관할위반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34조 제1항).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확정을 기다려 이송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원하는 경우 채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한 후 관할법원에 재신청할 것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송절차를 밟는다. 이송하더라도 기존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관할위반의 신청인 경우, 법원에 관할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단순히 금지명령·중지명령만을 얻기 위한 관할위반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환급계좌의 기재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 적립금의 과입금, 면책에 의한 잉여금 등으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는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주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전산상 적립금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지도한다.[12)]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으면 개시결정이 출력되지 않고, 적립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에게 환급할 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자동이체 하였으나 전산착오로 이체가 안 되거나 오랜 기간 변제를 하다가 착오로 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체액이 3개월분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의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채무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송달료)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3개월분의 연체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첨부서류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13)]의 첨부서류와 소명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

12)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치된 금원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 그 반환에 관하여 준용한다(예규 제12조 제1항, 제5항).

13)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58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89조 제2항). 또한 부채증명원,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1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경우의 예금통장 사본, 자동차가 있는 경우의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소명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1. 채무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법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3. 법 제579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4. 법 제579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5. 법 제579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6.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7.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생략〉

제2장 보전처분과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1절 보전처분

1. 의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 간의 불공평이 발생하고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은 보전처분의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보전처분의 시기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 보전처분의 효력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5. 즉시항고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 제4항).

제2절 중지 · 금지명령

1. 의의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등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중지 · 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전자가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의 신청은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중지 · 금지명령의 신청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 ·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예규 제4조의2).

2. 신청권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중지 · 금지명령의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실무상 개인회생채무자가 신청한다.

3.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제1호)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제2호)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3호)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제4호).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호).

5. 중지 · 금지명령의 효력

가. 효력 일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한다. 또한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지 ·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다.[14]

개인회생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금지명령을 위반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 ·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되므로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구하면 된다.

14) 중지 ·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제기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금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결정과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달라질 경우 강제집행 등의 금지의 효력발생시기가 각 개인회생채권자별로 다르게 된다.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이후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15]

다. 존속기간

중지 · 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 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라. 시효의 부진행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절차 참가, 파산절차 참가, 강제집행, 경매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된다.

6. 중지 · 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실무상으로도 간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나 채권집행절차에

15) 대법원도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및 급여 채권 등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강제집행을 금지한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달리 그 송달에 의하여 바로 개시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중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서 채무자의 다액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취소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7. 중지 · 금지명령의 송달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여 중지대상 강제집행절차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될 것이고,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정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만 금지명령을 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인 개인회생채권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을 실시한다.

제3절 포괄적 금지명령

1. 의의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 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중지 · 금지명령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 신청권자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다음 두 가지의 요건 모두가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절차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전체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될 위험성이 생기므로 채무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보전처분이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중지·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지역에 산재해 있고, 채권자가 어떠한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정 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상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하여 금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가. 효력의 발생시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므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단계에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다르면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의 효

력의 발생 시기가 개별적으로 나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 것이다.

나. 효과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실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로 보고 있다.[16]

6.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포괄적 금지명령,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6항).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7항).

7. 공고 및 송달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제4절 보전처분 등과 관련한 업무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행해지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사건부호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기록의 편철에 있어서도 가철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참조].

보전처분신청서와 중지 · 금지명령신청서에는 각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4조 제9호 · 제10호).

---

16)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5. 선고 2013나2024304 판결에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송달하더라도 그러한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 없으며,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가 중지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2015. 4. 9. 선고 2014다229832 판결)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그 절차가 중지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중지 상태가 유지되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일단 명령된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신청 취하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 · 금지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절차가 바로 종결되므로 중지 · 금지명령 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1절 개인회생채권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가. 법률상 정의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과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나.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일 것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은 채권인 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다.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별제권부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별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잔여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제권[17]의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예정부족액)을 일응의 개인회생채권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6조). 따라서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그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 모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관계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나. 개인회생재단채권 종류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1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5조 참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회생위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2) 원천징수할 국세 등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18],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

(4)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5호).

(5) 기타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호).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변제

18)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이 2009. 1. 30. 폐지(법률 제9346호)됨에 따라 부칙 제3조 제10항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및 주세
〈이하 생략〉

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예규 제10조 제3항).

나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면 대개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일 것이므로 그 수입으로써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용소득산정 시 이러한 채권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였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이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것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 제3항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19]

3.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채권은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된다.

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범위

1)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관세법 제3조, 제4조), 건강보험료(국민건강

19) 한편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6~7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재단채권(체불된 임금채권 등)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개시일 이전에 위 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변제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게재하고(추후 변제계획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폐지 가능),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개시 기간은 위와 같이 전액 변제를 마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실무례도 있다.

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즉 조세 등의 청구권은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한다.

2) 법에 따라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과 같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이 있다.[20]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와 같은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위 채권들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징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채권들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 2항, 제446조 제1항 제 4호를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으로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④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⑤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 ⑥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 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

20) 이러한 예로는 국유재산법(제73조 제2항)상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채권, 건축법(제80조 제7항)상의 이행강제금채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 제2항)상의 개선부담금채권, 공무원연금법(제37조 제2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6조 제2항) 및 군인연금법(제16조 제2항)상의 환수금채권 등이 있다.

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도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2항).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 전액이 변제되는 변제계획이 드물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거의 없다.

4. 문제 되는 경우

가. 약관대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1] 따라서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회사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신, 차후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장래 발생 가능한 환수금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채무자가 보험설계사이었던 경우 혹은 이전 보험회사에서 해촉되고 현재 다른 보험회사에 위촉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보험회사의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환수금채권의 발생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의 조건에 좌우되므로 조건부채권으로 보아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7조 제1항)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22]

---

2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22)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액으로 유보할 금액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평가한 계약자별로 발생 가능한 환수금의 총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통상 보험회사의 환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 등이 보증 한도를 정하여 보증을 서고 있는데, 이 경우 보증한도금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이익이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 등의 청구권에 대한 가산금

(1)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성립한 본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납부기한 도래시 과세당국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원천징수하는 조세 등)로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본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므로 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 성립한 본세와 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가산금 · 중가산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제611조 제1항 제2호). 반면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 ·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종래 그것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원과 과세관청 간에 견해가 달라 통일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이러한 가산금 · 중가산금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23]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 채권으로 반영하되,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남은 채권은 법원의 면책결정의 대상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다만 전술한대로 이러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까지

2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및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9211) 2018. 8. 29.자 공문(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의 가산금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안내) 참조.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극히 드물 것이다.

(3) 한편 2020. 1. 1.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금 제도를 폐지(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삭제)하였다. 다만 201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본문 참조].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가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이다.

기타징수금의 종류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과 동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이 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세 · 지방세 및 동 징수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및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절차에 따라 징수되므로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24]

사. 과점주주[25]의 제2차 납부의무

---

24)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기타징수금은 별도 코드로 관리하고 있고, '개인회생 채권(이의)신고서'에는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4대 사회보험료 및 (법상)기타징수금체납 내용'과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민사상)기타징수금 체납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부터 '보험료 등(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에도 우선권 유무를 표시하여 발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5)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채무자가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해당 채권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26]

법인(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27]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보훈대부금

국가보훈처가 채무자에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보훈대부금을 지원(차용)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보훈대부금 채권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보훈급여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른 상계권 행사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보훈급여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별제권 행사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국가보훈처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국가보훈처예규 제7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보훈대부금을 차용한 경우에 보훈급여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별제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상계권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상계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담보가 설정된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매월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담보를 실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별제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

---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무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료 미납내역서상 2차란에 “Y”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회사명을 기재한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27)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되는데, 채무자가 생존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한 보훈대부금은 언젠가 완제될 것이고, 변제기간의 종료시점이 되더라도 담보권 실행이 완결되어 채권확정신고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부금 전액으로 보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0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월 소득은 국가보훈처가 매월 지급받는 보훈대부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으로 산정한다.

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견 면책채권으로 해석되어 지며,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3조 제1항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① 특별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규정 형식으로만 보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고, ② 파산절차에서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의 특수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 개인회생절차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입법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책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면책'과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점, ② 특별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③ 특별법 제36조 제4항은 파산절차에 관하여만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28] ④ 사회정책적으로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청년의 사회진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대체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다.[29]

---

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 ③ 〈생략〉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검토

1. 채권현재액의 총합계

가. 양식상 기재 요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기재한다.

나. 신청자격과 관련한 채권액의 한도 문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채권액 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30]

예를 들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담보부채권 8억 원, 무담보채권 4억 원, 합계 1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무담보채권 6억 원의 빚만 지고 있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 '담보부'의 의미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서 담보부채권이라 함은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담보되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담보부채권이 되려면 담보권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이라고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31]

예를 들어 "무담보채권액이 4억 원, 담보부채권액이 3억 원이라고 하면서 담보물의 예상환가

29) 2019년 전국법원 회생위원 워크숍 발표자료 참조.

30)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채무총액 변동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근 채무자회생법을 개정(2020. 6. 9. 시행)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 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31) 실무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상단의 "채권현재액 총합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와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을 기재할 때 그 중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는 담보물 시가 평균액의 70% 상당액을 기재하고 있다(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물 시가 평균액의 70% 상당액보다 적은 액수인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실무상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바로 담보부채권액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액의 한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담보부 또는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액만을 보고 바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담보가치(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3억 원이 담보부채권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중 2억 원이 무담보채권이므로 무담보채권액의 합계가 6억 원이 되어 신청자격이 없다.

그런데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신청 당시 적어낸 금액과 후에 평가된 예상환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액 상한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다. 실무상으로는 일단 개시신청서의 기재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회생위원 등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피담보채권액을 판단하여 개시결정이나 인가 전 폐지 여부 등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지급불능 상태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현재액 총합계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3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33]

따라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의 부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한다.

채권번호는 기재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본래 채권의 번호에 부기하는 식으로(예: 1-1번)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본래 채권의 바로 아래에 기재한다. 보증인이 여럿일 경우, 예컨대 채무자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보증하고, 을의 갑에 대한 보증채무를 병이 보증하였을 경우, 갑이 1번이라면 을을 1-1번, 병을 1-1-1번으로 기재하고, 채무자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를 을 · 병이 보증한 경우에는 갑이 1번이라면 을을 1-1번, 병을 1-2번으로 기재한

32) 대법원 1999. 8. 16.자 1999마2084 결정 참조.
33)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다. 이 경우 채권의 원인란에 보증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채권의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소송물이 되는 개인회생채권별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이 2개 이상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또는 중첩적인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중복하여 기재할 수 있다.[34]

3. 채권자명

가. 확인할 사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채권자명으로 기재한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병기한다. 이를 통해 채권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고, 개인영업자의 경우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채권자계좌번호 입력 및 이체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일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주의할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채무자가 제출하므로, 간혹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추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혹은 대출상품명을 채권자로 오인하여 기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부채확인서를 꼼꼼히 비교하여 채권자를 제대로 특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원인

가. 기재사항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한다(예: 2020.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

34)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하여서만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원인관계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원인관계를 조사하여 채권의 발생원인에 중복기재하여 둠으로써 채무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원인관계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이 약속어음 액면금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증인의 경우 보증비율이 있다면(이른바 일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기재된 보증사실 확인원 혹은 잔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비율도 기재하도록 한다. 훗날 대위변제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예: 보증비율 85%).

나. 최근 채무가 상당할 경우 업무처리

실무상 채무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 이와 같이 채무의 발생 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35]

따라서 최근 채무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돌려막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나,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최근 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 경제시스템에 복귀하여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임을 고려하여, 도박 · 낭비 등으로 소비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5.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

채권자의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실

35)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참조.

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주소를 보정하도록 한다.

6.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 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예: 원금잔액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5.부터 2020. 6.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36]

7. 채권현재액

가. 원칙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기재한다.

나. 금융기관 발급 부채확인서

(1) 부채확인서 양식

이자 혹은 담보내역, 신용카드채권 등이 기재되지 않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2) 발급일 및 산정기준일 확인

부채확인서의 발급일 및 산정기준일을 확인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3) 부채확인서상 채무자명의 확인

부채확인서상 채무자가 신청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간혹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혹은 대표이사였던) 경우 법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경우에도 주채무자는 해당 법인이므로, 신청인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4. 기재사항).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

36)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이 되어 청구채권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채권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요구된다.

권자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법인이 세금이나 피고용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법인의 채무인지, 대표이사도 채무를 지는 경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법상 1인 대표이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법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37].

(4) 원금 및 이자 금액 확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가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원금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금 및 법 비용 등 기타 비용, 가지급금 등은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은 이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지도한다.

(5) 담보내역 확인

담보내역을 확인하여 물적 담보(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혹은 인적 담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주) 등의 보증서 담보가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단말기채권의 경우 부채확인서에 보통 기재되어 있지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 담보가 있는 경우가 많다.[38]

다. 자료송부서

(1) 원칙

채무자가 부채확인서 등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2조). 다만 자료송부서 제출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채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까지 자료송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39]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부채확인서 발급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료송부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는 실제 원금 및 이자 보다 과다한 금액이 기재된 자료송부서를 수령하고도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월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액 소명에 소극적인

37) 자세한 내용은 46면을 참고.
38) 즉, 채권자가 통신회사인 경우 부채확인서를 보면 통상 통신료채권과 단말기채권을 나누어 기재하고 있고, 그 중 단말기채권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사에서 보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채권자목록에 통신료채권과 단말기채권을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자료송부서를 실제 발송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로 내용증명 우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액 확인 시 주의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예컨대 가족) 허위로 채권을 만들거나 채권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송부서만으로 채권액을 인정하기는 힘들다. 이 경우 채권·채무원인증서, 원금 · 이자 입금통장내역,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도록 한다.

[기재례]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수령방식	증빙자료 (계좌번호 등)	변제 일자	변제금액 (원금/이자)	변제방식	증빙자료 (계좌번호 등)
총계				총계			
				현재 채무액 (원금/이자)			

[전산양식 D5118] 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별지 자료송부서에 의거하여 20 . . .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전화	
		팩스	

[전산양식 D5119] 자료송부서

자료송부서

채무자	○○○	주소	

1. 채권내역(기준일: 년 월 일)

(단위: 원)

1	채권의 원인			원금 현잔액 (①)	이자 현잔액 (②)	합계(①+②)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채권의 내용 / ①, ② 산정근거 (이자율)					
2	채권의 원인			원금 현잔액 (①)	이자 현잔액 (②)	합계(①+②)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채권의 내용 / ①, ② 산정근거 (이자율)					

2. 담보부 대출

채권 번호	피담보내용 및 목적물	피담보채권액	피담보 목적물 가액	담보부족예상액

주) 위 1.의 채권내역 중 담보부 대출을 기재함.

채권자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채무자 ○○○ 귀하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융거래자료도 내도록 하고, 오래전에 차용한 경우 그 사이에 변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3) 물품대금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등인 경우 물품대금 채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료송부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거래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라. 기타 자료를 첨부한 경우

(1) 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정증서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은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신뢰하기 힘들다. 이 경우에는 원인관계 소명자료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기재례]와 같은 양식으로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도록 한다. 특히 공정증서상의 금액은 장래 이자 발생을 대비하여 원금 이상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금전거래관계를 밝혀 실제로 오간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 시기를 살펴보고, 최근에 작성한 공정증서일 경우 가장채권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2) 압류 · 전부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등

이 경우 명령 일자를 확인하고, 명령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 등의 원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최근 일자인 경우 채권자와 실제로 그러한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3절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부속서류 1)

가. 의의

(1)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2)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

(가)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1항).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2항).

그리고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3항).

이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및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하고, 부속서류 1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나)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이러한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결국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 확정시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40]

(다) 면책결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효력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41]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본다면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채무자인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집행을 통해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여지가 생겨 위 (나)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관련한 실무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별제권 행사로 만족 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1) 문제점

변제계획안 작성 및 인가 시까지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경우, 추후 그 담보물의 환가액이 얼마가 될지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그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변제계획상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액(이른바 예정부족액)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정부족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담보물의 평가가 중시된다.

(2) 담보물 및 담보물의 평가

(가) 담보물의 종류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그 대상이다.

(나) 담보물의 평가 방법

위와 같은 담보물은 대개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중 '재산목록'에도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나 재산목록에 기재된 평가액은 청산가치의 자료가 되므로, 이를 저평가하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상 담보물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 중에서, 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담보물의 처분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와, ② 피담보채권 중 그 담보물의 환가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금액, 즉 예정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40) 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참조.
4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평가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②의 액수를 위 ①의 평가액의 70%로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감가가 큰 담보물평가액은 평가액의 70%보다 낮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원금의 한도

한편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계산된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채권현재액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변제받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달리 별제권자에게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부속서류 1의 검토: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 기재 사례

(가) 기재례(부동산)

(단위: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② 채권현재액(이자)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국민은행(주)	500,000,000 4,000,000	490,000,000	116,000,000	490,000,000
		2018. 9. 19.자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606,000,000원 목적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 희생아파트 1동 203호 환가예상액: 700,000,000원 * 0.7 = 490,000,000원			

(나) 기재례(자동차)

(단위: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② 채권현재액(이자)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A캐피탈(주)	13,000,000 1,000,000	10,500,000	3,500,000	10,500,000
		2018. 9. 19.자 1순위 저당권 저당금액 금 12,000,000원 목적물: 2017년식 소나타 차량번호 33소3333 환가예상액(시가): 15,000,000원 * 0.7 = 10,500,000원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해당 채권의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3)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한다.

임차권의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한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한다.

(4)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원금 + 이자)]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원금 한도)을 기재한다. 별제권 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한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 + 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한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한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한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담보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 · 을부),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확인한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확인한다.

예 · 적금 담보의 경우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통장사본이나 잔액확인서) 등을 확인한다.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부속서류 2)

가. 개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채권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거나 앞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회생위원과 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절차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2에 기재한다.

이러한 다툼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다음 '부속서류 2'란을 체크하고, 부속서류 2를 작성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규칙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외에 그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0조 제3항).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액 상한 요건은 개시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인가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안을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그 기준시점은 개시신청일이다).[42]

---

42) 즉, 개인회생채권자가 실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만약 법원이 그 이의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진행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법원이 그 이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인정액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상태에서 이의의 소의 제기나 그 결과는 기다리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나. 부속서류 2의 검토: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1) 기재례

(단위: 원)

채권 번호	채권자	① 채권자목록상 채권현재액		② 채권자 주장 채권현재액	③ 다툼이 없는 부분	④ 차이나는 부분 (②-①)	⑤ 다툼의 원인
		⑥ 소송제기 여부 및 진행경과					
3	(주) C 크레디트	원금	27,000,000	30,000,000	27,000,000	3,000,000	2018. 4. 1.자 300만 원 변제 여부
		이자	5,400,000	6,000,000	5,400,000	600,000	
		2019. 2. 5. 채권자의 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00 대여금) - 2019. 6. 30. 원고(채권자)승소 판결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000로 항소심 계속 중					

(2)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3)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④ 차이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 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4) 다툼의 원인(⑤)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한다.

(5) 소송제기 여부 및 진행경과(⑥)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 결과, 상소 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 기재하도록 한다.

3.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부속서류 3)

가. 개요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이전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되,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 후 확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의 내용에는 '원금 및 이자채권 잔액 000,000원에서 20 . . .부터 인가일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나. 부속서류 3의 검토: 전부명령의 내역

(1) 기재례

(단위: 원)

채권 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
12	홍길동	급여 전부명령으로 변제되지 않은 20,288,952원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00000 2. 전부명령의 대상채권: 급여 3. 제3채무자 송달일: 2019. 6. 18. 4.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확정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3) 전부명령의 내역

① 전부명령을 발령한 법원, ② 당사자,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4.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부속서류 4)

가. 채무자가 다른 자와 같이 전부의무(全部義務)를 부담하는 경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8조). 이는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인의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 · 인수인 · 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이 있다.

채권자는 당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채권소멸사유가 있으면 당초의 채권액으로부터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또는 일부의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이 없는 한 당해 절차에 있어서의 개인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전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전부의무 관계의 문제가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와 함께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자와 채권자 사이에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일부 경개나 일부 면제가 이루어지고 그 효력이 일반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다른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다.

나.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래 주채무자와 보증인과의 관계도 채무자회생법 제428조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은 최고 ·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28조의 경우와 달리 처리할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칙을 두어,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9조). 이 경우 보증인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주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도 묻지 않는다.[43]

다. 장래의 구상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단서).

한편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장래의 구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구상권자로부터 채권 전액의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그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2항). 그러나 전부의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44]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변제의 비율'이라 함은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면 개인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 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소유물 위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3항).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분만을 한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일부보증을 하고 일부보증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변제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1조).

라. 물상보증과 관련한 문제점

---

43) 이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개인회생채무가 보증채무이거나,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장래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미확정채권의 변제방식과 같이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될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를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제429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월 변제예정액을 산정한 후 유보 없이 변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4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1) 신청인 소유의 재산을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만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다만 신청인 소유 재산의 가치에서 제3자 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만큼을 청산가치에 산입한다. 이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시킨 후 청산가치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혹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부당히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신청인 소유의 재산을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하고 이에 대해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

신청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하고 재산목록상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3자 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다(단 제3자의 채무변제 가능성에 따라 공제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신청인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한다. 제3자는 연대보증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으로 기재한다.

마. 부속서류 4의 검토: 기타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부속서류 1 내지 3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부속서류 4에 기재하도록 한다.

[기재례]

채권번호 1번 (주)○○은행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주채무자는 배우자 △△△이고, 2019. 5. 7. 발생하였습니다.

5. 상계권

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1) 상계권 행사의 방법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

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을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공평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대출에 기하여 대출한 경우 약관대출금과 보험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와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45][46]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2) 자동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금액이 불확정한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된 금전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 등도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7조 전문, 제426조). 민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일반원칙은 첫째, 동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대립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목적이 동종이어야 하며, 셋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민법상 상계의 일반 요건을 완화하여,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라도 현재화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화하여 비록 민법상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 수동채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인 수동채권에 대하여는 자동채권인 개인회생채권과는 달리 금전화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금전채권이거나 자동채권과 동종 목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

---

45) 대법원은 선급설의 입장에서,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 후,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종래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의 상계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상계가 아닌 공제에 해당하고,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금은 단순히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대출을 실행한 보험회사는 개인회생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

46) 보험회사의 신용대출금과 보험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와의 상계는 92면을 참고.

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부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화시켜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7조 후문). 이러한 수동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개인회생채권자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청구권의 현실화를 승인한 뒤에 나아가 상계를 하고자 한다면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인 임차인이 차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제한 없이 상계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될 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법은 특칙을 두어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만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수동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21조 제1항 전문).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실질적으로는 공제에 해당한다)를 허용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제1항 후문).

나. 상계권 행사의 제한

(1)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인데, 상계에 대한 기대권만을 앞세워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의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만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환가·배당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위와 같이 상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수된 채권이 직접적으로 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계를 제한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어 있다. 오히려 상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을 회수하여 임의로 소비할 수 있고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게 되므로 비록 채권자평등의 이념은 달성될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실무상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저 변제액의 제공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채무자의 가용소득만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2) 상계권 행사의 제한사유

(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한

때(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제587조)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 채무자의 재산을 임차한 경우의 차임채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개인회생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채무자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예금반환채무 등을 들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상계권을 인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의 기대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가 없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발생하는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현실로 이행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후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채무자의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개인회생채권은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실질적인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의 액면가액과 대등하게 상계하는 것은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의 부담원인이 상속이나 합병 등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상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3호)

개인회생절차의 상계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가 그 기준시가 되므로 그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가치가 하락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하여 상계에 의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면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 (다)와 달리 타인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지 않으므로 위기 시에 악의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으로 자기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채무의 부담원인이 상속이나 합병 등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상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상계권 행사가 있는 경우

(1) 상계권 행사의 방법, 시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제587조)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회생절차와 달리(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계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처리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는 채권이 변제계획에서 재산의 처분으로 변제에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제재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기초한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계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 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상계를 반영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변제계획안도 수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상계된 경우 또는 인가 후에 상계가 된 경우 당해 채권이 감소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고제도가 없어 채권자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고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상계가 소명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토록 하여 당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예정액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실무상 사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개시결정 이전에 금지명령을 송달받고 금융기관에 수탁된 예금(수동채권)을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자동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회생위원은 예금을 한 날과 금지명령의 송달일(지급정지신청을 안 때)을 비교하여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계 후,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정정하도록 하거나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상계를 기다려 수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개인회생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22조 제2호).

또한 별단예금에 대한 상계 즉,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별단예금 중 사고신고 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47]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

47) 대법원 1998. 1. 23. 선고 1997다37104 판결.

제4장 재산목록

제1절 개인회생재단

1.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제2항).

한편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래의 급여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가. 개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민법 제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이에 속한다.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 병사의 급료(3호)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48]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호).[49]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호)[50]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48) 퇴직연금 지급채권에 대해 이와 같이 그 지급액의 2분의 1에 대하여만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고 하고 나아가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49)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구 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
서울특별시	3,700만 원	1억 1,0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400만 원	1억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000만 원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700만 원	5,000만 원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압류금지 대상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의 실무는 소액임차인 요건 필요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정의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제외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소액임차보증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나, 개정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호).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호).

이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금지채권으로 하여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제246조 제1항 제7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제246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전액,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 하거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항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이며, 예금의 경우는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전도 압류가 금지된다.

②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1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①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 침구 · 가구 · 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같은 법 제35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64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같은 법 제82조) 등은 각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라. 재산목록의 제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면제재산

1. 개관

채무자회생법은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580조 제3항).

이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시켜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면제재산결정

가. 신청 및 결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그 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재산목록도 작성하여야 함), 법원은 그 신청이 개시결정 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결정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재산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5항, 제580조 제3항),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7항, 제580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8항, 제580조 제3항). 이후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9항, 제580조 제3항).

나. 면제재산결정의 효력

채무자회생법은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51]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면제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4항).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지 않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더라도 면제재산결정을 받고자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회생채권까지도 개인회생절차

51) 이와 같은 점에서 "법 제5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는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0항).

에서 인정되는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면제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면제재산 자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동산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가. 원칙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제외재산이 된다.

그런데 면제재산이 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단순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정하려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액수가 1억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그 보증금 중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 3,70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면제재산이 인정되는 범위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9162호, 시행 2018. 9. 18 시행) 제10조 1항에 의해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3,700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52]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400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 원

라. 관련 문제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이 아닌 예금 또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얻은 자금으로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면제재산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악의 여부, 채무금액, 면제재산으로 바꾸기 전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한 경우

임차보증금 중에서 먼저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금액 중 일정액에 대하여 면제재산 결정을 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는 면제재산 결정은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먼저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 번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먼저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씩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가 아닌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4.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

5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참조.

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면제재산은 압류금지재산인 1개월간의 생계비와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재단제외재산으로 제출한 후 다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위 재단제외재산과는 별도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1천 11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 평균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3절 부인권

1. 의의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효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복귀시키는 권리이다.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53]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실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

실무상 주로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2)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 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3)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54]

---

53) 참고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부인권과 법적 효과가 유사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54) 다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은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

(4) 위기시기에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55]

(5) 위기시기에 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3.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가.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당해 담보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전시키는 형태의 대물변제 행위는 피담보채권액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설정행위 자체가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담보권의 실행행위 또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56]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될 수 있다.

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5) 이 경우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원래 그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상당한 한도를 넘지 않는 한 부인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청산 또는 부양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넘는 부분의 재산분할은 그 초과액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손해배상 목적의 재산분할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이혼이 성립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지는 데 불과한 데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인대상으로 될 것이다.

5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중략)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부인의 소나 청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채무자의 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 ·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 · 승낙, 등기 · 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부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다.

다. 행위의 부당성

파산절차에 관하여 대법원[57]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고 하더라고 행위 당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의 상당성에 관한 일반적 판단 기준에 관하여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위 법리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58] 즉 이 요건은 부인권 행사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4. 부인의 행태 및 개별적 성립요건

가. 고의부인

5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34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5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사해의사).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한다.

나. 위기부인(危機否認)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본지행위(本旨行爲)에 대한 위기부인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기하여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이다. 이익을 받는 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1항).

(2) 비본지행위(非本旨行爲)에 대한 위기부인

채무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부인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기 이전 60일 내(특수관계인은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확대하고(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2항 · 제3항), 선의의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3) 무상부인(無償否認)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기적 요건을 완화하여 부인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기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확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3항).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정도의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반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은 적으므로 수익자의 악의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기적 요건도 보다 완화하고 있다.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수익자의 입장에서 무상성이 있

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보증 또는 물상보증 행위는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59]

5. 부인권 행사의 주체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위원의 참가형태는 보조참가이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 제3항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다.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가.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 다만 그 효과는 채무자와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이었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2항).

다. 상대방 채권의 부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이행은 개인회생재단

5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참조.

으로부터 반환되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8조 제1항 전단),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8조 제1항 후단).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9조).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무를 선이행시켜 먼저 개인회생재단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7. 실무상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파산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에 따라 회수된 재산이 최종적으로는 파산재단으로 흡수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되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의 목적은 개인회생재단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편 부인권 행사에 따라 회수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으로 모두 귀속되어 변제계획에 있어 청산가치 보장에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들에게 더 변제되는 일은 없어 큰 의미는 없게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부인권 행사 시 회복이 예상되는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인권 행사명령을 하고 그 행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무상 부인권 행사명령 없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기타 신청이 불성실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60]

60)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대법원 2013. 3. 11.자 2012마1744 결정 참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편파변제 등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부인권 행사로 복귀된 재산을 가산한 결과 청산가치가 현가변제액을 초과하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채무자는 복귀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법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채무자의 회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8. 부인권의 소멸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04조). 부인권의 행사에 시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4절 환취권

1. 의의

환취권(還取權)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무자가 외형상 점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 · 등록하고 있는 재산을 일응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 점유 ·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 중에는 채무자 아닌 타인의 재산이 있을 수 있고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점유 · 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환취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1] 채무자회생법 제585조는 파산절차상의 환취권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61) 윤남근, 일반환취권과 관리인 ·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회생과 파산(Vol. 1), 사법발전재단(2012), 4면.

환취권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새롭게 인정된 권리는 아니며 본래 실체법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에 속하는 재산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 속에 섞여 있을 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애초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나 지위를 도산절차에서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62]

제3자 이의의 소와 제도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환취권은 권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재산의 반환을 구하게 되므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효력을 다투는 제3자 이의의 소와는 그 모습이 다르다.

2. 환취권의 대상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63]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인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에 불과하다.

3. 환취권의 내용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64]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제408조 제1항).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채

62) 전병서, 도산법(제2판), 법문사(2007), 285면 참고.

63) 사해행위취소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반면에,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64) 채무자회생법 제585조는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조문인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 준용하도록 하면서 각 조문에서 언급되는 파산관재인을 다른 개념으로 간주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채무자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무자회생법 제409조). 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제1항의 규정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선택권을 배제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제2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제2항).[65]

4. 환취권의 행사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한다. 직접 환취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항변의 형태로도 주장할 수 있다.

제5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

1.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지만, 신고를 누락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가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건물, 주택, 토지, 자동차 세목에 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재산처분 시점으로부터 5년을 넘지 않았다면 부인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최근 5년 동안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관할 관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한다.[66]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내역서에 나타나

65)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9조에 의하여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고,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66)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모든 세목이 포함된 전국 자치단체(단위)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시스템의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 표 또는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인터넷상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 재

는 재산 항목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재산 가액은 추정치가 많으므로 이를 바로 재산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통장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자주 주유를 한 흔적이 있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밖에 채무 증대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주식 소유 현황을, 누군가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였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사업용 설비 및 재고 등을 소명하도록 하고, 영업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2. 현금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3. 예금 · 적금 · 주식

예금 · 적금 ·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 소유 현황 및 현재 가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1. 4. 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67]의 신설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68]에서는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및 최근 1년간의 주거래통장내역을 첨부하도록 하여 현금의 흐름을 확인한다. 주식의 경우는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근 1년간의 주식매매현황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다.

정기예금 · 적금 · 청약통장예치금 등은 해당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적금

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하므로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은 파악되지 않아 전국 단위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67)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 경우에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가 많다. 부채증명서에 예 ·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용이 표시된 경우에는 담보내용을 확인하여 별제권으로 정리하거나 상계한 후 잔액만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4.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확인하여 실효된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재산목록에 기재한 보험 외에 거래통장내역 등에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발행 보험내역조회결과서를 제출받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다.[69] 약관대출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70]의 신설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축형 혹은 투자형 보험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71]에서는 압류금지

---

69)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 9. 12. 시행)에 따라 보험신용정보가 2016. 1. 1. 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보험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촉탁하여야 한다[법원행정처(특별지원심의관-699), 2020. 2. 28.자 공문(보험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서 신청기관 변경 안내) 참조].

70)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72]

소득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이 많거나 저축형 혹은 투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월 납입 보험료의 규모를 확인하고, 소득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에 가입한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채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채권과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채권을 상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보험상계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73] 그 후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② 그 외의 해약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이 되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즉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보험상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상계 요청서'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보험해약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 자신의 판단 하에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중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만일 보장성보험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72) 그러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 산정이 쉽지 않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형 및 투자형 보험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청산가치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보험금 중 압류금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73)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의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동산 · 채권 등 집행, 199면), 이후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5.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을부)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시가자료 등)[74]를 첨부하여 연식 및 차종, 환가예상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영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런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부모 등이 장애인이고,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의 자금으로 구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면 채무자의 단독 소유로 취급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의 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가예상액에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동차의 재산 가치로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해당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자동차의 연식 및 차종,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소득이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유지가 어려워 보일 경우에는 차량 구입자금의 출처나 차량 구입의 필요성, 차량유지비의 조달 경위 및 향후 유지 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한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월 할부금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한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득 및 부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의 차량이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진실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6. 임차보증금

가. 개요

임차보증금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차물건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확인하여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

74) 중고차 시세에서 리스차량 평가액이 일반차량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차량의 재산 가치를 숨길 목적으로 동종의 리스차량 인터넷 시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차종, 연식 등에 비추어 차량가격이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면 리스차량 평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기재하도록 한다. 월세, 관리비 등의 연체금을 공제한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확인서(임대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채무자의 경제적 위치 또는 소득에 대비하여 임대차관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근 5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전 거주지의 주거현황을 확인하여 이전 주소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전 임차보증금이 현재의 임차보증금보다 많았다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도록 한다.

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담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담보나 질권이 설정(이하 '담보설정'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 및 양도통지서(질권설정통지서)나 임대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담보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서 위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 임대차계약서 위 ·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를 줄이거나 허위의 관할을 만들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부동산중개인이 없이 작성되었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는 등 허술하게 작성되어 진정 성립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오고간 금융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보다 훨씬 이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임대차 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의 임대차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차보증금/소득에 비해 높은 임차보증금

주거의 형태 · 면적 등에 비추어 임차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시세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마. 채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채무자 가족의 거주지와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나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사이의 거리 등을 비교하여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데도 굳이 따로 사는 경우(미혼인 채무자가 부모님과 떨어져 따로 사는 경우, 기혼인 채무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한다.

바. 무상거주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자가 제공하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제3자와의 관계, 해당 주택의 규모 대비 거주 인원(특히 제3자가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식적으로 이러한 무상거주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3자가 경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사유 등을 면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하고, 제3자도 실제 거주하는지, 채무자에게 임대차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 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제3자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주택의 경우에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제공할 만큼 채무자와 신분관계가 있는지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 임차보증금의 재산목록 반영에 관련된 사례

(1) 개요

실무상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의 개인회생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채무자의 청산가치 반영과 관련한 각 법원 · 회생위원별 업무처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가용소득 책정에 있어서 업무의 혼선이 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재산목록 반영에 관한 사례를 선별하여 그 처리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사례】 채무자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00번지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 다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채무자의 부의 주소지인 도봉구 방학로로 전입신고 되어 있음.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번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가용소득 10만 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함

채무자 및 채무자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방안(1안), 법률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안(2안), 채무자가 과거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고 현재도 채무자의 가족은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는 방안[75](3안)으로 크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민사집행 실무가 소액임차인 요건 필요설에 따르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하는 3안이 타당할 것이다.[76]

(3)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채무자 명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보조 받은 경우

【사례】 채무자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00번지에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채무자의 부로부터 보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실질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며, 따라서 위 금액 전부 압류금지채권이고 청산가치는 0원임을 주장함(부로부터 5,000만 원 조달된 금융거래내역서 제출됨).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기재하는 방안(1안), 압류금지채권 3,700만 원만 인정하여 청산가치를 3,3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방안(2안)으로 크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이 채무자인 이상 채권자의 집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2안처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의 부를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기재할 수는 있을 것이다.

(4)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또는 양도담보설정금액과 압류금지채권의 중복 공제 여부

【사례 1】 채무자는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임차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위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이 채권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채무자는 국민은행을 별제권처리하고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차감한 4,000만 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700만 원 차감한 3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위 채무자의 청산가치 금액의 타당성 여부

【사례 2】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인 임차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위 임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이 채권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채무자는 국민은행을 별제권처리하고 임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700만 원 차감한 1,3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위 채무자의 청산가치 금액의 타당성 여부

---

7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참조.

76)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결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할 것이다.

사례 1의 경우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300만 원으로 보는 견해(1안), 별제권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액만 공제하여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2,300만 원으로 보는 견해(2안)로 크게 의견이 나뉜다. 별제권 주장과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1안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7]

사례 2의 경우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1,300만 원으로 보는 견해(1안), 채무자의 별제권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최초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가 아니므로 별도의 면제재산신청을 통해서만 3,7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2안)로 크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별제권 주장과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중복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2안처럼 별도의 면제재산신청을 통하여 3,7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5) 임대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에 관한 사례

【사례】 채무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4,000만 원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인인 경우도 동일함) 서초구 서초중앙로 00번지 임차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함. 이에 대한 청산가치 금액의 타당성 여부

①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하고, 임차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산가치가 되므로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전세자금대출 4,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는 0원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② 임차보증금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질권설정 없는 경우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신용대출에 해당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3,700만 원을 공제한 3,3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다(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으로만 되어 있고 양도담보 또는 질권설정 없는 경우 별제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함).

한편 채무자(입주자)가 임대인과 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를 하면

77) 별제권 대상 피담보채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이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이고, 그 중 일정액은 압류금지재산 또는 면제대상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자 2011라231 결정 참조).

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대출)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나, 나머지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다.

(6)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압류금지채권 주장을 하는 경우

【사례】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전 3개월 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2,000만 원을 받고(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인으로 입보됨) 서초구 서초중앙로 00번지 임차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함.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0원으로 하고 가용소득 10만 원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함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고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1안),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2안)로 처리의견이 나뉜다. 채무자가 향후 면책될 경우 2,000만 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잔존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채무자의 최저 주거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2안처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서울회생법원 다수 회생위원의 의견이다.

(7) 자녀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인 경우

【사례】 채무자는 전 거주지에서 현 거주지(서초구 서초중앙로 00번지)로 이사하면서 채무자 재산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마련하였지만, 현 거주지 임차인 명의를 채무자의 자녀로 한 경우, 청산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부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 압류금지채권 3,70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을 청산가치로 파악하자는 견해(1안), 실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악하되 명의가 자녀 명의인 이상 형식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5,000만 원 전부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2안)로 크게 의견이 나뉜다. 채무자의 실질재산으로 파악한 이상 압류금지채권의 판단도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1안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7. 부동산

가. 개요

부동산의 소재지 및 면적,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집합건물),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 환가예상액,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등을 확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

료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시가확인서, 부채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부동산의 가격 평가

부동산의 가격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부동산의 처분가치를 알아야 하고, ②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피담보채권 중 그 부동산의 환가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금액(예정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가격평가를 엄격하게 하려면 감정평가사 등의 공식적인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감정평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청산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되면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한 회생위원의 간이평가로 충분하다.

회생위원은 객관적인 시세확인자료의 시가를 통한 간이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 시가확인서는 단순히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받는 내용에 그쳐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 부동산의 입지 및 위치, 주변 환경, 구조 및 연식,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등을 들며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내용의 시가확인서가 작성 · 제출되면,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78]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근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개정(2020. 11. 24. 시행)하여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2인의 시세확인서' 부분을 삭제하였고(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및 제3조 참조), 위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구체적인 시세확인자료의 예

(1)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확인(onland.kbstar.com)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아파트가 아닌 주택 및 토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실거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정3729 판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참조.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인 시가확인이 불가능한 아파트가 아닌 주택 및 토지는 위치, 용도, 개발계획 등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감정기관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바람직하나, 최근 매매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거래가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최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을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객관적인 시가확인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공시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 시세로 보고 있다.

(3)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매기록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도 감액된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가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명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한다. 만약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 차임을 채무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채무자가 과거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 및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은 물론 매도 및 매수가 반복된 경우 혹은 매매 당시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과거의 매매거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이 오고 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에 임박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매도했을지라도 매도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부인대상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매도대금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 또는 우선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에는 편파변제가 문제 될 수도 있다.

바. 선행가압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금액 산정 방법

(1) 문제점

별제권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별제권의 채권현재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속행은 가능하고 별제권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이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79]

그런데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선행가압류)[80]가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별제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할 것인지 문제 되는데, 아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가압류채권 현재액 30,000,000원 2. 근저당권설정채권 현재액 30,000,000원, 채권최고액 50,000,000원 3. 가압류채권 현재액 30,000,000원 4. 근저당권설정채권 현재액 30,000,000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청산가치)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가압류가 효력을 잃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별제권의 채권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가압류가 효력을 잃으면 가압류권자와 별제권자 사이의 안분배당 문제는 생기지 않고,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별제권자에게만 배당되고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배당될 것이기 때문이다.[81]

위 사례에서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30,000,000원 (9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을 기재하면 된다.

(3) 변제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

---

79) 재산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금액은 청산가치 산정의 자료가 되는바,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파산절차에서도 부동산의 시가에서 별제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배당재원이 된다.

80) 최초의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별제권이 있고 그 별제권 사이에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81) 이때 가압류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될 뿐이다.

가압류만을 실효시킬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

이렇게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당해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될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가압류권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는 없지만,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집행법원은 선행가압류권자와 별제권자를 동순위로 하여 안분배당을 하게 되며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은 가압류채권 미확정을 이유로 집행공탁을(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시가로 매각될 경우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은 1. 가압류권자 22,500,000원 2. 근저당권자 30,000,000원 3. 가압류권자 18,750,000원 4. 근저당권자 18,750,000원이 되며, 가압류권자들의 배당액 41,250,000원(22,500,000원 + 18,750,000원)은 집행공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 및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 된다.

①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인 가압류권자의 배당액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별제권자가 배당받게 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 90,000,000원에서 별제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48,750,000원(30,000,000원 + 18,750,000원)을 제외한 41,250,000원이 된다.

반면, ②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그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82]는 견해에 따르면,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별제권자의 채권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가압류권자의 배당액 41,250,000원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4. 근저당권자에게 11,250,000원 추가배당된 후 잉여금 30,000,000원은 채무자에게 배당되므로,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 90,000,000원에서 별제권의 채권현재액 60,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이 된다.

②의 견해에 대하여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①의 견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82)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2호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등 참조.

얻는다는 비판이 있으나,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더라도 그만큼 청산가치가 상향되어 실제로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①의 견해에 따르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 다만 그 배당액이 총 변제예정액이나 변제율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인 경우[83]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일시변제금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8.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가. 화물차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아닌 지입회사(운수회사)의 명의로 표시되어 있어 화물차가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화물차 담보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화물차 구입자금의 출처, 지입계약 종료 시 화물차의 명의가 지입회사(운수회사)로부터 신청인으로 변경될 예정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고가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할부금 완납 시점의 청산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 화물차는 담보채권이 크기 때문에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는 거의 없지만 할부금 완납 시점의 청산가치가 수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제율을 상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영업용화물차의 면허(영업용번호판)는 사업양수도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므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면허(영업용번호판)양도 알선업체의 거래시세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임차보증금, 이행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84] 채무자와 브랜드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상품판매위탁계약서를 제출받아 이행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보증금이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행보증금을 재산목록에 반영

83)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압류가 실효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8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하도록 한다.

다. 사업용 설비, 비품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 기록)에 의해 직전연도의 매출이 도매 및 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은 1억 5,000만 원,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여부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영업소득자

사업용 설비 및 비품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및 자산별 환가예상액 자료, 주요 유형자산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통해 자산의 취득일자, 장부가액을 파악하여 환가예상액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아니한 영업소득자

사업용 설비 및 비품에 대한 목록 및 간이평가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성격, 사업 규모, 사업용 설비 및 비품의 취득일자, 취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가예상액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라. 재고품(재고자산)

(1)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재고품은 상거래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 재고뿐만 아니라 원재료 재고도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재고자산은 직전연도 결산 시점의 평가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고자산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고자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직전연도 결산 시점과 개시신청 당시의 재고자산의 변동이 큰 경우 또는 재고자산이 직전연도 결산시점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등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월평균재고금액 등 합리적인 금액을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채권자목록의 물품채권은 신청인 입장에서는 매입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물품채권(매입채무),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의 흐름은 재고수불부로,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는 매출채권명세서, 매출채권원장, 금융거래의 입금내역을 통해 점검한다. 매입한 물품

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매입한 물품이 판매되었으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며, 매입한 물품이 판매되었고 매출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목록	물품의 판매 여부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	확인해야 할 사항
채권번호 ○○번 물품채권	미판매	-	재고자산 반영 여부 확인
	판매	미회수	매출채권 반영 여부 확인
		회수	회수대금의 사용처 확인

(2)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고품은 상거래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고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마. 매출금 채권

(1)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미수금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매출채권은 직전연도 결산 시점 또는 개인회생개시신청 당시의 매출채권을 반영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채권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채권(매입채무) 관련하여 물품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 물품이 판매가 되었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은 매출채권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매출채권은 장부금액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에게 회수가능성을 거래처별로 소명하도록 한다. 거래처가 폐업하였거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장부상 매출채권과 실제 매출채권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인감이 날인된 채권채무잔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채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매출채권이 회수되었으나 그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

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회수일람표 및 금융거래의 입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 주장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2)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균형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바. 기타

(1) 주식

(가) 법인사업자(신청인이 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인 경우)

신청인이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개별자산을 재산목록에 직접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목록의 기타란에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주식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주식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법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가치가 다르다는 소명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자산-부채)에 신청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적인 투자자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증권사별 계좌상세내역서를 제출받아 주식계좌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주식 월별수익현황을 제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금원(또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금원)과 주식투자로 손실된 금원을 비교하여 주식투자로 손실된 금원이 상당히 적다면 주식에 투자한 금원(또는 주식)이 남아 있거나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권고한다.

증권회사가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식거래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의 매도금액이 큰 경우에는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다.

(2) 영업권(권리금)

학원 등의 총판 영업권(또는 권리금)을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현재 시점의 영

업권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재산목록의 기타란에 반영하도록 한다. 식당, 노래방, PC방 등의 권리금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양수도 계약당시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외에 영업양도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상화폐, 선물투자

채무자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잔고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반영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매도한 경우 매도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게 한다.

채무자가 선물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였다면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면 되지만, 증거금 등을 이유로 대여계좌나 미니선물업체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나 잔고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선물투자금이 입출금된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현재시점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9. 예상 퇴직금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1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상으로 전액이 압류 금지되어 있는 퇴직금 등은 재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85]

10.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청산가치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한다.

---

8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11. 기타

가. 명의신탁(부동산)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소유권은 수탁자인 채무자 또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로 인정될 것이므로, 그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86]

반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인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더라도, 부인권 행사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87]

나. (가)압류적립금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적립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가)압류적립금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8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87)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부인권행사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없이 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근거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에 의해 기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해석됨.

배당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본과 채권자목록을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절차가 중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공탁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만약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목록을 정리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인가 후 가압류가 실효되어 채무자의 소유가 되므로 위 가압류 배당금만을 재산목록에 기재한다.

다. 개인택시 면허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개인택시는 자동차 시가와 면허의 시가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나, 보통 개인택시 시가에 대한 자료에는 자동차의 시가와 면허의 시가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가 없어 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가액의 50%를 기본재산으로 보고 취득 후 매년 5년 동안 연 10%씩 기본 재산에 가산하자는 견해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면허의 시가 전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면허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선업체의 시세를 조회 확인하고 적정한 금액이 재산목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해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지급받지 않고 60세가 되어야 찾을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6절 배우자 명의의 재산

민법은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판례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등). 특히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 264249 판결 등).

이와 같이 부부별산제를 전제로 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고, 특히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원칙과는 달리 만연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를 제정(2020. 11. 24. 시행)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게 되었다(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거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채무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제5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1절 개요

1. 신청자격으로서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588조), 개인채무자는 다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제3호).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제3호).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이 가용소득은 일정한 경우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의 경우)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도중에 폐지되는 사건이 많게 되어 오히려 그 개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운영 자체도 현저히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채무자의 신청적격과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인지의 주된 판단 기준은 결국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언제'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가는, 원칙적으로 ① 채무자가 개인회

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계속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수입'의 의미

가. 의의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나. 수증소득이나 보험금소득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나 보험금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계속적 · 반복적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일정한 계약관계에 기하여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증여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 반복적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장차 소득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폭의 소득증가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장래 소득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물가인상률과 생계비의 증가비율 등도 함께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추정치를 가지고 변제계획을 작성한다면 변제계획의 수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래 소득의 증가'는 '각종 물가인상률 및 생계비 증가율'과 상쇄된다고 보고, 이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에 넣지 않는다.

다만 변제계획 기간 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증가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되었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현저한 소득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

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급여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하고 나면 가용소득으로 남을 부분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생활보조금 외에 다른 계속적 · 반복적 수입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른 계속적 · 반복적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생활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생활보조금을 계속적 · 반복적 수입으로 인정하기 힘들고, 다만 생활보조금 이외의 소득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활보조금 이외의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생활보조금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한다면 양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제2절 급여소득자[88)]

1. 급여소득자의 의미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2. 급여소득자의 예

가. 회사원 · 공무원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급여 시스템이

88) 직종 및 성별 평균 임금 확인은 고용노동통계(www.laborstat.moel.go.kr) 홈페이지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과거의 실적 등을 볼 때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영업[89]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회사원의 경우라면, 소득의 원천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단기의 파트타임을 하여 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얼마나 직장을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 온 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와 하루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계속성 ·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신청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도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예규 제7조의2 제1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연금수령자

(1) 원칙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89) 전형적인 예로, 마약제조 및 판매업, 무허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580조 제1항, 제2항).

(2) 노동가능 연령임에도 연금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이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연금소득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경력이나 과거 소득활동을 확인하여 과거 상당 기간 근로소득을 얻었고 현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기에 인접하여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건들보다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생계비 인정범위를 최소화).

라.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가령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급여소득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3년 내지 5년의 변제계획기간 동안의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3년 내지 5년 중 상당한 기간 동안은 월급으로 변제하고 정년 후의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최근 취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직장을 구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 직장의 재직관계 및 소득관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누적된 자료가 부족해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현 직장에서 장래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습기간 중 소득은 장래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 허위로 직업을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근 취업자인 경우 학력 및 과거의 소득경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진술의 진위 및 과거 소득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종사한 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이나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직업이 변경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의무 혹은 1년마다 소득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문구를 변제계획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사업은 폐업하였으

나,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바꾸어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바.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사업자등록 명의가 배우자)에서 일하면서 급여소득을 얻고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체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되,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 독립적으로 급여소득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 영업용 택시기사[90]

영업용 택시기사는 회사에서 정한 사납금을 납입한 후의 수입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즉 사납금을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사납금 납입 후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이 급여가 된다. 그런데 사납금 납입 후의 수입은 본인 외에 알 수 없다는 점이 영업용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확인한 결과 매일 사납금(12~14만 원) 납입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 급여는 약 140만 원이며, 사납금 납입 후 월 수입은 약 60~7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2020년 기준). 따라서 영업용 택시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2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험료, 가스비, 차량 정비비 등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월수입 산정 시 추가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직업분류별 통계자료(2019년)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원'(영업용 택시기사 및 버스운전 기사 포함)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46만 원이다.

3.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채무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와 사업자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재직사실 및 소득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 소득경력과 비교하여 현 직장에의 취업이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면담을 통하여 직장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 근무형태 등을 파악하거나 발신 기지국이 나타나는 휴대전화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근무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9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의 개정(2020. 1. 1. 시행)으로 택시기사의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택시기사들의 요구로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다.

4. 급여의 산정

가.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2월~5월 이후에 전년도의 것을 발급받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채무자가 모의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쉽게 위조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부양가족 공제내역을 기초로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 공제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월 평균수입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소득 계) − (4대 보험료 계 + 결정세액 계)] ÷ 개월 수

급여명세서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수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수입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급여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힘든 영업소득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고한 월 평균수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월 평균수입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월 평균수입을 기초로 월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2) 급여명세서

신뢰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는 위조가 쉽고(여러 사건에 걸쳐 동일한 양식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고 있는 경우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상여금명세서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길 수도 있으므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현금 지급 수당 등은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여명세서는 보통 보수계와 공제계로 나뉘고, 보수계에서 공제계를 뺀 실 수령액을 근거로

월 평균수입을 산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제내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소득세 · 주민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에 노조회비 등 이에 준하여 원천 공제되는 항목 이외에 직장 대출 상환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금(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이 실효되기 때문),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공제조합비나 마을금고 출자금 등은 공제할 수 없다.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공제조합비나 마을금고 출자금 등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급여명세서에 의한 월 평균수입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보수계 총계 – (세금계 + 4대 보험료 계 + 노조회비 등)] ÷ 개월 수

(3) 급여통장

신뢰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상당한 기간 일정하게 급여가 입금되고 있는 경우는 신뢰할 수도 있으나, 최근 취업한 경우에 신청일을 전후하여 통장에 사업자명 등으로 급여로 입금된 것은 신뢰하기 힘들 수도 있다. 또한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의 일부는 이 계좌로,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통장에 표시되는 입금자명을 자유로이 입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객관적인 급여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의 소득경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한 소득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의 기준소득월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91]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

9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 31.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사정상 통장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3자가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임을 확인한다는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채무자회생법 제591조), 그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5호)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나. 산정기간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산정한다(예규 제7조 제1항 제1호). 중간에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1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벌었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다.

제3절 영업소득자

1. 영업소득자의 의미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지만, 불법적인 영업이 아닌 한 사업자등록을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1. 22.]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 (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 31.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하지 아니하여도 타인에게 고용된 관계가 아닌 독립적,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취급한다.

2. 영업소득자의 분류

가. 업종별 분류

제조업, 서비스업, 도 · 소매업

나. 과세유형별 분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엄밀한 의미에서 영업소득자가 아니나, 법인의 외형을 빌어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라.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지 아니한 기타 영업소득자

3. 영업소득자인 경우 구비서류[92)]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구체적으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영업소득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재무제표 등 세무 · 회계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소득자의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한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영업소득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휴 · 폐업 사실 확인원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④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9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예규 제7조 제1항 제2호).

⑥ 소득금액증명
⑦ 재무제표 확인원
⑧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각 계정별원장, 계약서(임대차, 가맹비, 기타보증금)등 자산관련 자료]
⑨ 사업관련금융자료

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지 아니한 영업소득자

사업관련금융자료, 영업장부 등

다.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

라. 기타 영업소득자

보험설계사, 회원모집인,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 등의 기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 금융거래내역, 비용 등 지출 소명자료 제출

4.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소득자는 강제집행 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만을 본 절차의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배우자 등 타인인 경우

가족구성원 특히 배우자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이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만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면 독립적으로 영업 소득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직업이 없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예컨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신청인 중심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배우자와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

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신청인의 신고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최근 경력이나 진술 등으로 사실 여부 판단함). 위의 경우 신청인을 영업소득자로 인정하고, 사업체 전체 소득이나 전체 소득의 1/2 정도를 신청인의 영업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5. 영업소득의 산정

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는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6개월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함). 면세사업자(의사 · 한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가수 · 배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등)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을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원칙으로 함)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어서 보통은 세무서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매출금액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나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 업종에 있는 채무자가 제출할 수 있다.

한의사, 음식점 영업자 등은 매출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여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나, 이들이 재료를 매입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할 수 있다.

영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에 임대료 지급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매입금액 외에 임대료를 추가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월별로 집계되고(1년 단위로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도 나타나도록 발행할 수 있다. 음식점 영업자처럼 매출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위 집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소득금액증명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비율 및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어서 실제 소득보다 대폭 줄어든 금액이 기재되므로, 영업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관점에서는 대체로 의미가 없고,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득으로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재무제표

(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출할 수 있고, 매출금액 및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매출금액 및 지출비용 모두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작성한 장부에 기초한 금액이 기재되는 것이므로, 매출금액에는 현금수입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출금액은 과다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출항목 중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은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므로 순소득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 손익계산서 검토]

과목	검토사항
Ⅰ. 매출액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대조 검토
Ⅱ.매출원가	
상품, 제품매출원가	
기초상품, 제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입, 매출장으로 구입 시기 등 검토하여 시가 또는 현가로 산정, 재산목록 반영, 잔존 상품 · 제품이 전기이월 상품 · 제품으로 보일 경우 현가로 반영하고 당기 상품 · 제품일 경우 시가 또는 구입가로 반영함이 타당함
기말상품, 제품재고액	
Ⅲ.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기초상품, 제품재고액 + 당기상품, 제품매입액 - 기말상품, 제품재고액)] / 매출액 × 1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급여	계정별 원장, 직원 명부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인 경우 및 일용직 등 인건비 지급이 영업의 종류 등으로 과다한 경우 정당한 인건비 지급인지 검토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영업의 형태 등으로 접대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계정별 원장 검토
접대비	
감가상각비	비용 공제 제외가 타당함 - 수입에 합산
지급임차료	
보험료	환급예상액 재산 반영
차량유지비	재산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리스차량 등인 경우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만한 사정인지 검토
외주가공비	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 등으로 과대계상 여부 검토
Ⅴ.영업손익	손실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비용공제 등 (감가상각비, 지출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여도 손실금으로 보일 경우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수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을 소명하도록 하고,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주장이라면 수정 신고를 요구함
Ⅵ.영업외수익 (이자, 기타 수익)	수입금으로 합산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손실)	매입 비용 공제금에서 제외
Ⅹ. 당기순손익	분식회계로 이익금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요구함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속적인 보증을 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영업자가 간혹 있음)

(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일람할 수 있게 나타낸 것으로 손익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을 차변에, 그리고 모든 부채 및 자본을 대변에 기재하는 데서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생겼다. 작성 시점은 대부분 결산 시이지만, 개업 · 폐업 · 합병 때에도 작성된다.

[참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검토]

과목	검토사항
자산	
Ⅰ. 유동자산	
현금, 보통예금, 정기 예 · 적금 기타 단기금융상품	사업자통장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산으로 반영하되, 가용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이 압류된 경우 이를 제1회 변제기에 일시 투입하는 안을 고려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 등과 대조하여 실 매출금 중 회수불능채권 (대손상각금)을 제외하고 재산목록 반영
(2)재고자산	
상품, 제품	실 재고자산 현가로 평가하여 재산 반영 (선입, 선출 원칙 고려 현가 반영)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장래청구권으로 재산목록 반영
(2) 유형자산	
기계장치	실 가액 평가하여 재산목록 반영 감가상각하지 않았을 경우, 감가상각 후 반영 실 가액 평가서로는 중고기계거래소 시가확인서, 중고차량인터넷 시가조회서, 비품, 시설에 관한 간이평가서 등을 적절히 제출 요구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3) 무형자산	장래청구권으로 재산목록 반영
(4)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실제 잔존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등 재산 반영,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부채계정의 미지급금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여 미지급금을 공제할 것인지 판단하고, 기타보증금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이 있을 것인데, 이것 역시 가맹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반환 가능 여부를 검토
기타보증금	
부채	
Ⅰ.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 미지급금 상당 금액을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검토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미지급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단기차입금	
부채총계	
자본	
부채 및 자본총계	

나. 산정 기간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영업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다. 영업비용 등의 공제

(1) 일반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영업의 경영 ·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영업의 경영 ·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 영업비 · 판매관리비 등을 말한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하므로, 영업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예컨대 소규모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영업소득에서 배우자의 대체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소규모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배우자의 기여도를 조사하여 대체인력 정도의 기여가 있는 경우, 예컨대 채무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다른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배우자에 대한 대체인건비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2)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경우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경우 영업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지출자료를 조사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동종업자의 통상의 지출 비율로 영업비용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지출자료를 조사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통상 영업비 지출 비율이 총소득의 25%~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급여소득자가 영업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급여소득자 중에 업무의 성격상 영업비용 지출이 많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영업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업비용의 공제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영업비용을 급여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소득산정방법

영업소득자의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 비용)] ÷ 개월 수

지출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통해 매출금액을 최대한 확인하여 그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소득에 가까운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총 소득에 동종 업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영업비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보고 총 소득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순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6. 영업자 유형별 검토

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고 있는 영업소득자

보험설계사,[93] 회원(카드, 정수기) 모집인, 학습지 교사,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확인한다.

보험설계사의 총수입금액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지급명세서로 확인하고 영업비용은 평균적으로 25%~30% 정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업비용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비용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보험설계사의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은 팀의 공통 경비가 신청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통경비명세서, 일자별 지출증빙자료,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영업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보험설계사, 회원 모집인,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에 비해 학습지 교사의 영업비용은 적게 발생할 것이므로 영업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직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영업비용을 인정하는 수준 77.6%(소득률 22.4%, 4,000만 원 이하)를 영업비용으로 산정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조세를 징수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영업비용을 산정하는 것과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영업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그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액의 77.6%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업비용으로 추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93)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급여소득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나. 브랜드 의류 · 화장품 판매, 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

회사가 발행하는 판매대금 지급서류 또는 보관금지급명세서, 본사에서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에 영업보증금을 임치하여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다. 제조업자 · 화물운송영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금액을 확인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입금액을 확인한다.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화물운송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에 주유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유비를 추가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 제조원가명세서 검토]

과목	검토사항
Ⅰ. 원재료비	
기초원재료재고액	
당기원재료매입액	
기말원재료재고액	재산목록 반영
Ⅱ. 노무비	
임금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정당한 임금 지급인지 검토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의 지급 등)
Ⅲ. 경비	
복리후생비	과대계상부분 비용 제외 검토
전력비	
지급임차료	실제 잔존 임차보증금 등 재산 반영,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미지급금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반영함
수선비	
보험료	
차량운반비	재산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리스차량 등인 경우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만한 사정인지 검토
운반비	
도서인쇄비	
포장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	거래처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과대계상 여부인지 검토
잡비	
Ⅳ. 당기총제조비용	Ⅰ. +Ⅱ. + Ⅲ. = Ⅳ.
Ⅴ. 기초재공품재고액	
Ⅵ. 합계	
Ⅶ. 기말재공품재고액	
Ⅷ. 타계정으로대체액	
Ⅸ. 당기제품제조원가	

라. 의사 · 한의사 · 약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 수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서(건강보험 수입금), 현금수입금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현금 수입금) 등 세 가지를 합하여 매출금액을 확인한다. 요양급여 액수로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총 진료비를 추산할 수도 있다. 총소득에 요양 급여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출비용 중 재료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인건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손익계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금액 및 지출항목별 지출금액을 참고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매출금액 또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입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의사 · 한의사 · 약사 등은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제출할 수 없으나 소득세는 납부하므로 소득금액증명은 제출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의 소득은 정확히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큰 의미는 없으나, 장부작성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 보다도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득자료로는 이용할 수 있다.

마. 음식점 영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 매출금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로 최소한의 소득을 확인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지출금액 중 재료비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매출금액(예컨대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0%~20%)을 합한 총소득 및 순소득(예컨대 총 소득의 10%~20% 이상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대료,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의 30%~40% 이상 등)을 추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업점 위치,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 규모, 좌석 수,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매출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한다.

바.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

(1) 대형 쇼핑몰 입점 판매업자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신고자료 또는 매출자료, 쇼핑몰로부터 판매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로 매출금액을 확인한다.

(2)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영업자

이 경우에도 판매는 주로 신용카드나 통장거래를 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등 집계표 및 판매금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으로 매출금액을 확인한다.

사. 지입차주

운송회사가 발급해주는 운송료 정산서를 확인한다.

아. 노점상

노점상은 매출, 매입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소득자료가 부족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점의 위치, 실제 영업 사진, 최근 몇 개월간의 매출·매입 수기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일자별로 수입,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여 그 기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기타

① 학원 운영자: 세무서에서 발급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최소한의 매출을 확인하고 강사명부, 학생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한다.

② 공인중개사: 중개한 물건에 대한 일람표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③ 대리운전기사: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요금내역을 제출하게 하여 매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소속된 업체의 앱에서 월별 건수와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신규 영업: SNS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등 신규로 발생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 관련 사진 및 금융거래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매출 및 비용을 확인한다.

7. 과세 유형별 검토

가. 간이과세자

(1) 의의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는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94]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

94) 코로나19의 확산 등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의 가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신설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2020.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현재 8,000만 원, 1억 원 등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인상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6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9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년 동안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재무제표(통상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사업자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한다.

나. 일반과세자

(1) 의의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다.

(2) 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확정신고서 및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 원장,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서를 확인한다.

다. 면세사업자

(1) 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할 때 일반적인 경우 물품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이다.

(2)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 임대용역)
② 의료보건용역,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통신 · 방송
④ 예술창작품 · 예술행사 · 문화행사
⑤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등 입장

(3) 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재무제표, 면세수입금액신고서, 사업자통장거래내역서를 확인한다.

제4절 생계비의 산정

1. 생계비 산정 시 고려 원칙

가. 일반적 고려 원칙

산정된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된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생계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내지 5년에 달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지나치게 생계비를 적게 산정하면 채무자의 기본 생활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비율의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의 생계비만을 가지고 장기간 내핍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비 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나. 구체적 고려사항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채무자회생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2. 기준 중위소득[95)]

가. 기본 취지

95)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을 선정하여 산출하는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의2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데, 매년 8. 1. 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한다. 그 수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고되어 있다. 참고로 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0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2021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다. 기준 중위소득의 탄력적 적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의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예규 제7조 제2항).

따라서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액이고 변제율이나 수행 가능성이 높은데다, 소득 소명자료의 신뢰도도 높으므로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지출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고 소득 소명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추가 생계비의 인정

(1) 원칙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생계비가 추가 소요됨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생계비 항목별로 나누어 생계비를 추산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거비

법원행정처는 2013. 3. 18. '가계부채와 개인회생 · 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므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회생위원 간담회에서 추가 주거비 인정 기준 한도액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지역별, 가구원수별 각 적용비율에 따른 추가 주거비 인정 기준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96]

[2018년도 추가 주거비 인정 기준 한도액]

(단위 : 원)

	서울 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	381,105	293,340	175,308	129,575
2인 가구	648,910	499,471	298,498	220,629
3인 가구	844,613	650,105	388,521	287,168
4인 가구	1,030,016	792,812	473,807	350,205

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필요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2018년 4인 가구의 서울 기준 추가 주거비의 경우, 1,030,016원을 한도액으로 하

96) 서울회생법원 2018년 회생위원 간담회 자료(추가생계비로서 주거비 반영에 대한 검토의견, 2018. 8. 16.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선주) 참조.

여 채무자로부터 주거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현재 주거상황, 주거비 지출내역, 추가로 주거비가 필요한 사유)을 소명자료(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월세계약서 및 3개월분 이상의 채무자 명의의 월세 입금자료 등)로 제출받아 심사한 후, 그 밖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채무자의 소득의 변동가능성 내지 안정성 및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의료비

의료비 및 진료비, 약제비 등의 추가 생계비는 진단서 및 의료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4) 양육비

실무상 비동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장래 양육비채권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고 양육비채무를 추가생계비 인정요소 중 하나로 취급하거나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97][98]

(5)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의 지속적 마련을 위한 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규에서 일단 일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에서 생계비 산정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위 예규 규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엄격히 보아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생계비를 잘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위 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였던 탓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생계비 인정을 주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를 제정(2020. 11. 24. 시행)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2021년부터 매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

97) 서울회생법원은 2017. 9. 25. 회생위원 간담회에서 장래 양육비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처리하는 실무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98) 자세한 내용은 177면을 참고.

하였다. 이 경우 추가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채무자의 소득액을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2항).

마. 현저히 적은 생계비를 유보하는 경우

채무자 및 경제공동체에 속하는 가구구성원들의 소득,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의 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생계비를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고 하면서도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에서 제외하는 경우,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유보한 생계비에서 월세 및 보험료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채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변제계획안의 수행의지 없이 채권추심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3년 내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수행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현저히 적게 유보하는 사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명하도록 한다.

3. 부양가족

가. 부양가족 판단 기준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이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

(2)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미성년자), 65세[99]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5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 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한다.

(3)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종래의 실무상으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으나,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복리에 관한 부분도 고려하여,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령,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임)에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실무준칙 제405호에 따라 설치될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가령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 가족의 생계비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또는 소득합계가) 채무

99)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서 균등 분담시키고 있다.[100]

이와 달리, 생계비를 다른 가족구성원 소득액과 비율적으로 분담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그만큼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까지도 엄밀하게 입증시켜야 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적용하기 어렵다.

다. 부부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의 생계비 산정

부부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

채무자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 채무의 주된 사용처가 생활비 등이거나 배우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가 집중되어 있고 배우자에게는 채무가 없거나 적은 경우(소득이 적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집중시킨 다음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등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건강보험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배우자 공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 유무를 확인한다.

100) 즉 '신청채무자의 소득액(a)'과 '그 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합계액(b)'을 비교하여, (b)가 (a)의 70% 미만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고, (b)가 (a)의 70%~130% 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중 절반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라고 보며[다만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수가 홀수이면, 가령 1인이면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 (본인 포함하여) 1인 가족 생계비와 2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3인이면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 (본인 포함하여) 2인 가족 생계비와 3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계산함], (b)가 (a)의 130%를 넘으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 외의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 쪽의 피부양자로 본다.

제6장 진술서

제1절 경력

1.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이 신청인의 실질 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2. 과거 이혼 경력

최근에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관계, 부양 및 양육비 관계를 소명하도록 한다.

제2절 현재 주거상황

현재의 주거상황과 관련하여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 주거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지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 무상거주 경위 등을 소명하도록 한다.

제3절 부채상황

1. 소송 · 지급명령 · 전부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

채권자로부터 소송 · 지급명령 · 전부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소장 · 지급명령 · 전부명령 ·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다한 낭비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채무의 비중, 부양가족 및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과다한 낭비 등으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과다한 낭비 등으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다액이면서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1]

3.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제4절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는 것도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하여 이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이다.

이전에 개인회생신청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전 사건의 기각, 불인가, 폐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각 혹은 불인가, 폐지결정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채무자중복접수조회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폐지신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폐지된 경우에는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여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재도 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곧바로 하지 않고 종전에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받게 된 이유, 해당 결정문, 그 후 기각 내지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나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된 이후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

101) 자세한 내용은 52면을 참고.

제7장 변제계획안

제1절 개요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제2절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변제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변제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②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③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1. 변제개시일

가. 원칙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102]를 들 수 있다.

나. 실무상 처리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즉 개시신청 시에)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후)을 매월의 지정 일로 정하고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운영하고 있다(예규 제7조 제3항). 이렇게 초기부터 변제를 개시하게 하는 이유는, 인가 여부 결정 시까지 누적되는 3~4개월간의 변제실적을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향후 인가될 변제계획에 따른 내핍생활에 미리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채권자집회기일을 전후하여 임의로 변제개시일을 늦추는 것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 변제금의 임치가 곤란한 경우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가 전에 변제금의 임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변제시작일을 인가결정 후 어느 날로 지정한다.

2.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103]

---

102)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5, 476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시일이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변제개시일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0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4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부터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총 변제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되어 있다(예규 제8조 제2항).

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②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위 ①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①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104] ②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으로, ③ 위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을 변제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36개월 이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는 경우에 '이자'의 의미가 개시 전 이자인지, 개시 후 이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된다. 예컨대 30개월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 개시 후 이자까지 계산하여 36개월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실무상 논란이 있다.

제4절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1.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가.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③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104) 즉, 실무는 '원금'만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원금에다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변제까지 포함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해석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금'만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도 36개월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나.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③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추가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105]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i)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ii)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2.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산법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 시의 배당

105)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은 33개월의 라이프니쯔수치 30.7719 + 3개월 = 33.7719를 월 가용소득에 곱하면 된다. 여기서 3개월을 더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까지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기간의 라이프니쯔 수치에 월 가용소득을 곱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변제계획인가일 이후에 변제를 개시하는 것으로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은 36개월의 라이프니쯔수치 33.3657에 월 가용소득을 곱하면 된다.

아래 〈표〉는 각 개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수치이다.

월	라이프니쯔 수치	월	라이프니쯔 수치	월	라이프니쯔 수치
1	0.9958 5062	21	20.0674 9359	41	37.6172 9033
2	1.9875 6908	22	20.9800 7661	42	38.4570 5261
3	2.9751 7253	23	21.8888 7297	43	39.2933 3040
4	3.9586 7804	24	22.7938 9839	44	40.1261 3816
5	4.9381 0261	25	23.6951 6853	45	40.9554 9028
6	5.9134 6318	26	24.5926 9895	46	41.7814 0111
7	6.8847 7661	27	25.4865 0517	47	42.6038 8492
8	7.8520 5970	28	26.3766 0266	48	43.4229 5594
9	8.8153 2916	29	27.2630 0680	49	44.2386 2832
10	9.7746 0165	30	28.1457 3291	50	45.0509 1617
11	10.7298 9376	31	29.0247 9626	51	45.8598 3353
12	11.6812 2200	32	29.9002 1205	52	46.6653 9439
13	12.6286 0283	33	30.7719 9540	53	47.4676 1267
14	13.5720 5261	34	31.6401 6139	54	48.2665 0224
15	14.5115 8766	35	32.5047 2504	55	49.0620 7692
16	15.4472 2422	36	33.3657 0128	56	49.8543 5046
17	16.3789 7848	37	34.2231 0501	57	50.6433 3656
18	17.3068 6654	38	35.0769 5105	58	51.4290 4885
19	18.2309 0443	39	35.9272 5416	59	52.2115 0093
20	19.1511 0815	40	36.7740 2904	60	52.9907 0632

(3)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된 변제계획안 작성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에 대한 파산 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도록 작성할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개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 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4)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퇴직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하여 전액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위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일반 채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 전액이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또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106]

나.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참조).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아니하여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10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가용소득이 전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최저변제액의 제공

(1) 최저변제액 계산법

이의가 있을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2) 최저변제액 산정 시 기준채권의 범위

기준채권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범위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다. 다만 기준채권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채권을 기준채권에 포함시켜 변제율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채권에 포함되는 이상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기준채권에 변제계획에 의하여 전액 변제를 받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포함시킨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우선채권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익과 채무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1/2 미만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증대하지 않고 전체 개인회생채권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법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은 전체 개인회생채권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상의 변제기로 나누어 변제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만 전체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107]

미확정채권의 경우에는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확정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액을 산정 · 유보하는 이상 최저변제액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미확정채권은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적절하다.

(3)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최저변제액의 규정은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즉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저변제액만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나 가용소득이 너무 낮아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변제계획은 수행 가능성이 없게 되어 인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 공정 · 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공정 ·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이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108]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액 전액[109]을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

---

107) 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원심은, 채무자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1/2 미만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고 이것도 기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채무자의 실제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그것보다 많고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보정명령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정명령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수행할 수 없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1/2 미만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08)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109) 여기서 전액이라 함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변제계획 인가 당시 채권액과 동액이 되어야 할

61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 후순위 채권"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에 의한 후순위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 따라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 ·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마.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 또한 미리 변제하여야 할 재단채권이 상당히 다액이어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시일이 인가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지게 된다면 그와 같은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실무적으로는 변제계획안에 인가하기 어려운 내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접 수정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면 그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 만약 회생위원의 권고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수정명령을 하는 등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5절 변제계획안 작성 시 문제 되는 경우

1.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①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 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②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기간 동안 명목상 변제액의 단순 합계액이 변제계획 인가 당시 채권액과 동액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이나, 반대설도 있다.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③ 구상보증(소위 부보증) 채권이 있는 경우, ④ 전부명령 채권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월 변제액을 계좌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추후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채권의 비율에 따라 유보된 금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식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2항).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5 조 제3항).

이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110]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추후 임대차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110) 이와 관련한 다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1면을 참고.

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 전액을 계좌에 유보하여 두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즉 미확정채권이므로 전액을 계좌에 유보하여 두되, 그 변제비율은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취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미확정채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라는 조항을 두면 될 것이다.

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으로 취급하면 된다.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서는 현재의 변제계획안 양식 내에 그에 해당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안의 끝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두어야 할 것인데, 변제액 전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111]

3.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처리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액 상한요건은 개시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인가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안을 개별적,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기준시점은 개시신청일이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확정채권액으로 보아 변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계좌에 유보하여 두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한다.

4.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112]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 제3항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만 기재하면 된다.

---

111) 선순위 담보권이 없어 경매나 임의매각의 경우 제3취득자에게 임대차 관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변제계획기간 동안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계획기간 만료 후의 처리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전액이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112) 자세한 내용은 42면을 참고.

[기재례]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변제계획 인가 후 [월 22,983]원을 지급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5. (가)압류적립금의 처리

가. 개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장기간의 가압류나 압류로 인하여 상당한 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이 실효되어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동안 집행에 투입한 노력, 채권의 회수가 임박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적립금을 조기에 투입하고, 그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월 변제투입액을 줄이는 방식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나.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가 중지될 뿐이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 시까지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제계획안이 반드시 인가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재산목록 기재

변제계획인가 시까지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산목록의 '기타'란에 그 액수 및 압류 등의 유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에 기재된 압류 적립금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압류적립금이 인가 시까지 증가될 것을 고려

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압류 적립금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근소할 경우에는 인가 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리 월 가용소득액을 올려 청산가치와의 차이를 넉넉히 해두어야 한다.

라. 변제투입 여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금원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가압류 또는 압류로 적립된 금액이 다액인 경우에 이를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변제계획인가 시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게 되면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금원을 소비하여 버리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하여 적립된 금원이 상당기간의 월 변제예정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아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한 다음 불응할 경우 불인가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인가 시까지 (가)압류적립금은 증가될 것이므로 인가 직전에 (가)압류적립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가용소득으로 투입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가압류 또는 압류로 적립된 금원 중 상당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경우 이를 가용소득의 투입으로 볼 것인지, 재산의 투입으로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고, 만약 이를 재산의 투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나머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변제계획안도 복잡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필요한 한도에서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다.

바. 변제기간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제1회 변제일을 변제계획안 제출일(개시신청일인 경우가 많음)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로 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적립금을 임치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간 시작일을 인가 후 어느 날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압류적립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급여담당자가 압류의 경합 등으로 압류적립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에서는 배당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배당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반드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러한 절차를 잘 몰라서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회생위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배당절차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배당절차가 중지되지 않아서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공탁금을 변제에 투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 기재례

(1) (가)압류적립금을 투입하는 경우

예컨대 급여담당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10,000,000원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13]

[기재례]

1. 변제기간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을 제1회로 하여 36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36]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가) 본래의 가용소득

기간: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을 제1회로 하여 제36회 되는 달의 20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① – ②)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x ④)
3,474,795	*1,176,479*	*2,298,316*	*36*	*82,739,376*

(나) 수정된 가용소득

① ○○주식회사의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을 가용소득의 일부금으로 투입한다.

113) 변제계획안 표준양식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분만을 기재함. 이하 기재례도 같음.

② 위 금원을 가용소득의 일부금으로 투입하면 가용소득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 총 가용소득 82,739,376원 -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 = 수정된 총 가용소득 72,739,376원
- 수정된 총 가용소득 72,739,376원 ÷ 35회 = 2,078,268원 (수정된 월 평균 가용소득)

③ 기간: 위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은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에 제1회로 투입하고, 제2회부터 -36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변제할 수정된 가용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변동내역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① - ②)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x ④)
본래 가용소득	*3,474,795*	*1,176,479*	*2,298,316*	*36*	*82,739,376*
적립금 일시 변제액(1회차)	*10,000,000*	*0*	*10,000,000*	*1*	*10,000,000*
수정된 가용소득 (2~36회차)	*3,474,795*	*1,176,479*	*2,078,268*	*35*	*72,739,376*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변제예정(유보)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급여 압류(가압류) 적립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회 변제 시는 [ ]원, 제2회 내지 제36회까지 [ ]원으로 하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압류적립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주식회사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2) 공탁금을 투입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적립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위 (1) (가)압류적립금을 투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공탁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금제○○에 대한 공탁금 1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6.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채무자회생법 제616조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나.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한 때에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변제기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가 전부권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변제기간 시작일을 인가 후 어느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기재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전부채권자의 금액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7.항은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한다.

[기재례]

1. 변제기간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을 제1회로 하여 36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36]개월간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전부명령의 실효〉

① 제2번 채권자의 ○○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상실한다. 위 채권의 금액은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제7항(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나.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②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전부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인가결정시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에 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을 산정한 전부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계산서와 함께 확정액을 토대로 산정한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한다.

7.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 개요

월 가용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즉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당연히 변제재원으로 그 차액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방법이다.

나. 재산 중 어느 것을 어떤 값에 처분할 것인가

재산처분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채무자가 아무런 정함 없이 변제기간 중에 아무 때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하여서도 아니 되므로, 변제계획에서는 처분대상 재산과 처분예정일, 처분예상가액 및 그 중 변제에 투입할 예정 금액 등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채권자들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하느냐의 문제이고, 무엇을 언제 어떤 값에 팔 것이냐는 변제를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예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처분하기로 정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또 변제계획에서 정한 예정

금액보다 낮거나 혹은 높게 처분하였거나, 심지어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친족, 친지들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정한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만일 처분대상 재산을 변제투입예정액보다도 낮게 처분하였다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처분하여서라도 변제투입예정액을 조달하여야 한다.

다. 실무상 처리

재산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수행의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예정일을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일로부터 2년 내'의 투입도 허용하고 있고, 처분예정일이 인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계획은 불허하고 있다. 또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투입예정액을 정할 때 현재가치의 할인율 문제와 청산가치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재산처분예정일이 1년 이내일 경우 1.3배를, 2년 이내일 경우 1.5배를 각 곱한 금원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재산의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인데 3년간 가용소득의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가 1,5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최소한 인가일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처분을 통해 조달되어 변제에 투입되어야 한다. 즉 재산처분 예정일이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는 650만 원을, 2년 이내일 경우에는 750만 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처분의 대상으로 하면서 위 담보권부채권의 원리금을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재산가치 만큼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예가 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진 부동산을 재산처분 대상으로 하여 신청하는 예도 있다. 이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재산처분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인가 후 처분 예정가격을 더 높게 기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인가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채무자가 이러한 재산처분 계획을 작성한 것은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처분으로 인한 변제 투입액이 인가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에 1년 이내 처분 시 1.3배(2년 이내 처분 시는 1.5배)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하기에 인가 후 처분 예정가격을 높게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동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이중으로 산정했다는 문제가 있으나, 위 나.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조건 불인가 대상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인가 후 처분 예정가격이 현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처분시한이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인데도 처분시한이 훨

씬 지나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투입액이 회생계좌에 입금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투입액을 배당한 후에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투입예정액의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다.

그리고 처분예정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위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처분대상재산에 한하여 변제계획에서 배제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적용배제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방법이 없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문만을 가지고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가결정문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즉 변제계획에서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인가결정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기재하여 두는 것이다.

라. 기재례

1. 변제기간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36]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상사]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2,761,574]원

☐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 총 [3]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월 [3,760,043]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월 [2,256,019]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① - ②)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 ④)
2,761,574원	2,256,019원	505,555원	36회	18,199,980원

나. 재산: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순번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변제기한	변제투입예정액
1	서울 ○○구 ○○길 ○○ 대 ○○㎡	인가일부터 1년 내	17,846,543원
2	○○시 ○○길 ○○ 전 ○○㎡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채권의 내용

채권 번호	채권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② 채권현재액(이자)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10	(주)D 은행	12,000,000원 1,500,000원	20,000,000원	0원
		2014. 1. 5. 근저당권 설정, 원금: 12,000,000원, 이자: 연10%, 채권최고액: 20,000,000원, 환가예상액: 40,000,000원 목적물: 서울 ○○구 ○○길 ○○ 대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 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505,555]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18,199,980]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 기간 및 횟수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36]개월간
합계 [36]회

㈏ 변제월 및 변제일

① [2019]년 [7]월 [25]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25]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25]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25]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변제투입예정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은 [17,846,545]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2) 변제방법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은 [인가일부터 1년 내]로 하고, 처분대금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변제한다.

㈏ 위 변제기한까지 재산이 처분되지 않거나 처분대상 재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금원이 변제투입예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변제투입예정액 전액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위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단위: 원)

가. 가용소득

(A) 월 평균 가용소득	505,555

(B) 변제횟수	36회

(C) 총 가용소득	18,199,980

나. 처분대상 재산

순번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변제기한	변제투입예정액
1	서울 ○○구 ○○길 ○○ 대 ○○㎡	인가일로부터 1년 내	17,846,543
2	○○시 ○○길 ○○ 전 ○○㎡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1)과 같음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별표(2)와 같음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21]% 상당액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원금의 [21]%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원)

(J) 청산가치	30,000,000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18,199,980
(L) 현재가치	17,073,552

(M)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17,846,545
(N) 현재가치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단위: 원)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1	(주) A 은행	19,365,500	0	114,368	0	4,117,248	0
2	(주) B 카드	17,873,000	0	105,554	0	3,799,944	0
3	C 캐피탈 (주)	15,456,300	0	91,281	0	3,286,116	0
4	(주) E 크레디트	13,563,400	0	80,102	0	2,883,672	0
5	F 유동화전문(유)	19,345,450	0	114,250	0	4,113,000	0
합 계		85,603,650	0	505,555	0	18,199,980	0
총 계		(G) 85,603,650		(H) 505,555		(I) 18,199,980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단위: 원)

채권 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O)변제투입예정액	(P)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1	(주) A 은행	19,365,500	0	17,846,543	4,037,296	0
2	(주) B 카드	17,873,000	0		3,726,141	0
3	C 캐피탈 (주)	15,456,300	0		3,222,311	0
4	(주) E 크레디트	13,563,400	0		2,827,681	0
5	F 유동화전문(유)	19,345,450	0		4,033,116	0
합 계		85,603,650	0		17,846,545	0
총 계		(G) 85,603,650			(Q) 17,846,545	

8. 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미상환대부금 등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등으로부터 우선 공제하여 회수함으로써 공무원 연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상환대부금의 성격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법에 따른 우선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변제계획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금공단의 알선으로 일반금융기관이 공무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제 ○○번 채권은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8조, 군인연금법 제1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9. 개인회생채무가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개인회생채무가 보증채무이거나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장래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마치 미확정채권의 변제방식과 같이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될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를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제42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월 변제예정액을 산정한 후 유보 없이 변제를 개시하여야 한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채무자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 행위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구상권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변제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나머지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나.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를 개시하게 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바, 그러한 구상권 행사로 받을 구상금은 가용소득이 아니므로 이것까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는가를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할 때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구상채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청산가치의 산정 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 주채무자의 소유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고, 주채무자의 소유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소유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것 외에 따로 채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상태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등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위 채권자는 마치 별제권을 가진 것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소유인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아닌 이상 별제권은 아니다.

일단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고,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주채무자 소유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를 받으리라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칙적 처리는 사실상 채권자가 손쉽게 주채무자 소유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채권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채권 전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해 나가되 변제는 담보권실행절차에서의 배당 시까지 유보해 두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채권자가 담보권의 행사로써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채권으로 신고하면, 그 유보액을 일시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방안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달리 즉시 변제가 개시되지 않고 유보된다는 점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이나, 별제권의 경우는 별제권 부족액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액수에 변제율을 곱한 금원을 미달액에 달할 때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또 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기에 담보권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독려하는 측면도 있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주채무자의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번호 ○○번 채권변제〉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위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고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위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변제 방법

위 7.의 나.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방법에 의한다.

10. 개인회생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대출 받은 경우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개인채권자(특히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양도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가.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기금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가지는 채권은 담보부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므로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인 은행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한 후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또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확정채권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한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실무에서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이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되지 않고 3자(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를 준별제권자로 취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나. 채권양도담보대출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양도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한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11. 채무자가 구상보증(소위 부보증인) 관계에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장래 발생할 구상권 채권을 위하여 또 다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위 부보증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채무자는 남편이고 채권자는 은행이고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장래 발생할 구상권을 위하여 주채무자의 아내를 보증인으로 입보한 경우에 주채무자의 아내는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보증인은 아니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만 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아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권자인 은행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없고, 신용보증기금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데, 아직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서 장래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한다.

12.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다만 가압류 등만을 실효시킬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가압류 등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내용을 둘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 그 효력을 잃는다.

13. 장래의 구상권이 있는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30조의 규정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채권자목록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기재가 되는데 변제계획안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게 되면 그 처리가 누락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에는 주의적으로 변제계획안의 '10. 기타사항'란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한편 장래의 구상권자에는 채무자의 보증인뿐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물상보증인)도 포함될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채권번호 3 - 1번 채권자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4.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자가 아닌데 반하여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때에 채권자인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보증인으로 입보(立保)시키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반 보증인의 처리 예에 따라 진행할 경우에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별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채권자를 대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즉 보증인은 개인회생절차로부터도 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변제를 받는 등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증인의 장래구상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고, 장래구상권자의 채권현재액은 원채권자의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기에 대위변제를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대위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채권번호 3 - 1번 채권자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3 - 1번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 예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나, 아직 그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선 3번 ○○은행 채권의 채권현재액을 반영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여 두되, 후일 신용보증기금 이 ○○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이 확정될 경우에 다시 5.항 별제권부 및 7.항 미확정채권의 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조정합의안이 있는 경우

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금지 내지 중지명령이 발령되며, 위 명령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금지된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채무자는 결국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쉽지 않게 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무자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114]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신청대상

①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②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 기준) 이하인 당해주택에 실거주 중인 1주택 소유자로, ③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경과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이 제3자와의 공동소유이거나 공동담보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① 채무자가 「신용복지지원협약」 제3조 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담보주택에 개인채권자 등 신용회복지원협약 미체결 채권자[115]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③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④ 담보주택에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제외된다.

다. 신청 및 처리절차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신청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법원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다. 이후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합의안을 담은 조정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합의안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집회기일 2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액(일정 금액의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사안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된 이자금액)을 변제계획표상 생계비에 반

114)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19. 1. 17.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도 2020. 7. 7.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115)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채무조정〉협약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하여 채무자가 거치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거친 후 변제계획안을 인가한다. 이 경우 일반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통상 변제기간을 연장(최장 5년)하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한다.

채무자는 면책 이후에도 채무조정합의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 변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을 포함한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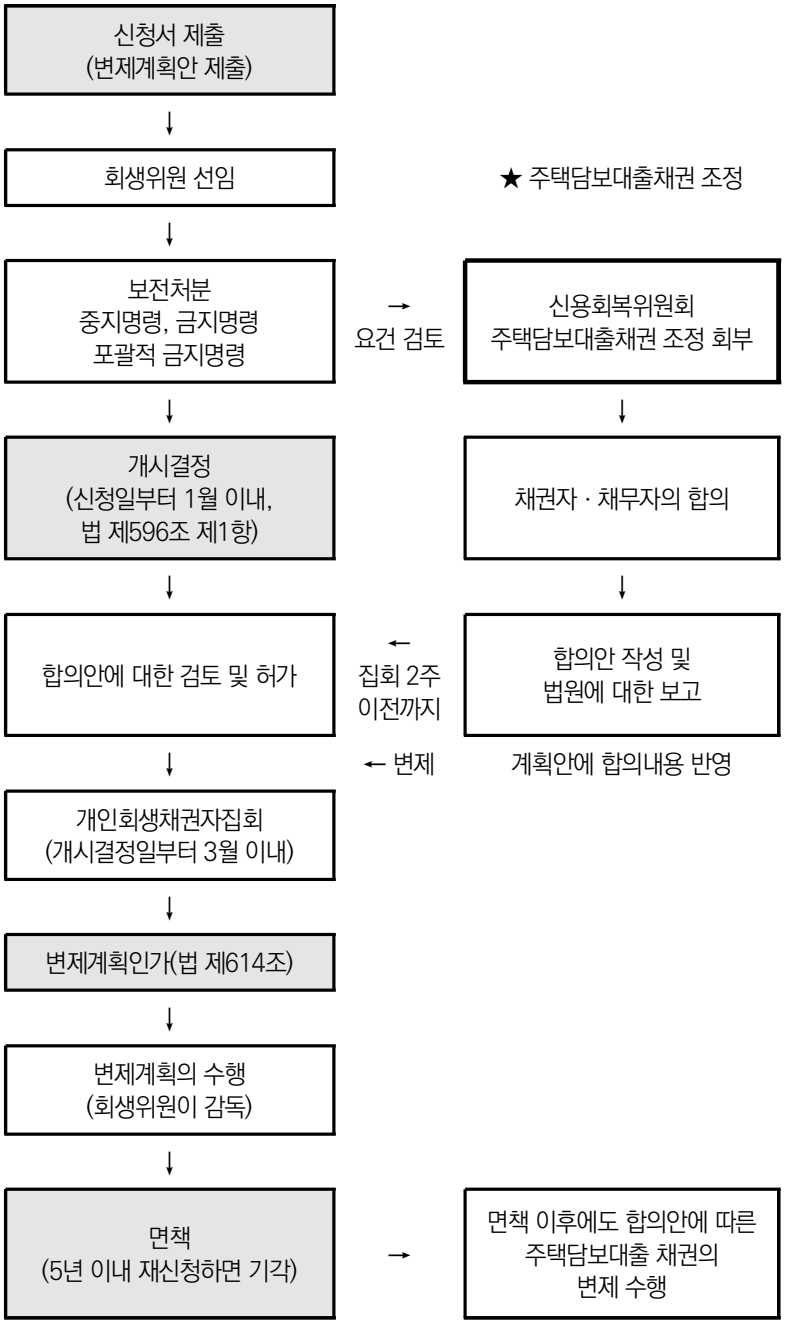

마. 양식

(1) 채무재조정 회부결정

서울회생법원

결 정

사 건 20○○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
(신 청 인) 서울 서초구 ○○길 ○○
채 권 자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길 ○○

주 문

1. 이 사건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한다.
2. 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은 2019. ○. ○○.까지로 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채무재조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제60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판사 ○○○

(2) 조정결과보고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행결과 최종보고

사 건			
신청인		채권자	
조정 결과	□ 합의 성립		□ 합의 불성립
담보채권의 개요			
조정 경과			
결과요지			
비 고			

위와 같이 채무재조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인)

16.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으나, 장래 양육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종전의 대체적인 실무는 개인회생사건에서 장래 양육비채권을 생계비 산정에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처리 방안(1안)을 취하고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2안)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양육비채권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채무를 추가생계비 인정요소 중 하나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참고하는 방법으로 처리(1안)

채무자의 월 평균수입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분을 곱한 금액과 채무자의 양육비부담을 고려한 추가생계비를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한다.

$$\text{월 평균수입} - \text{중위소득 60\%} - \text{양육비부담 고려 추가생계비} = \text{가용소득}$$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양육비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양육비부담조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엄격히 조사 후 일정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며,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채무자가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시까지 6개월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나. 위 가.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처리(2안)

채무자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신고하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므로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제583조 제2항, 제611조 제1항 제2호).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단지 변제계획안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기재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하므로 변제기간 동안 매월 양육비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기재례]

1. 변제기간

[2017]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36]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ABC 기획]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2,670,472]원

☐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 월 [1,652,931]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981,276]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2017]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① - ②)	④ 월 장래 양육비	⑤ 월 실제 가용소득 (③ - ④)	⑥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⑦ 총 실제 가용소득 (⑤ × ⑥)
2,670,472원	981,276원	1,689,196원	1,050,000원	639,196원	36회	23,011,056

나. 재산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변제계획 인가 후 즉시 [①]원을 지급, 매 변제기일 직후 월 변제액의 [②]%를 지급

① 인가결정 전의 업무에 대한 정액 보수(채무자 예납액으로부터 지급됨)

② 인가결정 후의 업무에 대한 비례 보수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이◇◇	월 350,000원	장래양육비(양육비부담조서)	김○○이 성년이 되는 2028. 11. 22.까지 월 350,000원
이◇◇	월 350,000원	장래양육비(양육비부담조서)	김○○이 성년이 되는 2026. 2. 18.까지 월 350,000원
이◇◇	월 350,000원	장래양육비(양육비부담조서)	김○○이 성년이 되는 2024. 1. 31.까지 월 350,000원

(2) 변제방법

[2017]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36]개월간 합계 [36]회에 걸쳐 사건본인[김○○, 김○○, 김○○]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매월 [10]일에 [1,050,000원]을 지급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채권의 내용

채권 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②채권현재액(이자)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3)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639,196*]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23,011,056]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 기간 및 횟수

[*2017*]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36] 개월간 합계 [36]회

㈏ 변제월 및 변제일

① [2017]년 [11]월 [10]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10]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10]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10]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3)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 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6]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 2 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기초사항

(단위 : 원)

③ 월평균 가용소득	1,689,196원
(A) 월 실제 가용소득 (③-④)	639,196원

④ 월 장래양육비	1,050,000원
변제횟수 (B)	36회

총 가용소득 (C)	23,011,056원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 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1	A은행(주)	14,636,815	0	245,188	0	8,826,768	0
2	B 상호 저축은행	7,692,992	0	128,870	0	4,639,320	0
3	(주) C 크레디트	15,828,002	0	265,142	0	9,545,112	0
합 계		38,157,809		639,200		23,011,200	
총 계		(G)	38,157,809	(H)	639,200	(I)	23,011,200

3. 변제율 : 원금의 [60]%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 원)

(J) 청산가치	12,340,666원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23,011,200원
(L) 현재가치	21,586,863원

제8장 면담

제1절 개요

채무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출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진행하는 면담기일은 절차지연의 원인이 될 뿐이다. 채무자회생법에 채무자 면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실무준칙 제404호)를 제정 · 시행함으로써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신속하고도 적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절 면담기일의 지정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회생위원별로 미리 협의된 면담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우편접수사건이나 면담기일 고지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후 면담기일을 고지하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기록검토 후 면담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면담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2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회생위원이 기록검토 후 면담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차제 기일지정방식을 활용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사건별로 면담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기일의 통지는 채무자 본인의 출석률을 제고하고 회생을 위한 첫 절차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법원이 직접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리인에게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채무자 본인의 출석을 위해 협조하도록 당부한다.

제3절 면담기일을 위한 준비

1. 보정권고

회생위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과 회생위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채무자와의 면담에 임하여야 한다. 사전에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로 채무자 면담에 임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불신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은 면담 전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정권고문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정권고문은 면담기일에서의 체크리스트가 될 것이다. 보정권고문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관할이 있는지의 여부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채무증대 원인
③ 재산목록의 적정성
④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
⑤ 변제기간의 적정성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수행 가능성의 원칙 등의 인가요건 등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함에 있어 면담기일을 함께 지정하거나 이미 면담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면담 장소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가 필수적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회생을 돕고 변제수행을 감독할 회생위원과의 첫 대면이고, 회생위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기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는 소명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므로, 서로 마주 보는 원탁이나 장방형 탁자가 설치되어 있는 심문실을 활용함이 상당하다.

3. 회생위원의 자세

채무자가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위해 출석하면 면담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지 않는 복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절 면담기일의 진행

1. 채무자의 출석 확인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개시신청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비교하고, 신청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면담 실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즉, 회생위원이 자신의 채무증대원인, 재산, 직업과 수입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당해 신청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향후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면담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진술하게 하여 위와 같은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회생위원이 신청사건 검토를 통하여 사건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첨부된 서류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가족관계나 직업 등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우선 인적 사항과 주소지를 물어 채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채무자)의 가족으로는 처 ○○○와 자녀가 2명이 있지요?" 또는 "신청인(채무자)의 직장은 서초구에 있지요?" 등으로 질문하면서 면담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기록상 이미 파악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 회생위원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여 회생위원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 후에 회생위원은 준비한 질문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채무자 본인의 진술이 지엽말단으로 흐르거나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그 진술을 인내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장시간 진술을 하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회생위원은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후에, 경우에 따라 재산 또는 수입 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거나 재산 또는 수입상황 보고서([양식]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등)의 자필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4. 사실관계 확인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 수행의지 확인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나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간혹 제출한 서류와 전혀 다른 내용의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록 검토를 통해 형성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인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채무 증대 과정이나 변제 조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성실해 보이는 채무자였으나 막상 만나 보니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인 경우도 있고,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였으나 고가의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서류 검토만으로는 알 수 없고 채무자를 직접 만나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고, 변제수행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중지 · 금지명령 여부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등 대화 과정에서 수행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양식]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등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사 건 2020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19 . . .생)
○○시 ○○구 ○○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수입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오니, 아래의 보고서에 의하여 수입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상황의 보고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입상황을 허위로 보고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5호(보고 등 거절의 죄)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회생위원 ○ ○ ○

수입상황 보고서

1. 현재의 직업
① 직장 또는 회사명 ( )
② 직 위 ( )
2. 월평균 수입 (원)

회생위원의 수입상황 보고요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하오며, 그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채무자 ○ ○ ○ (서명 또는 날인)

5.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및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

채무자의 대부분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의 신청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 등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리한 신청을 유도한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여도 신용거래가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고 단순하게 채무를 탕감받는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가 금지된다는 점을 모르고 일부 대부업체에게 신청 이후에도 이자 등을 지급함으로써 인가결정 전 적립금 입금을 하지 못해 시작부터 변제수행이 불안해지는 경우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와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5호)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644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채무자회생법 649조) 등]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6. 변제수행의 엄중성에 대한 교육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므로 인가결정 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기간의 시작일부터 적립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폐지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변제기간 만료일까지 변제를 완료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안내하고 수행의지를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5절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유선으로 불출석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면담기일을 약속하여 다시 진행하도록 한다.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개인회생신청 기각의견 취지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 제2항).

제6절 면담기일의 변경 · 추정

채무자의 면담기일 변경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면담기일을 변경하고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한다. 특히 채무자가 직장에서의 업무 때문에 유선으로 면담기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즉시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다.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서 접수 후에 출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담기일을 추정하되,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의 회생에 적정 · 공평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면담기일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장 면담 후 사건관리 및 업무수행결과 보고

제1절 바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한을 개인회생사건의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한다(실무준칙 제404호 제3조 제3항). 회생위원은 면담 후는 물론, 면담하기 전이라도 바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제2절 보정서의 검토

1. 재보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채무자의 보정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서 검토 결과 재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오기, 누락 등을 이유로 한 간단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추가 보정사항을 알려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사항이 기록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04호 제3조 제4항). 보정사항이 많고 복잡할 때에는 추가 보정권고문을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거나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채무자가 보정에 응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송달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2. 보정이 완료된 경우

가. 업무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회생위원은 보정이 완료되면 사건 전체를 검토하여 개시신청에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③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 ④ 채무자의 재산, ⑤ 채무자의 소득, ⑥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⑦ 중점관리대상 유형, ⑧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를 기재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11호 제2조).

또한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11호 제3조).

나. 개시결정 및 이에 수반하여 결정할 사항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원은 이의기간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면제재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과 함께 이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정 연기신청서만 제출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권고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보정권고사항의 일부분만을 보정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등에는 다시 보정을 촉구하거나 절차 지연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제3절 개인회생절차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116]

1. 개요

개인회생사건 중 사실상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개인파산의 신청과 개인회생사건의 취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 사건을 개인파산절차

116)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할 채무자가 실제로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흔한 상황이고,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늦어지게 될 뿐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환하는 방안을 개인회생제도개혁TF 논의를 통해 마련하여 2020. 9. 1.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준칙 제407호(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를 제정 · 시행(2020. 11. 24.)하고 있다.

로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이하 '절차 전환')을 말한다.

2. 절차 전환의 가능 시기 및 대상 사건

가. 절차 전환의 가능 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실무운용상 절차 전환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시도할 수 있다.

나. 대상 사건

개인회생사건 중 ①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②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절차 전환을 권유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07호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절차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실무상 처리절차

절차 전환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조사 →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적정 의견 시 또는 직권으로) 판사의 보정명령 발령 → (채무자가 절차 전환에 응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및 파산절차 진행 → 개인회생절차 종료로 처리절차가 이루어진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절차 전환을 권유할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이 다액이라는 등의 사정은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판사는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실무준칙 제407호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절차 전환에 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실무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준칙 제407호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절차 전환에 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실무준칙 제407호 제3조).

채무자가 절차 전환에 응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채무자가 절차 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그대로 속행함은 물론이다.

절차 전환된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1월 이내에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절차 전환된 개인파산사건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음을 고지하면서 개인회생사건의 취하를 권유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무준칙 제411호(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판사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실무준칙 제407호 제4조).

[양식]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제○○○회생위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사 건 : 20○○개회○○○○호 개인회생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제○○○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사건의 취하 및 개인파산 신청의 권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다 음 -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	□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미치지 못함 □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외의 사유( )
기타사항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20○○. . .

제 회생위원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 개시 여부의 심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주로 심리한다. 즉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관할의 유무, 개시요건의 존부, 개시결정 전에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게 된다.

채무자의 개시신청서 제출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로부터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게 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 수 있고(임의적 변론, 채무자회생법 제12조 제1항), 직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조 제2항).

법원은 위와 같이 심리를 진행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게 된다.

2. 개시 여부의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 규정한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 · 월 · 일 · 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개시결정이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개시결정의 효과

가.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나.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다.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1) 중지 · 금지의 대상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등만 중지 ·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 등은 중지 · 금지되지 않는다.

(2) 중지 · 금지의 효과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그 이상의 효력은 없다.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에 기하여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반면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봉급 등 소득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개시결정만으로 가압류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미리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개시결정에서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은 크지 않다.

라.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117]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한다.

마. 체납처분 등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처분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중지 ·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그 결과로 위 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게 된다.

바. 담보권설정 ·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117)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아. 기타 효과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1. 개시기각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기각사유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필요적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는 점에 비추어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필요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제1호)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② 담보부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재원

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118]

④ 채무자가 배우자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청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가 있다(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임).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119]

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나 진술서가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허위작성을 원인으로 기각할 수 있다.

다.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3호)

① 채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4호)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마.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제5호)

여기서 '면책을 받은 사실'에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120]

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6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121]

---

118) 대법원 2011. 10. 24.자 2011마1719 결정.
119) 수원지방법원 2020. 4. 24.자 2020개회111452 결정 참조.
120) 수원지방법원 2020. 1. 9.자 2019라3964 결정 참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편파변제 등 부인권 행위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고려하여야 한다.[122]

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23]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②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친 · 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인 경우 ⅰ) 채무의 발생시기가 신청 전에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대출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된 사정, ⅱ)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연금 대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중은행이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⑥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사항을 이행하기 아니하거나 보정권고와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

---

121)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122) 대법원 2013. 7. 12.자 2013마668 결정, 대법원 2013. 3. 11.자 2012마1744 결정,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123) 대법원 2012. 1. 31.자 2011마2392 결정,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24]

2. 기각의견의 제시

회생위원은 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 기타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기각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상실한다. 기각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살아나지 않는다.

제6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와 별제권자(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 금지되므로) 등이 될 것이고, 개시신청기각결정에는 신청인인 채무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상소의 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즉시항고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무자 등의 원심 대리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

124) 대법원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2. 즉시항고의 기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다.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주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44조).

즉시항고기간을 넘긴 후 제출된 항고장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43조, 제399조 제2항).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및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의한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

4. 원재판의 경정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46조, 재도의 고안).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제7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1. 취하서의 제출

가. 취하의 시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그러나 일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고 폐지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신

청 취하는 폐지신청으로 보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되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송달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요하지 않은 채로 절차는 바로 종결되어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취하서에 담당 법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을 즉시 종국처리 한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가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절차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에게 취하허가결정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2. 개시신청 취하의 경우 보전처분 등의 효력 등

일단 명령된 보전처분, 중지 ·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신청 취하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한다.

제3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제1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채권자 이의
제2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4장 변제계획인부결정 및 그 효력
제5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제1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채권자 이의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는 방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서 목록 기재대로 확정되는 경우, ② 이의가 제기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불복이 없어서 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그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④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 별개의 소송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2항 · 제3항).[125]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가. 의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125)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9035(본소), 2013다29042(반소) 판결].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는 절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다만 이때 채무자가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단서).

나. 이의신청서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로 볼 것인지 여부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들 대부분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의 이의신청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로 선해함으로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신청의 상대방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3항).

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이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

마.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의 관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 말일부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밖에 없고, 이의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심문을 거쳐 조사확정재판

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5항),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채권자집회를 개최하기에는 절차의 신속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는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의액수가 채무자의 신청자격(담보부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을 좌우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변제계획 자체가 새로이 검토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때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미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로서는 소송중단이 되는지 및 청구취지를 확정소송의 형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과 같이 채무자가 아닌 관리처분권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채무자에게 곧바로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중단이 있을 수 없고, 소송수계도 불필요하며 다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126]

제2절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1. 수정명령의 의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126) 참고로 대법원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제도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2.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및 시기의 제한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제약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를 뜻한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수정명령을 신청하거나 수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시기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이다.

3. 수정명령의 절차

보통은 변제계획안의 수정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도 수정되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법률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시까지만 수정 가능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에 수정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의 송달,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의 제출, 그 수정허가, 그 허가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수정제출 등이 순차로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권고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와 함께 수정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4.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수정명령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정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정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기각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5. 수정명령의 내용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정의 내용은 제한이 없지만, 법원에 변제계획안 작성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본래의 변제계획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수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본래의 변제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수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6. 수정명령 후의 절차

법원으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명령의 내용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채무자로부터 수정된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5항, 제597조 제2항).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제3절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1. 의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나 결의를 거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 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제614조).

3.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3항).

4. 이의제기의 효과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당해 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

고 있는 한 변제계획의 인가를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며, ③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일정한 금액(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1절 개요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이 경우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실무준칙 제421호 제2조). 다만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확정의 효과가 생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의 추가

가. 원칙

채무자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누락 채권의 추가가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

(1) 문제점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에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 당시에는 해당 채권을 빼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혹은 유리한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후 뒤늦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누락 사유 및 뒤늦게 추가한 사유 소명 요구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유 및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한다. 예컨대 금액이 큰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그 존재를 몰랐다고 믿기가 힘들 것이나,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권양도가 거듭되어 채권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뒤늦게 독촉장을 받고 알게 된 경우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실무준칙 제421호 제3조 제1항).

다. 보증인이 추가된 경우

보증인은 대위변제 전까지는 이의권한 등 절차참여권이 없으므로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시결정통지서와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가.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및 이에 따라 변경된 변제예정액표에 관한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기간을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다만 ① 채권금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③ 증액된 금액이 총 변제액의 5% 미만의 소액으로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의기간의 연장이나 채권자집회기일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실무준칙 제421호 제4조 제3항).

나. 금액 증가의 경우 주의할 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원금이 증가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법 비용이나 가지급금을 포함시키면서 원금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는 부채확인서 발급 이후 뒤늦게 매입이 발생하여 원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가산금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여 개시결정 당일까지의 가산금 · 중가산금만 반영하여야 한다.[127)]

3.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개인회생채권자 및 금액의 변경

가. 개시결정 전 채권양도 · 대위변제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 · 대위변제

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변동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의무가 없으나, 변동된 채권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양수인이나 대위변제한 자는 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이의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은 변경 전후 채권자에게만 송달하는 것으로 족하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을 양수받은 자나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나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보증인이 대위변제하였으나 대위변제 통지 없이 주채권자의 완제통지만 접수되어 보증인이

127) 자세한 내용은 45면을 참고.

장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변제계획안에는 누락되어,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지급받아야 할 변제예정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 지급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되어 변제완료 후 면책되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권자의 완제통지가 접수되면 향후 제출되는 변제계획안에 보증인의 구상채권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하고 채권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자의 채권금액은 원채권자의 원금만을 원금으로 기재하고, 이자는 전후 채권자의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금액을 수정한다.

다. 일부 대위변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개인회생채권자를 대신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개인회생채권의 일부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였다면 전액 대위변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 신청서의 제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①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주소 및 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 전자우편주소, ③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2항, 채무자회생규칙 제83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3조 제2항, 제76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 제3호).

4. 새로이 이의기간을 부여할 경우 이의 없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문제

새로이 이의기간을 지정할 경우에 종래의 이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새로 지정된 이의기간 내에 자신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

권은 종래의 이의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정된 내용에 관한 이의 외에 자신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대한 이의는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사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수정허가</th><th>이의기간의
지정</th><th>개인회생채권자목
록의 송달</th><th>변제계획안의
송달</th></tr>
<tr><td colspan="2">누락된 채권 추가,
확정전 채권금액의 변경
(개시결정 전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도 동일)</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확정된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당해 채권자가 다투지 않는
확정된 채권의 감액</td><td>×
(채권자표에
기재)</td><td>×</td><td>×</td><td>○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td></tr>
<tr><td rowspan="3">개시결정후의
채권양도,
대위변제</td><td>채무자
신청</td><td>○</td><td>×</td><td>×
(변경 전후
채권자만 송달)</td><td>×
(변경 전후
채권자만 송달)</td></tr>
<tr><td rowspan="2">채권자
신청</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채권이 확정된 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td></tr>
</table>

제3절 이의기간 도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감소

이미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다. 실무상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상계권의 행사 등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채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다툼이 없다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후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예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변동사항 기재란에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하지만,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수정이 아니므로 수정된 변제계획안 송달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다.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1절 개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 제5항). 이러한 이의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1항).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송달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제597조 제1항 제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3주 이내의 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로 정하는 것으로 하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외에 회생위원에게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준비

1. 개시결정 후의 변동사항 및 채권자의 이의내용이 정리되었는지 여부

가. 금액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제출한 금액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를

반영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한다면 속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이의신청서를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로 보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기간 도과 후 제출된 금액에 관한 이의 또는 개시결정 후의 이자나 가산금의 합산을 주장하는 이의 등을 반영한 수정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법원에 수정불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신고가 있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반영한 수정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정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채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에게 소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라. 수정된 문건의 검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계산이나 기재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부분 기존에 작성했던 파일을 수정 제출하여 문제가 없는 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수정을 하여 종전에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른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2.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가. 송달 여부 확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사건조회에 입력된 채권자명을 대조하여 입력이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채권자명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중간에 채권자 추가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간혹 전산입력이 누락되는 일이 있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마다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송달불능의 경우

(1) 원칙

송달불능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 다시 송달을 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자가 지정된 이의기간 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송달불능되었던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기간을 연장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로써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실조회신청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송달 장소를 찾아낼 방법이 없을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신청을 하도록 권고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전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

가. 채권자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한 경우, ② 월 변제액의 감소 · 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새로운 이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있고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공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1항).

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 경우, ② 개인회생채권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개인회생채권액과 비교하여 소액이어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액이 변경되었더라도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2항).

4. 적립금[128] 입금 여부 확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적립금을 임치하여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면담 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지체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열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나 수행의지를 의심할 만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모두 입금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절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의 작성

회생위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

통상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2~3일 전에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22호 제3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①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등의 변동사항, ②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이의 내용, ③ 채무자의 가용소득 적립여부, ④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내용을, 채권자 집회 후 보고서에는 ①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내용 및 채무자의 답변 내용, ② 채무자에 대한 추가조사 사항 및 조사결과, ③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및 수정된 변제계획의 요지, ④ 변제

128)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매월 변제액을 '적립금',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매월 변제액을 '변제금'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실무준칙 제422호 제2조, 제3조).

제5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1. 진행의 주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예규 제8조의2).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실무준칙 제423호).

2. 유의사항의 고지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통되는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② 인가결정문은 송달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및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③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채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인가결정 시까지라는 점(만약 채무자가 뒤늦게 추가하고자 하는 채권이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고 그 채권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폐지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④ 변제계획에 따라 충실히 변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⑤ 인가결정이 있은 후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 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인가결정이 있은 후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 및 폐지의 효과

⑥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해당 사건 압류 해제 후 제3채무자(급여담당자)가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점

⑦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⑧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및 면책결정의 효과 등

3.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판사는 우선 채무자의 이름을 부르고 신분확인을 한 후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어 회생위원에게 집회 전 보고서 등을 진술하도록 한다. 판사는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개별적인 유의사항을 알려 준다.

급여 압류적립금이나 공탁금을 변제에 투입하는 사건이라면 인가결정이 난 뒤 어떤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지를 고지하고,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이들 채권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변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고지하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이미 지체가 시작된 채무자에게는 현재 몇 회분이 지체된 채로 시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독려한다.

4.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불러 신분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판사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어 회생위원에게 집회 전 보고서 등을 진술하도록 한 후,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한다.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 내용이 채무자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기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속행하거나, 채권자집회 종료 후 추가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한다.

5.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1회의 불출석만으로 바로 폐지결정을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고 있다(실무준칙 423호 제2조 제2항). 다만 채무자가 불출석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은 때에는 재집회 없이 폐지결정하는 실무례도 있다.[129]

6.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법원 및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 및 수행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7. 개인회생채권자집회 후 보정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①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사건, ②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③ 채권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④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보고하고, 위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판사에게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실무준칙 제431호 제3조).

제4절 개시결정 후 송달이 불능된 경우 및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주소보정 및 송달료 예납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송달료 예납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가 전에 납부하여야

129) 자세한 내용은 236면을 참고.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 납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불인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집회의 개최 없이 불인가 결정을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폐지결정을 한다.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를 권유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일단, 집회를 개최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집회에서 채무자에게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다.

제4장 변제계획인부결정 및 그 효력

제1절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1.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③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2.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③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추가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ⅱ)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

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즉 채무자회생법은 최저변제액의 최고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산정될 수 있는 최저변제액의 최고금액은 1,600만 원(5억 원×3/100+1백만 원)이다.

제2절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1. 인가결정의 확정

변제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각하·기각 결정의 확정 또는 재항고기간의 도과나 재항고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130]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거쳐 종료된다.

2.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인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나, 반드시 기일을 미리 정하여 법정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고, 기일 외에서 선고하고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따라서 선고를 공고한 때가 효력발생시점이라고 볼 것이다.

만약 법원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는데, 항고심이 원심을 취소하고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면 그 인가결정 시에 변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변제계획의 효력을 받을 자 전원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고지한 때를 가리키므로, 항고심에 있어서는 그 인가결정을 공고한 때에 변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

130) 법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14일이다. 결국 공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3. 권리변경 및 실권과 관련된 문제

가. 권리변경 효력의 불발생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실권의 효력 불발생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실권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가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변제를 받고 나아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할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오히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들보다 더욱 강력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4.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채무자 및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친다.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주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6.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참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는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체납처분은 중지된 채로 유지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그 결과로 위 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게 된다.

제3절 변제계획불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중에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제4절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즉시항고권자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즉 변제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변제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이다.

가.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25조 제2항 제1호의 반대 해석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인 이상 현실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인 이상 그 권리가 미확정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조사확정절차나 그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그 권리가 부존재함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자는 항고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여 감면 기타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할 수도 없고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를 면책시킬 수도 없으므로 착오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항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별제권자

별제권자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별제권자의 지위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별제권 부족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다. 채무자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자신이 인가해 달라고 작성,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된 이상은 항고권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즉시항고의 절차

가. 항고제기의 방식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45조). 항고장의 기재 내용은 일반 민사소송법과 다르지 않으며,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제11조 제2항).

나. 항고기간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기산일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허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9조, 민소법 제173조). 당사자가 추후보완이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으로 보아야 한다.[131]

다. 항고장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1) 항고장의 심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심사하여 소정의 인지가 붙여져 있는지, 즉시항고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항고가 항고기간을 넘겼음이 명백한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43조, 제399조 제2항).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도의 고안으로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46조).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항고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400조).

(2) 불인가결정과 보증금 공탁명령

(가) 제도의 취지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채무자가 항고권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보증금 공탁명령

법원은 변제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4항). 따라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장이 접수되면 즉시, 항고장을 심사함과 아울러 공탁을 명할지 여부를 1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93조, 제71조 제1항).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항고보증금공탁명령시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추후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 보증금의 산정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되(채무자회생규칙 제71조 제2항), ①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②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④ 절차의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71조 제3항). 법원이 공탁명령을 할 당시 이미

13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참조.

확정된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과다하게 설정하면 항고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보증금 공탁명령에 불응한 경우

만약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5항).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제계획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게 된다.[132]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나.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심에서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단서는 엄격한 요건 아래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가처분은 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할 수 있다.

---

132)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4. 항고심의 결정

항고심은 항고인이 주장하는 항고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제1심에 대한 속심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항고심은 항고장을 각하하거나,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경우 항고기각결정을 한다. 제1심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와 동시에 불인가결정을 선고할 것이고, 제1심의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의 변제계획 수행의 감독 등을 항고심에서 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인가결정은 하지 않은 채 환송하여야 한다.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유 있어 항고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항고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3항 유추적용),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제1절 요건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가 있기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폐지의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18조에서 변제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절차를 정하고 있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을 하고 그 확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변제계획불인가결정과 하나의 결정으로 하거나, 따로 하더라도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릴 것 없이 변제계획불인가결정과 근접하여 또는 동시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번거롭더라도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린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133]

---

133) 대법원은 2014. 7. 25.자 2014마980 결정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변제계획불인가결정 확정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금 상당액을 납입하여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한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 전에 변제계획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져 스스로 폐지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항고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을 의미한다)을 미납한 사건을 취합하여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의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는데, 이때에도 불인가결정 없이 바로 폐지결정을 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당사자가 항고를 제기하면서 추후보완이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유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문의에 대하여 담당법원 직원이 폐지결정이 난 후 그에 대하여만 항고하면 되고 불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 점,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과 제623조 제1항은 변제계획불인가결정과 그에 따른 폐지결정 각각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을 다투기 위해 어떤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보완의 사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설명을 거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또는 허위의 설명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다(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2절 절차

위 1.,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그러나 위 3., 4.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절차폐지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3절 효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이로써 종료하게 되고,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채무자회생법 제582조)가 풀리게 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반대해석).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된다.

제4절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은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622조) 그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즉시항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고와 송달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즉시항고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송달시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134]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2항, 제247조, 채무자회생규칙 제93조, 제71조).

134)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015 결정 참조.

제 4 편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까지

제1장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제2장 변제계획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및 폐지
제3장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및 일시변제
제4장 면책

제1장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제1절 (가)압류적립금을 제1회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의 경우

1. (가)압류적립금에 대한 관리처분권

압류적립금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회생위원이 갖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처분권은 회생위원이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채무자에게 압류적립금을 귀속시키면 이를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회생위원이 관리처분권을 갖도록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권을 회생위원이 갖는 기재례]

>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압류적립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 ○○주식회사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2. 제3채무자가 (가)압류적립금을 보관하는 경우

가. 개요

(가)압류적립금을 제1회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회생위원은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수행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가)압류적립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3채무자와 협조하여 (가)압류적립금이 회생계좌에 제대로 입금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무상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리처분권이 회생위원이 아닌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나.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고 그

적립금의 관리·처분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음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압류적립금 투입 변제계획안),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예규 제11조의4).

3.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 등을 통하는 경우

가. 압류적립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 해제 후 해제증명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압류적립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탁관은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로 압류적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나.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 및 배당액지급증(증명서)을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회생위원이 공탁관에게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공탁금출급청구하고, 공탁관은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로 압류적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 통지서 양식(관리처분권이 회생위원에게 있는 경우)

서 울 회 생 법 원
통 지 서

수신처: (주)○○○○ 대표이사 귀하
참 조: 급여담당자
사 건: 20○○개회○○○○
채무자: ○○○

채무자 ○○○에 대한 위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는 20 . . .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제2항 및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압류적립금 ○○○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며 회생위원이 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 음

①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위 (가)압류적립금에 대한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위 (가)압류적립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적립금에 관하여 집행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라도 집행채무자에게 위 (가)압류적립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채무자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집행이 취소되면 위 (가)압류적립금은 회생위원 명의의 계좌(○○은행: 5619000000000, 예금주: 제○회생위원)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1통

20 . . .

서울회생법원 제○회생위원 ○○○
(전화: 팩스:)

제2절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최초 변제금의 이체

1. 개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의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전산입력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신고된 채권자 계좌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자동이체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출급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인가된 변제계획과 전산에 입력된 변제계획 비교 · 확인

변제계획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17)를 열어 변제기간 및 회차 나누기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번호, 채권자명, 채권자별 (미)확정채권액, 월 변제예정(유보)액, 총 변제예정(유보)액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3. 예금주 조회 및 자동이체설정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를 열어 '자동이체신청'을 클릭하고, '예금주조회[F7]'를 클릭하여 계좌번호가 입력된 채권자의 예금주가 채권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이름을 예금주로 하거나 회사명과 채무자의 이름을 병기하여 예금주로 하기도 하며,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이름이 예금주인 경우도 있다. 채권자명과 예금주가 달라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메모에 '6번 채권의 예금주 ○○○는 주채무자임' 식으로 기재해두면 나중에 채권자와 예금주가 다른 데서 오는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예금주를 확인한 후에는 '저장[F9]'을 클릭하여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돌아오는 가장 빠른 변제일부터 자동이체가 시작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월 변제일에 자동으로 변제금이 각 채권자에게 출급될 것이다.

4. 최초 변제금의 이체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에서 '채권다건작업'을 클릭하고, '일반 계좌이체 다건작업(자동)'을 선택하여 '확인[F9]'을 클릭한 후 예금주 확인을 하고 이체한다.

5. 공탁된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자동이체설정을 한 후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에서 '채권다건작업'을 클릭하

고, '일반 계좌이체 다건작업(자동)'을 선택하여 '확인[F9]'을 클릭한 후 이체하면 자동으로 공탁예정액누계가 변경된다. 수동으로 공탁예정액누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에서 '공탁예정액누계변경'을 클릭한다. 현재 출금가능잔액으로 이체할 수 있는 횟수만큼의 회차를 반영하여 공탁예정액누계를 변경한다.

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유보금 처리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금을 매월 유보하게 된다.

자동이체설정을 한 후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에서 '채권다건작업'을 클릭하고, '일반 계좌이체 다건작업(자동)'을 선택하여 '확인[F9]'을 클릭한 후 이체하면 자동으로 유보금누계가 변경된다. 수동으로 유보금누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에서 '유보금누계변경'을 클릭한다. 현재 출금가능잔액으로 이체할 수 있는 횟수만큼의 회차를 반영하여 유보금누계를 변경한다.

7. 변제금의 출급

가. 원칙: 자동이체에 의한 변제금 출급

인가 후 최초 변제금 이체 작업을 하면서 자동이체설정을 하였다면 별문제가 없는 한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월 변제일에 자동으로 변제금이 각 채권자에게 출급된다.

나. 계좌이체가 필요한 경우

(1) 공탁 채권의 계좌번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 공탁 처리되어 있던 채권의 계좌번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예정액누계를 0원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적립된 변제금을 한꺼번에 이체한다.

(2) 채권자 간 변제횟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채권자 간 변제횟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사건을 발견할 때마다 변제횟수의 차이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현재의 출금가능잔액이 부족하여 정리할 수 없다면 자동이체설정을 해지하고 달력 등에 메모해두었다가 다음 변제일경에 변제금이 입금되면 정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상의 사건메모(HP213)에 이러한 사유로 자동이체설정을 해지해두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는 '일반 계좌이체 다건작업(자동)'을 사용하므로 채권자 간 변제횟수에 차이가 생기는 경

우는 거의 없다.

다.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한 경우

(1) 계좌 오류 등

일부 채권자의 계좌가 해지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자동이체가 정지되는 일이 생긴다. 해당 채권자의 계좌에 발생한 오류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라면 채권자공탁지정(재판사무시스템 HP701)에서 해당 채권을 공탁 지정한다. 한편 '자동이체신청' 메뉴에서 '자동이체상태'를 확인하여 '일시중지' 상태라면 자동이체신청결과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73)에서 '개시' 상태로 변경하도록 한다.

(2) 주기적으로 일시중지 해소하기

자동이체 일시중지 상태라면 변제일이 되어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에게 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변제일이 집중되어 있는 매월 25일 등을 앞두고 일괄적으로 일시중지를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

자동이체신청결과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73)에서 '사건조회'를 클릭하여 사건이 조회되면 '일시중지사건 선택(I)'을 클릭한 후 일괄적으로 자동이체 개시신청을 한다.

8. 계좌 미신고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가. 개인회생공탁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예규 제11조의5 제1항).

나. 공탁예정통지서의 발송

회생위원은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예규 제11조의5 제3항). 다만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조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규 제11조의5 제2항 단서).

공탁예정통지서는 공탁예정통지서출력(재판사무시스템 HP699)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다. 공탁방법

공탁서출력(재판사무시스템 HP703)에서 '전자공탁'을 클릭하고 '제출[F9]'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공탁할 수 있다. 공탁사건번호가 발급되면 공탁사건번호등록 및 공탁금납입(재판사무시스템 HP705)에서 공탁금을 이체한다.

공탁금출급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탁사건번호등록 및 공탁금납입(재판사무시스템 HP705)에서 '공탁금 지급'을 선택하고 해당 공탁번호를 선택한 후 '출력[F6]'을 클릭하여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를 교부하면 된다.

9.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가. 미확정채권통지서의 발송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에는 회생위원은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 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예규 제11조의6).

미확정채권통지서출력(재판사무시스템 HP697)에서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경우

제4편 제2장 제1절 5.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따른 수정보고에서 상술한다.

제2장 변제계획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및 폐지

제1절 변제계획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1. 개요

변제계획인가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변제계획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변동사항을 반영할 것인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가. 변제계획인가 후 누락 채권이 발견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가 후 누락 채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절차가 폐지된 후 누락된 채권을 반영하여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동일 절차를 반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누락된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나. 단순한 오기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나 채권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 채권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상호변경의 경우

채권자가 상호변경 등을 이유로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변경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없다. 전산상으로는 변경된 채권자명으로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건메모에 기재하여 둔다.

(2) 채권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채권자를 잘못 지정하여 그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고 확정된 경우이다. 예컨대 진정한 채권자는 북서울농협인데, 남서울농협으로 기재하여 남서울

농협에 송달이 되었으나 남서울농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서울농협과 북서울농협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송달 등 절차참여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가 후 누락 채권이 발견된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정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이의가 없음을 밝히고 스스로 법원에 채권자명 변경을 요청하면서 절차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절차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진정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을 송달하여 주고, 채권자가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정결정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3. 변제계획인가결정의 경정

변제계획의 변제예정액표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나 합계금액이 잘못 기재되는 등 변제계획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에 대한 경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 . 고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변제계획 중 변제예정액표에 다음과 같은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변제예정액표를 별지로 첨부한다.

4. 채권양도 · 양수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가. 채권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1) 제출서류의 검토

채권양도 · 양수신고서에 채권양도 · 양수계약서 및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발송한 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들 서류에 양도인 · 양수인의 표시 및 양도 · 양수 대상 채권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2) 처리방법

채권번호	번
변제수행횟수	회
변경회차	회부터
전산입력	
회생위원	

채권양도 · 양수 서류에 위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 채권번호 및 이미 수행된 부분의 회차

와 변경될 회차를 계산하여 기재한 후 전산시스템의 변제예정액표상 채권자명을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인)"의 형태로 수정하고 이체금 등을 정리한다(실무준칙 제443호 제5조).

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1) 전부 대위변제

(가) 원칙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수행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정산관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수행 부분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기수행 부분을 법원에 반환하고 전액 대위변제를 받았다면 반환금 등록을 한 후 회차를 나누어야 한다. 간혹 기수행 부분을 법원에 반환하였음에도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 이를 누락한 채로 회차를 분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나) 확정채권액이 감소한 경우

전액 대위변제가 신고되었으나 신고한 대위변제 채권액이 상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가결정 당시 확정된 채권액보다 적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어 신고한 확정채권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위와 같은 사유를 반영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법원에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일부 대위변제

(가) 원칙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135]

(나) 보증채무가 면제된 보증인의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보증채무를 면제받은 보증인이 보증채무 면제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위변제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실질적으로 보증채무의 일부만 대위

---

13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변제하였을 뿐이고 원채권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대위변제자로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 2인 이상의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면 개인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서 대위를 인정하여 법원에 수정보고를 한다.[136]

(라) 보증비율 내 전부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분만을 한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일부 보증을 하고 보증범위 전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변제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431조). 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85%나 90% 등 일정한 비율에 한하여 일부보증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일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개인회생변제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 인정 여부

(가) 문제점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채권이 부부 일방에게는 주채무이면서 또 다른 일방에게는 보증채무인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부부 모두에게서 월 변제금을 수령하면서 변제기간 만료 전에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통지를 한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부부 일방의 대위변제를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나) 대위변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장래의 구상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점,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법률상 개인회생채무자의 장래의 구상권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채무자를 배제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장래의 구상권자인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수행을 통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상 구상권을 취득하여 부부의 다른 일방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 대위변제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완제 이후의 변제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

채무자회생법상 예정하고 있는 장래의 구상권자에 개인회생채무자를 포함하는 것은 형평 및

136) 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참조.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 개인회생제도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도 개인회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개인회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투여한 가용소득의 일부를 돌려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완제 이후의 변제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라) 절충설

채무자회생법상 인정하고 있는 구상권을 개인회생채무자라고 하여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개인회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가용소득의 일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완제 이후의 변제금을 지급하되, 구상금액은 개인회생채무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구상권을 인정하되, 개인회생채무자의 회생계좌로 이체하고 안분배당 수정보고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마) 실무의 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의 장래의 구상권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채무자를 배제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를 개시하게 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바, 그러한 구상권 행사로 받을 구상금은 가용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장래의 구상권자인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수행을 통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상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할 때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위 사안의 경우 명백히 구상권의 발생이 예측 가능하였음) 이러한 구상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청산가치 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따른 수정보고

가. 개요

담보권자의 채권 중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이나 다툼이 있는 채권의 경우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월 변제금을 유보하여 두는데, 인가 후 별제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나,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확정신고를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나. 확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

(1) 담보권의 실행으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배당표와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배당표와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결정서 또는 판결정본과 함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확정신고에 따른 수정보고

(1) 확정채권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

담보권의 실행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다면 제출서류를 조사하여 신고한 금액대로 확정신고에 따른 수정보고를 한다.

(2) 확정채권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보다 큰 경우

(가) 문제점

담보권실행 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인가 당시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보다 크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137] 이 경우 해당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으로 인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나) 1회부터 소급하여 확정채권액을 반영하자는 견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인가 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시기를 정하여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담보권자의 권리실행 여부는 담보권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 담보목적물이 자동차인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서는 채무자의 차량인도라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1회부터 소급하여 확정채권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수정보고하자는 견해

별제권자는 인가 후 조속히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담보권실행을 게을리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하락된 상태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허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137) 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 주로 발생함.

(라) 검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확정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절차 없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계획 변경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송달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처리방법의 입법적 불비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수정보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별제권자의 담보권실행 결과 확정채권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보다 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처리할 경우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식이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환가예상액의 50% 이하로 반영하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별제권자도 인가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에게 조속히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명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에게 이러한 취지를 고지하여 업무처리의 원활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3) 담보권실행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채권액을 신고한 경우

실무상 ① 인가 후 차량 담보권자와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차량 담보권을 말소한 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신고하거나, ② 차량 담보권자가 담보권 행사를 포기하고 개시결정 당시 채권현재액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확정 채권현재액 그대로 확정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③ 채무자가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담보목적물(주택 등)을 매각하고 담보부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후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다.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되 그 행사 여부는 별제권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일반 개인회생채

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등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으로 예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별제권자가 합의하여 확정한 채권액을 인정함이 적절하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인가 당시 예상했던 환가예상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담보부 채권을 변제하고도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귀속되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당초의 총변제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4) 면책단계에서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변제기간 만료일 이후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한 시점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자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보금의 처리가 문제 된다.

(가) 확정 여부의 확인

면책 검토 단계에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는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연체 없이 이자를 지급하여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7.나.(3)항에 해당하여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수정보고를 하여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을 진행한다.

(다) 원금 100% 변제계획안인 경우 유보금의 처리 문제

위 (나)항의 경우 중 원금 100% 변제계획일 경우 유보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변제개시일부터 36개월 이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36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36개월 이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다.

(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과 관련한 문제

① 대항요건, 확정일자 여부에 따른 미확정채권 처리 방법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매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표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대항요건	확정일자	선순위담보	처리 방법
○	○	×	별제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138]
○	○	○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별제권에 관한 예정부족액의 처리방법과 같음[139]
○	×	×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안분변제함으로써 처리
○	×	○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외의 부분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동일하게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취급

경매의 경우와 달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추었느냐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제권 행사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된다.

② 변제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후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따른 수정보고를 한다.

③ 인가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실행 후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미확정채권통지서는 송달불능이 되고 임차인과는 연락도 안 되는 경우의 유보금 처리

면책단계에서 임차인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나, 임차인의 확정신고가 없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배당표를 근거로 미확정채권의 확정에 따른 수정보고를 하고 임차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금을 공탁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주소변동을 신고하여야

---

13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전액변제되거나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소멸된다.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제권자와 같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139)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될 것이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한다는 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자 역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 후 법원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확정채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이나 계좌 미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소에 공탁함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④ 변제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실무상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면서 채무자 소유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미확정채권액 그대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건물인도의무 간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이사했어야 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가장임차인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권리 포기에 따라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⑤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미확정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으로써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안분변제함으로써 처리한다.

6.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보고[140)]

가. 개요

인가 후 상계에 의하거나 주채무자나 채무자 본인의 변제에 의하여 채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통지 없이 변제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적립금 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140) 실무준칙 제443호(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4조(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상계에 의하거나 주채무자나 채무자 본인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법원은 소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완제일 이후의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원금의 100%인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변제개시일부터 36개월 이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36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2. 36개월 이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나. 제출서류 검토

우선 어떤 사유로 완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채무자나 채무자 본인에 의한 변제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나, 보증인에 의하여 대위변제된 것이라면 대위변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처리방법

(1)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안분변제

회생위원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완제 후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에 수정보고를 한다. 다만 변제기간 만료일이 몇 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편의상 면책단계에서 일시변제 회차를 만들어 안분변제하는 수정보고를 할 수도 있다.

(2) 원금 100% 변제계획인 경우

원금 100% 변제계획인 경우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함으로써 변제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36개월 이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36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보고를 하고, ② 36개월 이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제2절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1. 개요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각 회생위원은 재판부별로 대략 3천 건 내지 4천 건 정도의 인가 후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한 사건이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인가 후 폐지요건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요건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함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아래와 같은 경우 주의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함으로써 이행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실무상 상속인들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일시변제에 의한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허하여야 한다.

(2) 변제금을 지체한 경우

(가) 개요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월 변제금 미납 및 이행 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폐지하는 경우이다.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몇 회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폐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폐지의 요건으로 이행 불가능성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다만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및 예규 제11조의3(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은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회생위원은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미납된 경우에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판례

대법원은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

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141]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연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위와 같이 대법원 결정에서 판시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실무현황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은 위 처리지침에 따라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체사유 및 변제계획변경 가능성 유무를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상으로는 여러 가지 사유[142]로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체액, 최종 입금날짜,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수행불가능성으로 인정될 경우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고 있다.

(라)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실무준칙 제441호) 주요 내용

이 준칙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변경 등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변제계획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말한다.

①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금 미납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별지 1 통지서],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자로부터 지체사유, 변제계획 변경 필요

141) 대법원 2017. 7. 25.자 2017마280결정 등.

142) 접수사건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 채무자와의 연락두절, 변제계획 변경절차의 번잡함과 변경사유의 불명확 등.

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위 서류를 송달할 송달료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 의견을 청취한 후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에 채무자의 지체내역 및 지체사유에 관한 사실,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143]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의 보고서 작성 후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1. 회생위원이 실무준칙 제441호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위원이 실무준칙 제441호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서 등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3) 한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변제금 미납을 폐지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 바 있다.

[별지 1 통지서]

통 지 서

사 건 : 20○○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 ○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별첨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2. 채무자 진술서

20○○. ○. ○.

서울회생법원 제○회생위원 ○ ○ ○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채무자 진술서

사 건 : 20○○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 ○ ○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 지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

2. 미납금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현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예시]

①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또는 2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구체적인 금액 기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기타

20○○. ○. ○.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1.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나.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다.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라.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마.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바.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2.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나.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다.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 단,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3호).

다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가 전에 재산 및 소득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가 후에 밝혀진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개인회생절차는 면책을 최종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먼저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절차

이해관계인이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하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폐지사유가 존재할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4.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가. 절차의 종료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이로써 종료하게 되고, 변제계획 인가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144]

144)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나. 효력

(1)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 유지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부분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이는 그것이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미 행한 부분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어떻게 충당되는가의 문제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145]

(2) 개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효력 유지

예컨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한 회생절차·파산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등의 실효(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도 번복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폐지시부터 새로(즉 남은 시효기간만 진행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5.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 즉시항고기간은 공고 후 14일 이내이며,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2항, 제247조 제4항, 제5항).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항고보증금 공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추후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항고장이 제출기간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조).

145) 집행실무상 인가 후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폐지확정 당시까지의 변제된 금액에 대한 기재가 집행권원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전혀 기재되지 않고 집행문이 부여되고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집행권원 채권자에게 배당 등을 통해 지급한 금원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에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어야 하는 집행법 규정(민사집행법 제42조 제2항, 제159조 제3항 등)과 상치되는 면이 있으므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고 지체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변제계획을 유지하나, 지체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않는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서 항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에 송부하여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146]

6. 폐지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가. 불수행 보고서 제출

변제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폐지할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은 불수행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나. 계좌정리 방법

폐지 후 회생계좌의 잔액이 있으면 사건기록을 종국 및 보존 처리할 수 없으므로 계좌정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① 잔액정리 방법

월 가용소득 미만의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실무는 채권자 안분변제 시 채권자 지급액이 원 미만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변제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② 계좌미신고 채권자 공탁예정액 처리 방안

회생위원은 계좌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하고(예규 제11조의5 제2항), 계좌번호 신고를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번호 신고 촉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무는 계좌미신고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채권자에게 공탁하여 처리하고 있다.[147]

③ 미확정채권자 유보금 처리 방안

폐지 당시 미확정채권 확정 여부를 조사하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조사),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한 후 폐지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폐지 당시 미확

146)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6조(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기록이 항고심에 송부되기 전까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고 원심법원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체사유가 소명되었고, 그 사유가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147) 그러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추완항고 등으로 폐지결정 취소 가능성 있고,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탁하는 것은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며,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2항 및 규칙 제84조 제2항에서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탁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정인 경우에 실무는 미확정 유보금을 현재 회차를 초과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수행함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회차까지만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환급하여 처리하고 있다.[148]

다. 자동이체 해지

불수행 보고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폐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여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이체 해지 상태에서만 종국 입력이 가능하므로, 미리 회생계좌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두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폐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금을 입금하였지만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위 변제금은 환급하도록 한다.

라. 폐지결정 확정에 따른 종국 및 보존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 회생계좌를 정리하는 등 신속히 사건을 종국 처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7. 관련 문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종료 후 채무자 미납금이 3회 미만인 사건의 처리 방안이 문제 된다.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제수행을 독려하여 미납금 완납 후 면책될 수 있음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제수행을 독려할 수 없고 결국 채무자가 스스로 미납금을 납부할 때까지 사건을 장기간 종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특별면책이나 폐지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규칙 등은 변제금 미납과 관련하여 3회 미납의 기준제시를 통해 그 이상 미납사유가 발생하면 회생위원은 법원의 폐지결정판단의 참고자료가 되는 변제수행 가능성을 판단한 불수행보고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칙 등의 반대해석 및 채무자회생법의 해석상, 회생위원은 3회 미만 미납의 경우 불수행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채권자 폐지신청, 변제기간 도달 후 도과기간, 월 변제금, 변제수행현황(정기, 비정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불수행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48)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환급하자는 견해와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자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변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3회 미만의 미납금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 예규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면책, 폐지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149]

149)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회신 내용.

제3장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및 일시변제

제1절 변제계획의 변경

1. 개관[150]

변제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에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별제권행사 등으로 확정된 채권액이 애초에 예상하였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 회생절차와 달리(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변제계획변경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151]

한편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인가 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 ·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나아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법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제1항 · 제2항).

---

150)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참조.

151) 다만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에서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제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152]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

가. 채무자

채무자는 인가 후 직장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또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한 생계비 증가 등을 이유로 가용소득을 줄인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변동, 특히 변제기간 중 채무자 명의의 재산 취득, 인가 당시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의 요청서에 불과하다.

법원의 조사 및 판단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송달료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 회생위원

실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변동 사항을 직접 인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무자 및 채권자의 신고에 의해 간접적으로 변경신청 사유를 인지한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3. 변제계획 변경 절차

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시기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시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따라서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변제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하여 신속

152)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 제1항).

나. 제출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판단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변제계획 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한다(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 제2항).

실무상 회생위원이 사전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들을 먼저 검토하여 채무자가 변경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인 점,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반드시 채권자집회기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 것은 아닌 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회생위원의 이의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안이 제출되었을 때 회생위원이 사전에 각 요건을 검토하여 보정권고하는 것은 적절한 실무 운용례라고 보인다. 다만 회생위원이 사전 검토를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절차, 즉 채권자집회 및 인부결정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등을 통하여 회생위원 및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그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계획 변경안 불인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153]

(1) 변경사유 존부 판단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과 함께 변경사유를 주장하는 객관적 소명자료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1차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변경사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아래에서 예시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154]

1. 수입의 감소: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의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일시적인 수입의 감소: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

153)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154) 실무준칙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 제4조(회생위원의 조사 및 보고서 제출)

3. 생계비의 증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출산, 실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실무상 문제 되는 것으로는 직장 변동을 이유로 한 급여 감소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직장 변동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직장폐업, 해고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실직인지 여부), 현재의 직장과 과거 직장의 급여를 비교하여 적정한 직장으로의 재취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실무상 어려운 점은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일 경우에 영업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이유로 가용소득이 축소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영업소득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크며, 따라서 영업소득의 감소가 일시적 상황인지,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로서는 인가 후 영업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가 당시에 조사된 소득 및 인가 후부터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시점까지의 영업소득 변동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출된 변제계획 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검토

회생위원은 변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출된 변제계획 변경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 권고한다. 특히 변제기간 및 가용소득에 있어 변경 시점으로부터 기수행 부분과 변경 후 수행 부분과의 분리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3) 변제계획 변경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위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후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의견 제시에 관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회생위원이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사건번호, 인가일, 현재 수행회차 등)과 변경사유로 주장하는 내용 및 회생위원의 조사내용, 희망하는 채권자집회기일을 기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회생위원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끝났을 경우 법원에 업무수행결과보고의 형식으로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변제계획 변경안 부본을 포함하여 채무자 및 채권자들에게 송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597조 제2항).

라. 집회 전 보고서 작성 및 변제계획 변경안 인부

회생위원은 '집회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에 따른 월 변제금이 납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계획 변경안 인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특히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검토가 중요하다. 즉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향후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일 기준 당시의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한다.

마. 변제계획 변경안 인부 및 효력, 불복방법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된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기며,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의 해석상 변경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부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4.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한 실무례

가.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변제는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이상, 소득의 증감폭보다 가용소득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남아 있는 변제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즉 제출 시점이 변제기간의 종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어느 정도인지, 즉 변제율이 높다면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실무상 문제 되는 변경사유

(1) 수입의 감소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수입 감소의 불가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에 의한 휴직인 경우 질병휴직서, 회사 사정에 의한 급여감소의 경우 회사와의 협약서, 실직과 재취업에 따른 수입 감소인 경우 실직의 타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강제 · 권고사직 경위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과거 경력 및 수입을 참작하여 현재의 수입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급여 감소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 감소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변제기간 중 복직 또는 급여의 원 복귀가 예상된다면 변제계획안 10.기타사항란 기재를 통하여 그 예상시기부터는 다시 원래의 가용소득 또는 예상시기에서의 수입과 생계비 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용소득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채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2) 생계비의 증가

변제기간 중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배우자의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사유로 생계비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생계비 증가의 불가피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3) 채무자의 재산증가

실무상 인가 당시 신고한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별제권의 실행(임의경매 진행)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한 금액이 큰 경우, 최초 인가 당시 보다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최초 인가 당시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다.

(가) 소유 부동산의 가격상승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인가 당시의 가격보다 월등히 상승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인가 당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변제기간 중 그 가격상승이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범위 내에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일반 상식에 비추어 소유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반인의 예측 가능성을 뛰어넘어 급격히 상승하였다면 이 또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파산원인의 소멸 여부 등).

(나) 별제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한 금액이 큰 경우

실무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가액보다 근저당채무가 초과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배당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예상외로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당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에게 배당된 금액으로 인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155]

155) 이 경우에 변제계획인가 당시에 산정한 청산가치와의 차액, 변제율,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당초의 총 변제예정액이 경매잉여금을 포함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변제율이 10~20% 이내이고, 총 변제예정액 대비 경매잉여금의 비율이 10%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자에게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을 권고하거나 회생위원이 직접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을

(다)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자가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이 인가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 인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청산가치,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 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변제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특히 제3자에 의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실무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취득경위,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내역의 소명을 보정 권고한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수자금이 인가 당시에 은닉된 재산이나 허위 소득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해당되어 변제계획 수행 여부 불문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동산 매수자금이 제3자에 의한 자금(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르게 보아야 함. 제3자로부터의 증여는 재산의 증가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취득한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권고하거나 회생위원이 직접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인가 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채무자는 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후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도 있다. 채무자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로 규정(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부동산취득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불이행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수자금이 인가 당시에 은닉된 재산이나 허위 소득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해당되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부동산 매수자금이 제3자에 의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정하였다. 채무자가 이미 경매잉여금을 출급하여 모두 소비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소명(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생계비의 지출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으므로 채무자는 변제기간 중의 부동산 취득을 법원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5)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인가 후 퇴직에 의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채권자의 퇴직금 투여 요청 포함)

(가) 문제점

공무원 등 예상퇴직금 전액이 인가 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중 퇴직을 하여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된다. 또한 채권자(퇴직금이 입금된 은행 등)가 채무자의 퇴직일시금 수령을 법원에 신고하면서 청산가치 반영 및 퇴직일시금 투여를 위한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나) 퇴직금 전액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채무자가 퇴직금 전액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따라 월 평균 수입 변동을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취업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의 허부를 판단한다.

(다)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①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재산으로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된 이상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인가 당시 퇴직에 따른 퇴직금 수령은 예측 가능함에도 예상퇴직금을 청산가치에서 배제한 취지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청산가치에는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②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투여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시변제를 위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일시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일시변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채무자가 수령한 일시금을 소비한 후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소비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월 평균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거나, 퇴직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 후 그에 따라 감소된 퇴직연금액을 근거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퇴직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 납득할 만한 소명이란 예상치 못한 사유(암 등에 의한 다액의 병원비 지출 등)로 일시금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의미한다.

④ 채무자가 수령한 일시금을 소비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지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용소득의 대폭적인 감소)

이와 같은 경우 퇴직 당시 일시금을 선택한 이유 및 일시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여 그 소명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로 보아 기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일시변제

1. 개요

변제기간 중에 있는 채무자가 자금의 여유 또는 친인척 등에 의한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에서 논한 재산 및 소득의 변동에 따른 변제계획변경과는 다른 문제이며, 따라서 변제계획변경과는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44호로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를 규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가. 변제계획변경 필요 여부

일시변제는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를 앞당겨 변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변제계획변경이 아니므로 변제계획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일시변제 후 면책절차가 특별면책인지의 여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이므로 일반면책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별면책에서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채권자가 인지하고 있는 변제수행 및 면책시기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시변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있다.

3. 일시변제 허용 사유 판단

일시변제 허용은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반면(변제기간의 단축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채무자의 재취업 가능성 조사 필요)에는 일시변제를 허용한 적이 있으나, 단순히 소득의 증가나 직장 이직에 따른 소득 증가를 이유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특히 월 가용소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등 소액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용소득 증가를 위한 변제계획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지, 일시변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4. 일시변제에 관한 업무처리

가. 일시변제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회생위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일시변제할 자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예컨대 주위 친지 등이 도와주어 대신 변제하는 돈이어야 한다.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금출처의 진실성에 관한 채무자의 진술서

(3)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과 관련하여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법원은 채무자의 일시변제 신청서 사본을 의견청취서에 첨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각 채권자들에게 송부하고 답변이 오면 기록에 철한다.

다. 법원에 보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위 서류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라. 변제금 입금 및 이체

법원의 일시변제 허가가 있으면 회생위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되면 채권자들에게 각 이체한다.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마. 면책신청

일시변제 후 면책신청이 제출되면 변제수행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원에 보고한다.

5. 퇴직금에 의한 일시변제 허용 여부

실무상 채무자가 자의든 타의든 현재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퇴직에 의한 퇴직금의 발생이 변제기간 중의 재산의 증가에 의한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원인지가 문제 된다. 회생위원은 퇴직 후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고 일시변제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제4장 면책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면책의 요건과 절차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156]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가.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완료에 관한 보고

회생위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한 후 변제계획완료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

나. 검토할 사항

면책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가 수행되었는지를 원본기록과 대조하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변제기간 확인

기록에 편철된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과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 또는 변제계획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17)에서 변제기간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왜냐하

15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에 의하면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면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전에 인가된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36개월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종 수정보고나 채권양도에 의하여 전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변제계획 변경에 의하여 변제기간이 단축되었는데도 종전의 변제기간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가용소득의 확인

기록에 편철된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과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HP631) 또는 변제계획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17)에서 가용소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과 변제금계좌이체 화면의 가용소득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이 있는지, 변제계획 변경안이 재인가 되었는지, 미확정채권의 확정신고로 유보금을 일시변제로 수정 보고한 경우가 있는지, 재산처분의 변제계획이 있는지를 각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적립금조회를 통한 입금내역 확인

(가) 가용소득의 정확한 입금내역 확인

적립금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41)를 통하여 입금내역을 확인한다. 적립금조회 화면을 통하여 변제예상금액 및 미수행금액을 확인하고 미수행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일시변제나 재산처분의 변제계획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입금액을 확인하여 일시변제금액 및 재산처분금액이 각 입금되었는지도 확인한다.

(나) 반환금 존재 여부 확인

적립금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41)를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반환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제수행결과(재판사무시스템 HP635) 화면에 반환금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간혹 채권자가 채권종결통지를 한 후에 법원에 별도의 통지 없이 추후 반환함으로써 누락된 반환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변제수행결과 화면을 통한 채권자별 출급금액과 총변제예정액의 일치 여부 확인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채권자별 총변제예정액의 합계와 변제수행결과(재판사무시스템 HP635)에서 출급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채권자명이 일치하는지, 총변제예정액과 출급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각 채권자별로 확인하면서 올바르게 변제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채권이 양도된 경우, 계좌가 미신고 되어 있는 경우, 미확정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인가 후에 채권양도로 채권자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건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911) 화면에서 문건이 접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변제수행 회차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계좌가 미신고되어 있는 경우

변제수행결과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635)에서 출급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공탁예정액누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사건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911)에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가 접수되어 있는데도 가끔 입력이 누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변제금을 이체한다. 다만 공탁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 공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계좌미신고자가 개인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채권자와 연락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된다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채무자 역시 채권자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면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변제수행을 정리한다.

② 계좌미신고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계좌미신고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 채권존부를 확인하고, 채권이 존재한다면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대체로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면 주채무자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든지, 착오로 이중으로 채권이 기재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종결통지서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보고를 한다.

(다) 미확정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미확정채권자의 변제금이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락하여 별제권부 채권의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별제권부 채권이 종결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만약 종결되지 않았다면 변제계획안 7. 미확정채권의 조치 내용을 고지하고 유보금을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보고를 한다.

(라) 채무종결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권이 종결되었다는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른 일반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안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보고를 한다.

(5) 전산상 사건조회 화면을 통하여 중요 문건을 확인

변제수행결과(재판사무시스템 HP635)에서 출급 금액과 총변제예정액이 서로 일치하고, 미수행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일단은 변제수행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건조회(재판사무시스템 HP911)를 통하여 중요한 문건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내용이 전산에 반영되어 변제수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간혹 채권자로부터 채무종결통지서가 접수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데 반하여, 이 경우의 면책은 임의적인 것이다.

즉,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특별면책제도의 활용이 저조하였던 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결과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하여 부담을 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별도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특별면책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여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별다른 실익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특별면책 활용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를 개정하여 2020. 7. 23.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 요건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컨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문언 자체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실직을 당

한 후 여러 개월 동안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처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채무자가 실직 후 다시 취업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자인 때와 같이 채무자의 기존 직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과연 그러한 상태가 채무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들은 존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에서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다.

(2)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이때의 청산가치는 인가결정 당시의 청산가치를 의미한다.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변제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 (1)항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소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특별면책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4) 실무상 처리

회생위원은 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면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의 처리 방안으로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방안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서울회생법원은 특별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폐지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기 보다는 면책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변경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면책신청 기각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양식] 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

제　　회생위원 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

사　건 : 20○○개회　　호 개인회생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특별면책 신청 여부		○ 또는 ×
요건 충족 여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또는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	○ 또는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한 것인지 여부	○ 또는 ×
이해 관계인	송달 여부	○ 또는 ×
	의견서 제출 여부	○ 또는 ×
	의견 중 특이사항	
기타사항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20○○.　.　.

제　　회생위원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나. 절차

채무자의 특별면책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양식의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그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특별면책에 반대한다고 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개정에 의한 면책[157]

가. 개요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부칙의 개정(2020. 3. 24. 시행)으로 변제기간 상한 단축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개정규정 시행(2018. 6. 13.)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요건

(가) 2018. 6. 13.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 받았을 것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 2018. 6. 13. 당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수행"은 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 "변제의 수행"과 동일한 의미로 채무자가 변제액을 납부하고, 채권자가 지급(계좌입금)받은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때 2018. 6. 13. 당시에 36회분 변제일이 도래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2018. 6. 13.이 지난 시점에 36회분 변제일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선납으로 2018. 6. 13.까지 이미 36회분 이상의 변제액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정 부칙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8. 6. 13.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에 어긋난 변제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8. 6. 13.까지 36회분의 변제일이 도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위 일자까지 36회분의 변제액 상당을 입금하였는데, 이체 등이 늦어진 이유로 2018. 6. 13.까지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액수가 36회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엄격히 보면 "3년 이상 변제계획을

157)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개정에 의한 면책은 면책의 근거규정, 요건 등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과 다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면책'으로 부르고 있다.

수행"이라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무자로서는 위 부칙면책의 요건에 포섭되기 위한 행위는 모두 하였음에도 다른 사유로 부칙면책의 가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면책결정 단계에서는 2018. 6. 13.까지의 채무자의 입금횟수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출금횟수 및 그러한 출금횟수가 입금횟수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 등

부칙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인가결정 당시의 청산가치와 면책결정시까지 변제액을 인가결정 당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된다.

개정된 부칙에서 소득의 변동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여부는 심사요건이 아니다.

다. 실무상 처리

부칙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부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회생위원은 요건의 충족여부, 특이사항 및 채권자 의견 등을 기재한 부칙에 의한 면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부칙면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의 처리 방안으로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방안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서울회생법원은 특별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책신청 기각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부칙면책신청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정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금액은 채권자에게 이체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식] 부칙에 의한 면책에 대한 보고서

제　　회생위원 부칙에 의한 면책에 대한 보고서

사　건 : 20　개회　　호 개인회생
채무자 :
면책신청서 접수일 : 2020.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면책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다　　음 -

부칙에 의한 면책 신청		○ 또는 ×
변제계획인가결정일		20　.　.　.
변제수행횟수	현재까지 변제수행횟수	60회 중　회
	2018. 6. 13.까지 변제수행횟수	60회 중　회
청산가치 보장원칙 충족		○ 또는 ×
이해관계인	송달	○ 또는 ×
	의견서 제출	○ 또는 ×
	의견 중 특이사항	
면책불허가 사유		○ 또는 ×
기타사항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20○○.　.　.

제　　회생위원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제3절 면책불허가 사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①의 경우 '악의로'라는 것은 '알면서도'라는 뜻이다. 즉 모르고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알면서도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이는 채권신고 및 미신고 채권의 실권절차를 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 변제할 채권을 확정하도록 정함으로써 되도록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도모하는 대신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채권자 간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과 달리 '과다한 낭비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58]

그리고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이 '불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할 수도 있다.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하지 않고 송달하므로 즉시항고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이 도과하면 확정된다(민소법 제173조).

제4절 면책의 효력

1. 면책의 의미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자연채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면책된다.

---

158) 대법원 2012. 1. 31.자 2011마2392 결정 참조.

2. 면책의 효력범위

면책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159]

또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그러나 채권자가 나중에 별제권을 행사하고 남은 채권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3. 면책의 효력발생 시기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4항). 따라서 송달일과 관계없이 공고 다음날부터 14일이 도과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4. 면책제외채권

가. 대상 채권

(1)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대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159)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법 제625조 제3항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면책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면제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참조).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160]

나. 실무상 처리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61] 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고 만약에 이를 누락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누락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62]

제5절 면책의 취소

1. 면책취소의 사유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은 "면책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면책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면책취소의 절차

16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161) 다만 가. 대상 채권 중 ②, ⑥, ⑦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 제3항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

162) 간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과 채무자 회생을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및 변제수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실무상 그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있다.

가. 신청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책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부호는 '개기'이고 개인회생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나. 심리방법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 단서). 이때 이해관계인의 심문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

또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예규 제15조). 채무자의 심문은 법에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면책취소사유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것'인 이상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 신청기간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2항). 만일 이해관계인이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신청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책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에는 따로 시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면책취소신청이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나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시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면책취소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 공고 및 송달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95조). 또한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고와 아울러 송달을 하여야 한다. 면책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7조). 반면 면책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163]

163) 대법원 2016. 4. 18.자 2015마2115 결정 참조.

제6절 면책 후 절차 및 기타 문제 되는 경우

1.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예규 제18조 참조, 실무준칙 제452호 제2조).

2. 면책결정 후 비면책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고소 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책결정이 있어도 그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야만 한다. 예컨대 면책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받은 사실을 항변(또는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항변으로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비면책채권인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각 절차에서 정한 불복방법(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이의,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에게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164]

---

1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 제3항 따라 법 제251조 ·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지의 주체)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 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통지의 방법) ① 제2조의 통지는 [전산양식 D5517]의 통지서 양식에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 등으로 보내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

4. 사기회생죄와 사기죄 구별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는 채권자를 해할 생각으로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는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 채권에 한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기회생죄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것이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사기회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보증인이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보증인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채권 역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5편

양식 및 법령

[양식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집 ·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성 명		사건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36* 개월간 월 *393,334*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19. 5. 25.*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25

일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123-456-789 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진술서 1통
5. 수입인지 1통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있거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 ○ ○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양식 2]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2019. 5. 1.　　목록작성일: 2019. 5. 10.

채권현재액 총합계	71,388,200원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71,388,200원

※ 개시후 이자 등: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 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의 내용		부속서류 유무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1	A 은행 (주)	2012. 9. 1. 마이너스 통장개설	(주소) 서울 ○○구 ○○길 ○○ (전화) 02-000-1234 (팩스) 02-000-1235	
		원금잔액 14,988,200원		□ 부속서류 (1, 2, 3, 4, 5, 6)
		14,988,200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19. 5. 1.)	
		0원	부채증명서 참조	
2	B 상호저축은행	2012. 9. 19. 신용대출금 2,500만 원	(주소) 서울 ○○구 ○○길 ○○ (전화) 02-000-1236 (팩스) 02-000-1237	
		원금잔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2013. 7.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 2, 3, 4, 5, 6)
		20,000,000원	2014. 9. 19. 500만 원 변제	
		4,000,000원	부채잔액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19. 5. 1.)	
3	(주) C 크레디트	2014. 3. 21. 신용대출금 3,000만 원	(주소) 서울 ○○구 ○○길 ○○ (전화) 02-000-1238 (팩스) 02-000-1239	
		원금잔액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 2, 3, 4, 5, 6)
		27,000,000원	2016. 9. 21. 300만 원 변제	
		5,400,000원	부채증명원 참조(산정기준일 2019. 5.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1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6.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 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9.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10. **부속서류 유무**: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 기재합니다.
11.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십시오.

[양식 3]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단위: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② 채권현재액(이자)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합 계					

[기재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양식 4]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단위: 원)

채권 번호	채권자	① 채권자목록상 채권현재액		② 채권자 주장 채권현재액	③ 다툼이 없는 부분	④ 차이나는 부분 (② - ①)	⑤ 다툼의 원인
		⑥ 소송제기 여부 및 진행경과					
3	(주) C 크레디트	원금	27,000,000	30,000,000	27,000,000	3,000,000	2016. 9. 21.자 300만 원 변제 여부
		이자	5,400,000	6,000,000	5,400,000	600,000	
		2017. 10. 5. 채권자의 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대여금) - 2018. 1. 30. 원고(채권자)승소 판결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로 항소심 계속 중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④ 차이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 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 기재합니다.
3. **다툼의 원인(⑤)**: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소송제기 여부 및 진행경과(⑥)**: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 결과, 상소 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 기재합니다.

[양식 5]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전부명령의 내역

(단위: 원)

채권 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전부명령의 내역**: ①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 당사자,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식 6] 부속서류 4. 기타

기 타

☞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의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합니다.

[양식 7]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800,000	무	금융기관명	(1) ○○은행 ○○지점	(2) ○○은행 ○○○지점	
			계좌번호	123-4567-89-01	234-567-89-0	
			잔고	200,000원	450,000원	
보험	850,000	무	보험회사명	(1) ○○생명		
			증권번호	23-4567-890-0		
			해약반환금	850,000원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1,100,000	무	2000년 아반떼 1500cc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8,500,000	무	임차물건	서울 ○○구 ○○길 ○○-1, 2층		
			보증금 및 월세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50,000원		
			차이 나는 사유	10개월 월세 연체로 보증금에서 공제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7,000,000	무	소재지, 면적	경기 ○○시 ○○길 ○○-○○ 잡종지 ○○㎡		
			부동산의 종류	토지(○), 건물( ), 집합건물( )		
			권리의 종류	소유권 중 1/2 지분		
			환가예상액	7,000,000원		
			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품목, 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대여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매출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예상 퇴직금			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			
기타( )						
합계	18,250,000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						
청산가치	8,100,000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 보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부분 제외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현금

○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 · 적금 · 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 ·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 · 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양식 8]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Ⅰ.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ABC 기획
	업종		직위	사원
	종사경력	년 개월	근무기간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급여	월간	2316020	27,792,240	
상여금	구정과 추석	각 2,000,000	4,000,000	
연 수입			31,792,240	월 평균 수입 (2,649,353)

Ⅱ.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해당란에 ☑ 표시)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족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족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Ⅲ.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 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배우자	성○○	42	동거(혼인시부터)	회사원	700,000원	30,000,000원	무
자	김○○	12	동거(출생시부터)	학생	없음	없음	유
자	김○○	10	동거(출생시부터)	학생	없음	없음	유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계		추가비율: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에 관한 보충기재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 · 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 4 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 · 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 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양식 9]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

진 술 서

Ⅰ. 경력

1.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2. 과거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간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3. 과거 결혼, 이혼 경력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Ⅱ. 현재 주거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년 월 일)

거주관계(해당란에 표시)	상세한 내역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사택 또는 기숙사 ㉢ 임차(전 · 월세) 주택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월 원), 연체액 (원) 임차인 성명 ( )
㉣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친족 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기타(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 · 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Ⅲ. 부채 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 · 지급명령 · 전부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있음, 없음)

내 역	채권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 위 내역란에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소장 · 지급명령 · 전부명령 ·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 생활비 부족 ( ) 병원비 과다지출
( ) 교육비 과다지출 ( )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 ) 점포 운영의 실패 ( ) 타인 채무의 보증
( ) 주식투자 실패 ( ) 사기 피해
( ) 기타 ( )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추가 기재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Ⅳ.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절차	법원 또는 기관	신청시기	현재까지 진행상황
□ 파산 · 면책절차 □ 화의 · 회생 · 개인회생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 )회 ( )원 변제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 표시 후 기재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 ·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10]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 ○
대 리 인 변호사 ○ ○ ○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
대리인 변호사○○○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20 개회 ○○○○ 채무자 : _____

변 제 계 획 (안)

20 . . . 작성

1. 변제기간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36]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ABC 기획]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2,649,353]원

☐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 총 [3]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월 [3,760,043]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월 [2,256,019]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① - ②)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 ④)
2,649,353원	2,256,019원	393,334원	36회	14,160,024원

나. 재산: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변제계획 인가 후 [ ]원을 지급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채권의 내용

채권 번호	채권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② 채권현재액(이자)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 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393,334*]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14,160,024*]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 기간 및 횟수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36*]개월간 합계 [*36*]회

㈏ 변제월 및 변제일

① [*2019*]년 [7]월 [*25*]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25*]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25*]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변제계획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25*]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25*]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3)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6, 7.*]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2015개회 ○○○○ 채무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단위: 원)

(A) 월평균 가용소득	393,334

(B)변제횟수	36회

(C) 총 가용소득	14,160,024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원)

채권 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1	A은행(주)	14,988,200	0	90,715	0	3,265,740	0
2	B상호 저축은행	20,000,000	0	121,048	0	4,357,728	0
3	(주) C 크레디트	27,000,000	3,000,000	163,415	18,156	5,882,940	653,616
합계		61,988,200	3,000,000	375,178	18,156	13,506,408	653,616
총계		(G) 64,988,200		(H) 393,334		(I) 14,160,024	

3. 변제율: 원금의 [22] %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원)

(J) 청산 가치	8,250,000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14,161,024
(L) 현재가치	13,283,636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 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 · 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 · 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A)월평균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D)해당 개인회생채권 중 확정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을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 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 (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 (J)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 53.6433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수치 53.6433은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식 11] 면제재산결정신청서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사　　건　2019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　○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나.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기타 [　　]　1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나. 소명자료: □ [　　]　1통

20　.　.　.

신청인(채무자) ○ ○ ○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목 록

면제재산 금액	금 원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① 임대차계약일자 ( ) ② 임대차기간 (부터 까지) ③ 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 임차보증금 ( ) ⑤ 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 임대인의 성명 ( ) ⑦ 주민등록일자 ( ) ⑧ 확정일자 ( )

[양식 12]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
접수일: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　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개인채권자	
		특이사항	
재산		부동산 소유	
		차량 소유	
		특이사항	
	담보목적물의 평가		
소득		신청직전 소득감소	
		성인부양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기타사항		보정권고 미이행	
		미송달채권자	
		채권자추가등	
		채권자이의등	

20　.　.　.

제　　회생위원 ○ ○ ○ (인)

서울회생법원 제 ○ 회생단독판사 귀중

[양식 12-1] 채무자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보고

채무자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보고

1. 기본정보

채무자		
생년월일	○○****-○******	
총채무액		원
총변제예정액		원
변제율		%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2. 재산

청산가치		원
부동산 유무	있음	없음
임대보증금 유무	있음	없음
주택담보대출 재조정신청	있음	없음
기타(특이사항)		

3. 소득 및 지출 등

구분			비고(특이사항)
소득 구분	급여	영업	
월 소득		원	
배우자 소득	있음	없음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		명	
생계비		원	
추가생계비		원	

[양식 13]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회생위원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2019 개회○○○○

신청인(채무자): ○○○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20 . . .(○요일) 14:00

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장소: 서울회생법원 ○○호 법정

3. 채무자의 소득 및 가용소득 적립 여부

가. 채무자의 소득은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 수입과 같다.

나. 채무자는 ○○원을 임치하였다. 총변제예정액은 ○○원이다.

4. 채무자의 재산 및 청산가치

가. 채무자의 재산: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재산목록' 기재와 같다.

나. 청산가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은 ○○원이다.

5.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 여부

가. 이의채권자: ○○○, △△△

나. 이의내용

(1) ○○○: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예정액을 산정한 것은 공정하지 아니하고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원금에 개시결정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더한 원리금을 기준으로 변제예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

6. 변제계획인가요건 충족 여부

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관련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다.

나. 법 제614조 제2항 관련

(1) 제1호 관련: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 ○○○에 대한 36개월간의 총변제액이 ○○원으로서

그 현재평가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이 배당받을 총액 ○○원보다 적지 아니하다.

(2) 제2호 관련: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합계는 ○○원이고 변제총액은 ○○원이어서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된다.

(3) 제3호 관련: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최저변제액보다 적지 아니하다.

7. 결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0 . . .

제 회생위원 ○○○ (인)

서울회생법원 제 ○ 회생단독판사 귀중

[양식 14] 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제　회생위원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사　건: 2019개회○○○○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20 . . . 인가한 변제계획의 변제예정액표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별지 수정된 변제예정액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다 음

1. 수정원인: 제 ○ 번 채권자 ○○○가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확정(20 . . . 확정)
2. 수정내용: 제 ○ 번 채권자의 유보금액 ○○원 중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금액 ○○원과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원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제7항 나.의 (2)에 따라 변제예정액표를 수정

20 . . .

제 ○ 회생위원 ○○○ (인)

첨부서류

1. 인가받은 변제계획 사본　1통
2. 수정된 변제예정액표　1통
3. 채권조사확정 결정문 사본 1통

서울회생법원　제 ○ 회생단독판사 귀중

[양식 15] 회생위원의 채무자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

제　회생위원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

사　건: 2019개회○○○○
채무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않고 있고,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보고합니다.

다　음

1. 지체내역
   1) 매월변제예정액:　　원
   2) 매월변제예정일:　　일
   3) 지체한 납입예정일:　1회 20　.　.　.
   　　2회 20　.　.　.
   　　3회 20　.　.　.
2. 지체사유
   1) 실직 등 소득의 급격한 감소(　　)
   2) 부양가족의 증가나 의료비 등 생계비 증가(　　)
   3) 채무자의 절차폐지 희망(　　)
   4) 연락두절(　　)
   5) 기타(　　)
3.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 가능성 유무
   가능성 있음(　), 가능성 없음(　　)

20　.　.　.

제 ○ 회생위원　○○○ (인)

서울회생법원　제 ○ 회생단독판사 귀중

[양식 16]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

제　회생위원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

사　건: 2019개회○○○○
채무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20 . . . 인가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보고합니다.

다 음

1. 변제완료일: 20 . . .
2. 면책불허가 사유: (유, 무)
3. 면책불허가 사유의 구체적 내용:

20 . . .

제 ○ 회생위원 ○○○ (인)

첨부서류

1. 인가받은 변제계획 사본 1통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내역 사본 1통

서울회생법원　제 ○ 회생단독판사 귀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 8. 27. 개정, 2020. 8. 28. 시행(법률 제16568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6. 12. 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⑥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⑨ 삭제 〈2016. 12. 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 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2016. 5. 29.〉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3.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4.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제5조(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

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 · 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 · 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원
2. 관리인 · 보전관리인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 · 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 · 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⑨ 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 제3항 ·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송달)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 · 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 · 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 · 주주명부 · 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 · 월 · 일 · 시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 · 파산사건 · 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 ·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7.〉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5. 17., 2016. 12. 2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 · 경영학 · 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설치 · 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 ·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관리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 보전관리인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 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 · 보전관리인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 ·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 · 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 · 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 · 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 · 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 · 제62조제2항 · 제132조제3항 · 제203조제4항 · 제259조 · 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① 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 결정서 · 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①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의 제시

②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 · 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 · 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 제74조제1항 ·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관리인 · 보전관리인 ·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 채권자 · 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 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인의 등기)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 · 복사,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마.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채무자
   가. 제1호 각목의 재판
   나.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다.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④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 복사, 정본 ·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 · 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 ·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 · 제4항 및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 · 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 관리인대리 · 보전관리인 ·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 회생위원 · 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 · 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 · 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 · 주민세 균등분 · 개인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10. 3. 31., 2016. 12. 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4조(부인권) ① 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5.20.〉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 ·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

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본조신설 2014.5.20.]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 ·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

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 ·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 · 제611조 · 제613조 · 제614조 · 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 ·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18. 12. 31. 개정, 2019. 1. 1. 시행(대법원규칙 제2820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를 "도산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 ·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 · 처분의 속행 · 취소 신청
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 법 제593조의 중지 ·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 · 금지명령의 취소 · 변경 신청
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 · 처분의 속행 · 취소 신청

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 · 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제6조(공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처분과 함께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보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법 제3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2.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법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또는 법 제351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사등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① 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 및 「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재산조회

제4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국제도산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 법 제29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조회할 공공기관 · 금융기관 또는 단체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다만, 회생위원을 제외한다)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3의 "조회비용"란과 같다.

④ 법원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 · 파산관재인 · 국제도산관리인에게 별표 3의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 재산조회는 별표 3의 "기관 · 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3의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 · 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 연합회 ·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9. 6.〉

제47조(조회의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4.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5.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6.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 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 ·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④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 · 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 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 · 복사 등)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 복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 · 출력절차에 관하여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58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채무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법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3. 법 제579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4. 법 제579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5. 법 제579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6.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7.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

② 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명의의 변경) ① 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부본의 제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7조(비용의 예납) ① 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28.〉

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삭제 〈2011.3.28.〉
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31.]

제89조(준용규정) 제65조 내지 제67조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① 법 제6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제1항의 이의 진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말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조(면책의 신청) ① 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 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법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2018. 6. 7. 개정, 2018. 6. 13. 시행(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전산양식 D5109]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 변제계획안 : [전산양식 D5110, 또는 전산양식 D5111]
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 [전산양식 D5112]
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7],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D5112과 동일]
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D5115]
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D5116, D5117]
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D5118, D5119]
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D5123]

17.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 · 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 · 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2.02.24.제1382호)

제4조(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전처분 또는 중지 · 금지명령) ① 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6.12.26.제1103호)

제5조(변제계획안의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2012.02.24.제1382호)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삭제(2017.05.12 제1653호)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

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삭제 (2018. 06.07 제1693호)
4. 삭제 (2018. 06.07 제1693호)
5. 삭제 (2018. 06.07 제1693호)

③ 채무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2(채권자집회의 진행)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2006.12.26.제1103호)

④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때 또는 사임하거나 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관리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0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이하 "비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전임하여 담당(이하 "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기간 중 해촉되어 새로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위원의 효율적인 개인회생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전임회생위원에게 그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전항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⑩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에게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3(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 및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해촉 등(이하 "선발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되,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2016.12.16.제1629호)

④ 삭제(2016.12.16.제1629호)

⑤ 삭제(2016.12.16.제1629호)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4 삭제(2016.12.16 제1629호)

제9조의5 삭제(2016.12.16 제1629호)

제9조의6(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생위원의 보수)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12.02.24.제1382호)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9조의6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1]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①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7조제3항과 법 제6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치는 제1항의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규칙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8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계좌번호의 신고방법)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D5123]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 또는 이메일에 첨부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

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등) 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전산양식 D5505]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4(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

제11조의5(개인회생공탁 등) ①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한다. 다음부터 "미신고 채권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규칙 제84조제2항(2006. 3. 31. 이전에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8조제2항) 및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17조의2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채무자용 공탁예정통지서[전산양식D5508-1]를 발송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 [전산양식 D5508]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1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탁관의 공탁 수리 후 회생위원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한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과 공탁금 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⑥ 공탁관이 공탁서를 교부하면 회생위원은 공탁서 사본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공탁서 원본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공탁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6(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

제12조(임치금의 반환 등) ① 채무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제3항, 법 제617조 및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임치금의 현금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청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출급의 구분, 출급허가일 등 현금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 [전산양식 D5511]를 교부하여 이를 관리은행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은행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한 때에는 즉시 그 지급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617조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금원에 과오

납이 있을 경우 그 반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14조 삭제(2006.03.29. 제1065호)

제15조(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4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열람 · 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 · 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 · 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 · 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제18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4500]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5515]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별표 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항목	보수기준액	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15만원	30만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제1조(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
2. 유관기관 경유사건의 전담재판부 배당에 관한 처리

제2조(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1. 법 제579조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3.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험설계사
나.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다. 법인의 대표자
라. 지입차주
마.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③ 법원은 법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2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

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이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⑤ 외부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가 소속된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02호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조(목적) 준칙 제402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인회생 사건 심리를 위하여 법 제589조 제2항, 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회생 사건 신청 시 첨부할 서류의 목록)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회생위원용 1부, 채권자표 작성용 1부)
2. 재산목록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라.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
   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 급여소득자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나.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

7.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가. 주민등록등본

나.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다.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제3조(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제2조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산목록 관련 서류

가.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

라. 채무자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 등기부등본

아.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권리금, 사용설비 및 재고품 등의 가액, 그 처분대금의 잔존 여부 및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3. 진술서 관련 서류

가. 최근에 직장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현재의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

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나. 종전 사건의 종결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사유서

5.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관련

가. 본인의 개명 등을 소명할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1조(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지명령 등의 발령)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대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 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사항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1조(목적) 준칙 제404호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의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와 법원의 채무자 등에 대한 심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 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회생위원별로 미리 협의된 면담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우편접수사건이나 전항에 의한 면담기일 고지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후 면담기일을 고지하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은 기록 검토 후 면담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면담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회생위원의 보정권고) ① 회생위원은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이 전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할 때 면담기일을 함께 지정하거나 이미 면담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한을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한다.

④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오기, 누락 등을 이유로 한 간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유선, 팩시밀리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사항이 기록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자 등에 대한 심문절차)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2. 채무자가 규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심문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에 회생위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친 후 법 제595조 각 호의 사유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위 결정이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유선으로 불출석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면담기일을 약속하여 기일을 진행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개인회생신청 기각의견 취지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예규'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제3조(추가 생계비 인정의 기본원칙) 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생계비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79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채무자의 소득액을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 담당 판사
2. 개인회생과장
3. 회생위원
4. 법원외부인으로서 개인도산절차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정기회의) 위원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 방법)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결 내용의 공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제1조(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이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는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

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파산선고 후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판사는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

제○○○회생위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사　건 : 20○○개회○○○○호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제○○○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및 개인파산 신청의 권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다　　음 -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	□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미치지 못함 □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외의 사유(　　)
기타사항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별지 2 보정명령 양식]

서울회생법원
보 정 명 령

사　　건　20○○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
(채 무 자)　서울 ○○구 ○○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은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 위 제1항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은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보정명령에 첨부된 [첨부1]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산 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제2항에서와 같이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기 어렵다면 대신에 [첨부2]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양식에 따라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첨부1]에 따라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

1)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 "채무자의 수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문구를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로 변경하여야 할 수 있음

5. 만일 개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될 일정한 금액(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3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예납명령이 있기 전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30만 원을 미리 예납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납입하고 납입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보정명령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전환용)

인지 2,000원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사건번호 : 20 개회	**(담당 판사의 성명 :)**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거 소 : (우편번호 :)
송 달 장 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1부
2. 채권자목록 1부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 청 인 ㊞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서울회생법원 귀중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서울회생법원 귀중

신 청 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u>사실대로</u> 진술합니다.
<u>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u>

1.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2)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2.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안에 ✔ 표시)

(1)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년 월 일

4.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5.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있음, 없음) (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7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

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7.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있음, 없음)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있음, 없음)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 ·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있음, 없음)

년 월 일 친족_____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권자 목록

1. 채권내역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 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
※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 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 보증(피보증인 기재), ④ 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양식※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
1	00카드 (주)	01.1.7-05.1.31	②	6,000,000	생활비	김 이 순	5,234,567	789,456
1-1	김 이 순	02.5.8	③	6,000,000			미정	미정
2	00은행 (주)	02.5.8	①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9	최 00	03.6.9	①	5,000,000	병원치료비		5,000,000	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 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 보증(피보증인 기재), ④ 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
	24,630,812	20,234,567	4,396,245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 ·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잘못된 기재례 :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예: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 · 잔존원금 /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차용 또는 구입일자』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 를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 · 잔존원금 / 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 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잔존 이자 · 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 주소

※ 기재요령 ※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우편번호)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 채권자목록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V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아래의 자료 중 개인회생 신청 시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서 [첨부2]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양식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번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제출 여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1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채무자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제출하였음		**구청 등**
2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제출하였음		
3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명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제출하였음		**세무서[2)]**
4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	□ 전부 제출 하였음 □ 일부만 제출 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은행거래 없음) □ 협조거부 ( ) □ 기타 ( )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증권사,**

순번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제출 여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우체국, 마을 금고 등**
5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 전부 제출하였음 □ 일부만 제출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협조거부 ( ) □기타 ( )	**채무자 보유 자료 (경매 법원)**
6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 ·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 제출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법원**
7	수입에 관한 자료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급여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기타의 경우에는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제출하였음		**채무자 보유 자료, 세무서, 국민연금 공단, 구청 등**

2)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등이 가능한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이고,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첨부2]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1. 기록의 보관처 : 서울회생법원

2. 송부촉탁할 기록 : 20 개회 호 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회생법원 귀중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제1조(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제3조(회생위원의 보고의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　20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이○○
대리인 :　변호사 김○○
접수일 :　20　.　○.　○.

재판장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개인채권자	
		특이사항	
재산		부동산 소유	
		차량 소유	
		특이사항	
	담보목적물의 평가		
소득		신청직전 소득감소	
		성인부양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기타사항		보정권고 미이행	
		미송달채권자	
		채권자추가등	
		채권자이의등	

20　.　.　.

제　회생위원 ○○○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제1조(목적) 준칙 제412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 제597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송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송달불능 시 처리방안 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서류의 송달)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직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법 제596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본 및 개시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계좌신고서를 송달한다.

②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송달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입력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일자별로 특정하여 입력한다.

제3조(송달의 방법) ① 제2조 각 항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3조의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을 이미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을 송달받은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 개인회생채권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 시설대여회사 · 보험회사 · 신탁회사 · 증권회사 · 신용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사건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대표자의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 개인회생절차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와 결정일을 특정하여 입력한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제1조(목적) 준칙 제421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 부여의 기준을 각 유형별로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의 수정) 채무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누락된 개인회생채권 추가) ①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채권을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③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 제2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와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제4조(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기간의 연장이나 집회기일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권금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3. 증액된 금액이 총 채권액의 5% 미만의 소액으로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

제5조(채권양도, 대위변제)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고,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및 변경 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제1조(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이하 준칙 제422호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이라 한다) 전까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등의 변동사항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이의내용
3. 채무자의 가용소득 적립여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제3조(채권자집회 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내용 및 채무자의 답변 내용
2. 채무자에 대한 추가조사 사항 및 조사결과
3.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및 수정된 변제계획의 요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제1조(목적) 준칙 제423호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일 진행 방식, 조서 작성 등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자의 출석) ①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첫 번째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3조(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① 판사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은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① 판사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에게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하도록 한 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속행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 종료 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기일의 변경, 연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한 경우
2. 월 변제액의 감소 · 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새로운 이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있고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공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액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1.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개인회생채권액과 비교하여 소액이어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③ 그 밖의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다.

제6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에 불복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위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제7조(채무자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 설명) ① 판사 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음을 설명한다.

1.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신고할 것
2.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 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② 판사 또는 회생위원은 제1항의 설명을 마친 후 채무자로부터 [별지 1 확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개인회생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조서의 작성) ① 채권자집회기일의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채권자가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자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서 작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사 또는 회생위원의 설명에 따라 사후에 조서를 작성한다.

[별지 1 확약서]

확 약 서

사 건 : 201○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 ○ ○

1. 채무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신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 가능성 유무, 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 ○. ○.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조(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 보정의 필요성 유무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판사에게 보고한다.

②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의 보정)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들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보고한다.

1.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사건
2.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3. 채권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4.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② 회생위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판사에게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432호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1조(목적) 준칙 제432호는 개인회생 사건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미납)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을 의미한다)을 미납한 사건을 취합하여 판사에게 보고한다.

② 판사는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채무자의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①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1조(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통일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준칙 제441호에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말한다.

제3조(회생위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①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금 미납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제2항의 확인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별지 1 통지서],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자로부터 지체사유,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위 서류를 송달할 송달료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회생위원의 보고)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로부터 제3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에 따른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에 채무자의 지체내역 및 지체사유에 관한 사실,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1. 회생위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위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서 등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기록이 항고심에 송부되기 전까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고 원심법원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체사유가 소명되었고, 그 사유가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1 통지서]

통 지 서

사 건 : 201○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 ○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별첨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2. 채무자 진술서

201○. ○. ○.

서울회생법원 제○회생위원 ○ ○ ○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채무자 진술서

사 건 : 201○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 ○ ○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 지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

2. 미납금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현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예시]
①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또는 2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구체적인 금액 기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기타

201○. ○. ○.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1.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나.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다.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라.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마.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바.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2.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나.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다.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 단,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제1조(목적) 준칙 제442호는 변제계획 변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의 의견서 제출, 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회생위원의 보고사항 등 법 제619조에서 정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①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변제계획 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제2항의 의견서에 사건번호, 인가일, 현재 수행회차, 변경사유로 주장하는 내용 및 회생위원의 조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 및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 변경안 부본을 송달한다.

제4조(회생위원의 조사 및 보고서 제출)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서 예시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기타 변경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감소 :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의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일시적인 수입의 감소 :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
3. 생계비의 증가 :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출산, 실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③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1주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사유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목적) 준칙 제443호는 개인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의 실행, 채권의 양도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동사유별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반영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신고서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배당표 및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확정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절차 없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신고서에 확정된 결정서 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확정신고가 있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제4조(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상계에 의하거나 주채무자나 채무자 본인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법원은 소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완제일 이후의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원금의 100%인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변제개시일부터 36개월 이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36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2. 36개월 이후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

제5조(채권양도 및 대위변제)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원에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의 양도승낙서 및 양수인의 계좌신고서를 첨부한 채권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양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전산시스템의 변제예정액표상 채권자명을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인)"의 형태로 수정하고, 채권양도신고서의 사본을 회생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과 같이 변제예정액표가 수정된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채권양수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제1조(목적) 준칙 제44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일시변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②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자의 의견청취) ①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일시변제 사유에 대한 조사)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제금 납입 및 회생위원의 이체)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한다.

②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제6조(면책의 신청)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451호

면책허부의 결정

제1조(목적) 준칙 제451호는 규칙 제94조에 따른 면책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의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3.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직권 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별지 1 의견서]

제　　회생위원 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

사　건 : 20○○개회　　호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특별면책 신청 여부		○ 또는 ×
요건충족여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예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또는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	○ 또는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한 것인지 여부	○ 또는 ×
이해관계인	송달 여부	○ 또는 ×
	의견서 제출 여부	○ 또는 ×
	의견 중 특이사항	
기타사항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20○○.　.　.

제　　회생위원　　(인)

서울회생법원 제　 회생 단독판사 귀중

제452호

면책결정 후의 절차

제1조(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제4조(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을 진행한다.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1조(목적) 준칙 제491호는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 회생위원의 적정한 보수 기준,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교육 등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①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② 법원은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결정을 한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있은 경우
4. 이송결정이 있은 경우

③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범위 내로 정한다.

④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검토 · 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수검토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및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는 개인회생 담당 판사, 개인회생과장, 관리위원, 법원사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회생위원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보수의 결정) 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지체없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② 법원은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이후 지체없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제4조(직무교육)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의 신규위촉 후 지체없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간담회)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개인회생절차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외부 회생위원 사이,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를 각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이때,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와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통보) ① 법원은 매년 6월과 12월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하기 전에 외부 회생위원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회생 · 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제492호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

제1조(목적) 준칙 제492호는 채무자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신뢰하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내에 설치할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체크리스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이하 준칙 제492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법관 정기인사일부터 7일 이내에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장이 개인회생 사건의 항고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 담당 판사
2. 개인회생과장
3.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
4. 외부 회생위원

제3조(정기회의) 위원장은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 5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밝혀 위원회 회의 소집을 청구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방법)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 후 7일 이내에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다.

제8조(체크리스트 양식) ①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양식은 [별표 1 체크리스트]와 같다.

② 위원장은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에게 직접 또는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체크리스트 양식을 송부한다.

③ 제2항은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의 변경이나, 체크리스트 양식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크리스트 작성 주체)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 담당 판사
2.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

제10조(체크리스트 작성) ①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되, 체크리스트 양식 해당란에 체크한 후 작성경위에 관한 사유를 우측에 기재한다.

② 체크리스트 작성시에는 양식 뒤에 작성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한다. 이때 체크리스트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서면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11조(체크리스트 수집) ① 위원회의 간사는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②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을 경우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짝수달 마지막 주에 위원장에게 체크리스트 취합현황을 보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취합현황 보고 외에 중대한 법위반 사실에 관한 체크리스트에 관하여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분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체크리스트를 취합하여 이를 분석하고 위원회의 회의 전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분석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별 제출현황표(누적 건수)
2. 중복 적발된 대리인의 현황표
3. 대리인 직역별 분포표

4. 체크리스트 항목별 유형 분포표

5. 각 체크리스트별 기재내용 요약표(작성일, 사건번호, 대리인, 유형과 간략한 내용)

제13조(자료의 공유) ① 위원회는 회의에서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개인회생 사건 처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료의 공유가 필요한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사건 처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제14조(대응조치) ① 관리위원회는 체크리스트가 작성된 사안에 관하여 법위반 사실의 경중에 따라 회의를 거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 해당 단체에 징계의뢰
3. 서면경고

② 관리위원회는 대응조치에 관한 의결과 함께 해당 사건의 자료 제공의 범위도 결정한다.

③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 중 1인을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할 주무 관리위원으로 지명한다.

[별표 1 체크리스트]

사건번호	2017개회	신청대리인	
작성자		작성일	2017. . .

1. 허위[3]자료 제출

가.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 금지명령 받은 후 최근 채무 추가
□ 허위 개인채권자 기재
□ 채권자 고의 누락

나. 허위 소득자료 제출
□ 소득 축소신고

다. 허위 지출자료 제출

라. 허위 재산목록 제출
1) 현금, 예금
□ 신청 직전 이체
2) 보험
3) 자동차
□ 허위의 시가 서류 제출
4) 임대차보증금
□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5) 부동산
□ 허위의 시가 서류 제출
□ 명의신탁
□ 신청 직전 처분행위
6) 사업용 설비
□ 허위의 시가 서류 제출
7) 채권

---

3)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및 허위라는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고의 누락

8) 퇴직금

□ 고의 누락

9) 기타

마. 허위 진술서 제출

2. 소송위임 관련 항목

□ 무자격자가 형식상의 대리인만 내세우고 개인회생사무를 취급한 경우

□ 신청대리인 측 상담자를 통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회사와 대출계약을 한 경우

□ 수임료 미지불을 이유로 채무자 동의 없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브로커 개입 정황이 있는 경우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좌측에 체크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조(목적) 준칙 제493호는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내에 설치할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원에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이하 준칙 제493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매년 6월과 12월의 정기 평가
2.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등에 관한 심사
3. 그 밖에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의 사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 이상과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과장을 법원장이 지명한다.

1. 법원 소속 부장판사
2. 법원 소속 판사
3.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법원 소속 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조(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정기평정) ①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담당 판사는 외부 회생위원으로부터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제출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담당 판사는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의 총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상',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중', 70점 미만인 경우 '하'로 평가자 종합평가를 기재한다.

③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담당 판사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적절성,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판사가 작성한 평가표와 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을 실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정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미흡한 외부 회생위원에 대하여 평정결과를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외부 회생위원은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위원회의 평정결과와 외부 회생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생ㆍ파산위원회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임시평정) ① 위원회는 외부 회생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결과를 즉시 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청문절차) 위원회는 제3조의 정기평정, 제4조의 임시평정 과정에서 판단에 필요한 경우 외부 회생위원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

201 . . .　　평가자 : 판사

<table>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4"></td></tr>
<tr><td>평가항목(배점)</td><td>점수</td><td colspan="3">비고(특이사항)</td></tr>
<tr><td>절차의 신속성(25점)</td><td></td><td colspan="3"></td></tr>
<tr><td>재산 및 소득 조사의
충실도(25점)</td><td></td><td colspan="3"></td></tr>
<tr><td>사건관리 및 보고의
충실도(25점)</td><td></td><td colspan="3"></td></tr>
<tr><td>인가 후 변제수행 관리,
감독업무의 충실도(25점)</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총점</td><td rowspan="2">점</td><td colspan="3">평가자 평정</td></tr>
<tr><td>상</td><td>중</td><td>하</td></tr>
<tr><td>관리위원회의 의견</td><td></td><td colspan="3"></td></tr>
<tr><td>기타사항</td><td></td><td colspan="3"></td></tr>
</table>

제603호

면책 전 신용관리 등 교육 및 상담

제1조(목적) 준칙 제603호는 채무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관리,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교육 또는 상담(이하 준칙 제603호에서 '신용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관리 등 교육의 내용) 법원이 실시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은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법적 도산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면책결정 후에는 경제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는 이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용관리 등 교육의 시기)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 등 교육은 개인회생 ·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법원은 신용관리 등 교육, 그 밖에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색 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사항색인

(ㄱ)

가산금 ····· 45
가상화폐 ····· 108
(가)압류적립금 ····· 155, 24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149
간이과세자 ····· 133
간이양식 ····· 25
간이회생절차 ····· 4
감정평가서 ····· 100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201
개시기각사유 ····· 198
개인워크아웃 ····· 8
개인택시 ····· 110
개인파산 ····· 5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 39
개인회생재단 ····· 75
개인회생재단채권 ····· 40
~의 종류 ····· 40
~의 성질 ····· 41
~의 처리 ····· 4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195
개시결정의 효과 ····· 195
개인회생절차신청의 취하 ····· 202
~의 신청자격 ····· 49
~ 폐지 ····· 234, 258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 214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 39
~ 종류 ····· 42
~ 확정 ····· 207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39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213, 248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준비 ····· 218
~ 진행 ····· 22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207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 ····· 46
계좌 미신고 개인회생채권 ····· 246
고의부인 ····· 84
공동신청 ····· 25
공무원연금 대부금 ····· 166
공인중개사 ····· 100
공정 · 형평의 원칙 ····· 151
공탁된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 244
과점주주 ····· 46
과태료 ····· 294
관할법원 ····· 26
관할위반 ····· 28
관할이 문제 되는 사례 ····· 27
구상권 ····· 68
구상보증 ····· 169
국민연금 ····· 110
권리변경 ····· 228
급여소득자 ····· 114
급여의 산정 ····· 118
기준 중위소득 ····· 135
기초생활수급자 ····· 114, 199

(ㄴ)

노점상 ····· 133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의 추가 ····· 213

(ㄷ)

다른 채무자 ····· 66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 64
단말기채권 ····· 54
담보물의 평가 ····· 61
대리운전기사 ····· 133
대위변제 ····· 250

(ㄹ)

라이프니쯔 수치 ····· 148

(ㅁ)

매출금 채권 ····· 106
면담 ····· 183

면세사업자 ····· 134
면제재산 ····· 78
면책제외채권 ····· 289
면책불허가 사유 ····· 290
면책의 요건 ····· 281
~ 의미 ····· 290
~ 효력발생 시기 ····· 291
~ 효력범위 ····· 291
면책취소 사유 ····· 292
면책취소 절차 ····· 292
명의신탁 ····· 109
무상거주 ····· 96
물상보증 ····· 68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 152, 247, 252

(ㅂ)

배우자 명의의 재산 ····· 110
배우자의 사업장 ····· 117
변제개시일 ····· 144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 211
변제계획완료에 관한 보고 ····· 281
변제계획의 변경 ····· 270
~ 수정명령 ····· 152
변제계획인가결정의 경정 ····· 249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 226
~ 효력 ····· 227
변제금의 이체 ····· 244
변제금의 출급 ····· 245
변제기간 ····· 145
별제권부 채권 ····· 59
보전처분 ····· 31
보증금 공탁명령 ····· 231
보증채무 ····· 67
보통재판적 ····· 26
보험 ····· 92
보험상계 요청서 ····· 93
보험설계사 ····· 129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무 ····· 44
보훈대부금 ····· 47
부동산의 가격 평가 ····· 100
부속서류 1 ····· 59
부속서류 2 ····· 64
부속서류 3 ····· 65
부속서류 4 ····· 66
부양가족 ····· 139
부인권 행사의 주체 ····· 86
~ 효과 ····· 86
부인권의 성립요건 ····· 83
부칙면책 ····· 287
비면책채권 ····· 45

(ㅅ)

사기회생죄 ····· 295
상계권 ····· 69
상계권 행사의 제한 ····· 71
생계비의 산정 ····· 135
선물투자 ····· 108
선행가압류 ····· 170
수입 ····· 113
수정보고 ····· 252
수행 가능성의 원칙 ····· 152
시세확인자료 ····· 100

(ㅇ)

아파트 ····· 100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75
약관대출 ····· 44
양도담보 ····· 95, 169
양육비 ····· 138, 177
업무수행결과보고서 ····· 190
연금수령자 ····· 115
연대보증채무 ····· 167
영업권(권리금) ····· 107
영업비용 ····· 128
영업소득자 ····· 104, 120
영업용 택시기사 ····· 117
예금 ····· 91
예상 퇴직금 ····· 108
예정부족액 ····· 6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42
위기부인 ····· 85
음식점 영업자 ····· 132
의사 · 한의사 · 약사 ····· 132
이의기간 ····· 207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 ····· 132
일반과세자 ····· 134
일시변제의 법적 성질 ····· 278
~ 업무처리 ····· 279
임차보증금 ····· 94
~의 재산목록 반영에 관한 사례 ····· 9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153

(ㅈ)

자동차 ····· 94
재고품 ····· 105
재도의 고안 ····· 231
재무제표 ····· 124
재보정권고 ····· 190
재산처분 ····· 160
적금 ····· 91
전부명령 ····· 65
절차 전환 ····· 191
정보수신신청서 ····· 29
제조업자 · 화물운송영업자 ····· 130
조세채권 ····· 43
주거비 ····· 137
주식 ····· 91
주택 ····· 100
주택담보대출채권 ····· 171
중지 · 금지명령 ····· 32
즉시항고 ····· 201, 229, 237
즉시항고기간 ····· 202, 230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232
즉시항고의 효력 ····· 202
즉시항고제기의 방식 ····· 230
지급불능 ····· 50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 ····· 90
진술서 ····· 21, 142
질권 ····· 95

(ㅊ)

채권액의 한도 ····· 49
채권양도 · 양수 ····· 249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147
체인 사업자 ····· 130
최근 채무 ····· 52
최근 취업자 ····· 116
최저변제액 ····· 150
최초 변제금의 이체 ····· 244
추가 생계비 ····· 13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48

(ㅌ)

토지 ····· 100
퇴직금 ····· 108
특별면책 ····· 284

(ㅍ)

편파변제 ····· 200
포괄적 금지명령 ····· 35
피부양자 ····· 139

(ㅎ)

학원 운영자 ····· 133
현금 ····· 91
현재가치 계산법 ····· 147
화물차 ····· 104
환급계좌 ····· 29
환취권 ····· 88
회생위원의 선임 ····· 16
~ 업무 ····· 17
~ 역할 ····· 18
회생절차 ····· 4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43

조문색인

제3조 ····· 26
제9조 ····· 230
제13조 ····· 201, 210, 227, 229, 230
제32조 ····· 266
제33조 ····· 202, 230, 231
제247조 ····· 231
제383조 ····· 79
제411조 ····· 59
제412조 ····· 59
제413조 ····· 59
제415조 ····· 60
제426조 ····· 40
제427조 ····· 44
제428조 ····· 67
제429조 ····· 67
제430조 ····· 68
제431조 ····· 251
제439조 ····· 39
제446조 ····· 39, 40
제475조 ····· 41
제476조 ····· 41
제579조 ····· 112, 120, 135
제580조 ····· 75, 79
제581조 ····· 43, 251
제582조 ····· 228, 236
제583조 ····· 40
제585조 ····· 39
제586조 ····· 59
제588조 ····· 112
제589조 ····· 210, 228
제591조 ····· 120
제592조 ····· 202
제593조 ····· 202
제594조 ····· 202
제595조 ····· 198
제596조 ····· 190
제597조 ····· 211, 273
제598조 ····· 201, 202
제600조 ····· 229, 236
제603조 ····· 207, 265
제604조 ····· 208
제605조 ····· 208
제607조 ····· 208
제610조 ····· 144, 209
제611조 ····· 42, 135, 144, 145
제613조 ····· 211, 222, 224
제614조 ····· 146, 149, 211, 226
제615조 ····· 227, 229, 266
제616조 ····· 66, 266
제618조 ····· 231, 232
제619조 ····· 271, 273
제620조 ····· 198, 224
제621조 ····· 258, 266, 277
제622조 ····· 265
제623조 ····· 266
제624조 ····· 259, 281
제625조 ····· 228
제626조 ····· 292
제643조 ····· 295
제649조 ····· 120

판 권
소 유

제4판
회생위원 직무편람

2020년 12월 8일 제4판 4쇄 인쇄
2020년 12월 14일 제4판 4쇄 발행

편 저 서울회생법원
발 행 처 사법발전재단
인 쇄 한 양 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 화 (02) 3480-1309
팩 스 (02) 533-4074

※ 낙장·파본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ISBN 979-11-6086-050-4 93360

비매품